

KREI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박대식



KREI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박대식



연구 담당

박대식 | 선임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8장 집필

정책연구보고 P255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9. 11.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더크리홍보(주)

I S B N | 979-11-6149-379-4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농촌은 도시보다 20년 이상 앞서서 인구 노령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미 초고령사회이다. 그러나 초고령사회에서 살고 있는 농촌노인들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선행연구들은 사회보장의 일부분이나 농업인 중심으로 연구된 것이 많아서 농촌노인 전체의 사회보장 수혜 실태나 문제점을 조사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우는 별로 없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연구 결과가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개발과 집행에 좋은 참고가 되고, 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연구자들에게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농촌노인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면접 설문조사를 대행한 리서치앤리서치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농촌복지연구원, 기타 관련 기관 여러분의 협조에도 감사드린다. 또한, 면접 설문조사, 의견 수렴 등에 참여해주신 농촌노인, 관련 전문가 및 담당자, 기타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9.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연구 배경

이미 초 고령사회인 농촌에서 살고 있는 노인들은 가난과 질병과 고독에 시달리거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대다수의 농촌노인들은 자신들의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국민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과 같은 공공부조 뿐만 아니라 돌봄 서비스, 치매의 예방과 관리, 노인일자리와 같은 사회서비스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선행연구들은 사회보장의 일부분이나 농업인 중심으로 연구된 것이 많아서 농촌노인 전체의 사회보장 수혜 실태나 문제점을 조사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우는 별로 없다.

더구나 현재 시행 중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이나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에는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내용이 별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국내 출장조사, 전문가 원고 집필 의뢰,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다.

문헌조사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의 문헌이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정리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만 65세 이상 농촌노인 537명(농업인 272명, 비농업인 2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SPSS를 사용하여 빈도, 평균, 교차표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국내 출장조사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농촌노인 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모범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전문가 원고 집필 의뢰는 일본의 농촌노인 사회보장 관련 정책과 모범사례 수집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1건을 의뢰하였다.

이 밖에 사회보장, 노인복지 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농촌인구의 노령화는 도시보다 20년 정도 앞서서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농촌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의 21.4%에서 2040년의 38.0%로 증가할 전망이다.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를 살펴보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부문에서는 국민 건강보험과 기초연금을 제외하고는 농촌노인들의 노후생활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사회서비스의 이용도 일부 서비스(노인 일자리, 만성질환 관리, 치매 진단·예방·치료, 경로당·노인회관, 무료급식, 스포츠·건강교육)는 이용 경험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나머지 많은 사회서비스는 이용 경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개인 특성의 경우는 '75세 이상'이 '65~74세'에 비해서 사회보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업인'이 '비농업인'에 비해서 사회보장 만족도가 높았다. 가구 및 지역 관련 특성의 경우는 '지역 보건의료 만족도'와 주택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보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읍 지역에 비해서 면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 노인이 사회보장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 관련 특성의 경우는 월평균 연금액이 높을수록 사회보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이 많을수록 사회보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기본계획으로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등이 있다.

농촌노인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 문제점으로는 ① 사회보장 관련 주요 기본계획에서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정책과제가 별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② 사회보장제도의 외형적 틀은 잘 갖추고 있으나 농촌노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함 등을 들 수 있다.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의 기본방향으로는 ① 농촌인구 노령화의 중장기적 전망에 근거하여 선도적인 사회보장정책을 마련해야 함. ② 모든 농촌노인들이 다양한 삶의 질 영역에서 사각지대 없이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포용적인 농촌노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함. ③ 농촌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을 추진해야 함으로 설정하였다.

주요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사회보험 부문에서는 ① 농촌노인의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② 농촌주민의 노후 연금 수령액 제고 방안 마련, ③ 산재보험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개선, ④ 사회보험에 대한 농촌노인 대상 교육·홍보 강화 및 가입률 제고, ⑤ 농지연금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공공부조 부문의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② 기초연금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부문의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① 농촌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충, ② 농촌노인의 사회서비스 접근성 개선, 그리고 ③ 농촌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제시하였다.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6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9
4.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11
제2장 농촌인구의 노령화 동향과 농촌노인의 특성	17
1. 농촌인구의 노령화 동향과 전망	19
2. 농촌노인의 주요 특성	22
3. 소결	33
제3장 사회보장의 이론적 배경	35
1. 사회보장의 개념 관련 논의	37
2. 사회보장제도의 성립에 관한 이론	38
3. 사회보장의 기능	39
4.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근거	40
5.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과정	41
6. 본 연구에서의 사회보장의 개념 정의	44
제4장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	45
1. 사회보험 부문의 사회보장 실태	47
2. 공공부조 부문의 사회보장 실태	56

3. 사회서비스 부문의 사회보장 실태	59
4. 실태조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88
제5장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93
1. 분석모형	95
2. 변인의 측정방법	99
3.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00
4. 소결	103
제6장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정책과 국내외 모범사례	105
1. 우리나라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07
2.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	118
3. 정책적 시사점	138
제7장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143
1. 기본방향	145
2. 부문별 정책 개선방안	148
제8장 요약 및 결론	161
1. 요약 및 결론	163
2.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74

부록

1.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에 관한 설문지	175
--------------------------------	-----

참고문헌	205
------------	-----

표 차례

제1장

〈표 1-1〉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13
----------------------------	----

제2장

〈표 2-1〉 노인인구 관련 주요 지표의 변화 동향(1980~2015)	20
〈표 2-2〉 농촌 노인인구 관련 주요 지표의 변화 전망(2020~2040)	21

제5장

〈표 5-1〉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101
---	-----

제6장

〈표 6-1〉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정책	112
〈표 6-2〉 농업자연금 신·구제도의 비교	122
〈표 6-3〉 정책지원 대상자 구분	123
〈표 6-4〉 경영계승의 대상 자산과 처분방법	124

제1장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15
------------------------	----

제2장

〈그림 2-1〉 만성질환 보유 현황	23
〈그림 2-2〉 전반적인 건강상태	24
〈그림 2-3〉 타인의 도움 필요 정도	24
〈그림 2-4〉 주로 종사하는 직업	25
〈그림 2-5〉 농사일 참여 정도	26
〈그림 2-6〉 농사일을 하는 이유	26
〈그림 2-7〉 향후 농사일 의향	27
〈그림 2-8〉 농사일이 아닌 수입이 되는 일	27
〈그림 2-9〉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하는 이유	28
〈그림 2-10〉 연간 총소득의 구성	29
〈그림 2-11〉 연간소득 만족도	29
〈그림 2-12〉 생활비 마련 방법	30
〈그림 2-13〉 월평균 생활비	30
〈그림 2-14〉 부담이 큰 지출항목	31
〈그림 2-15〉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	32
〈그림 2-16〉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불편사항	32

제4장

〈그림 4-1〉 건강보험 해당 유형	48
---------------------------	----

〈그림 4-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 부담 정도	48
〈그림 4-3〉 월평균 연금액	50
〈그림 4-4〉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여부	50
〈그림 4-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신청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	51
〈그림 4-6〉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가구원 유무	52
〈그림 4-7〉 고용보험 혜택을 받은 가구원 유무	53
〈그림 4-8〉 농지연금 혜택 여부	54
〈그림 4-9〉 농지연금 혜택을 받지 않는 이유	54
〈그림 4-10〉 주택연금의 혜택을 받지 않는 이유	55
〈그림 4-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56
〈그림 4-12〉 기초연금 혜택 여부	57
〈그림 4-13〉 기초연금 매월 수령액	58
〈그림 4-14〉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서비스 인지도	60
〈그림 4-15〉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61
〈그림 4-16〉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	62
〈그림 4-17〉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서비스의 향후 이용의사	63
〈그림 4-18〉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 인지도	65
〈그림 4-19〉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66
〈그림 4-20〉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68
〈그림 4-21〉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의 향후 이용의사	69
〈그림 4-22〉 의식주 관련 사회서비스 인지도	71
〈그림 4-23〉 의식주 관련 사회서비스의 이용경험	72
〈그림 4-24〉 의식주 관련 사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74
〈그림 4-25〉 의식주 관련 사회서비스의 향후 이용의사	75

〈그림 4-26〉 사회교육 관련 사회서비스 인지도	77
〈그림 4-27〉 사회교육 관련 사회서비스의 이용경험	79
〈그림 4-28〉 사회교육 관련 사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80
〈그림 4-29〉 사회교육 관련 사회서비스의 향후 이용의사	81
〈그림 4-30〉 기타 사회서비스 인지도	83
〈그림 4-31〉 기타 사회서비스의 이용경험	84
〈그림 4-32〉 기타 사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85
〈그림 4-33〉 기타 사회서비스의 향후 이용의사	86
〈그림 4-34〉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수준 향상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지원해야 할 사회서비스	87

제5장

〈그림 5-1〉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모형	98
---	----

제6장

〈그림 6-1〉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의 개요	127
--------------------------------	-----

제1장

서론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농촌(읍·면부)의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노령화율은 2000년의 14.7%에서 2005년에는 18.6%, 2010년에는 20.9%, 2015년에는 21.4%로 증가하였음.
- 통계청(2019. 8. 29.)의 ‘2018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노령화율)은 도시(동부)는 13.1%인 데 반해서 읍부는 15.9%, 면부는 29.5%로 나타남.
 -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2018년)은 14.8%임.

○ 인구의 노령화는 농촌이 도시보다 20년 이상 앞서서 빠르게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면지역에서 더욱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이미 초고령사회인 농촌에서 살고 있는 노인들은 가난과 질병과 고독에 시달리거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현재 대다수의 농촌노인들은 자신들의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국민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음(박대식·최경환 2006).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지칭함.

-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임.

-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임.

-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들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따라서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과 같은

공공부조뿐만 아니라 돌봄서비스, 치매의 예방과 관리, 노인일자리와 같은 사회서비스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그러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선행연구들은 사회보장의 일부분이나 농업인 중심으로 연구된 것이 많아서 농촌노인 전체의 사회보장 수혜 실태나 문제점을 조사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우는 별로 없음.

○ 더구나 현재 시행 중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이나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에는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내용이 별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올해 수립할 예정인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20~2024)’에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1.2.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세부적인 연구 목적은 ①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를 부문별로 조사하고, ②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며, ③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외의 모범사례를 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④ 우리나라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2.1. 주요 선행연구

-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선행연구들은 농업인 또는 농촌주민의 소득보장(박대식 2004; 최경환·황의식 2007; 김정호·최경환·이용호 2007; 최경환·박대식·최용욱 2012), 농촌노인의 보건의료(조미형·박대식·최용욱 2013; 안석·박대식·김경인 2017), 농촌노인의 복지욕구(김인 2006; 김은정 2011; 최종산·양영란 2015), 농업인의 사회보험 수혜 실태(박대식·최경환·윤병석 2009; 박대식·최경환·김강호·류성희 2011), 은퇴농어민 지원 대책(정명채·민상기·최경환 1992), 노령농업인의 기초연금 수급 실태(박대식·최용욱 2014)와 같이 사회보장의 일부분이나 농업인 중심으로 연구된 것이 많음.
-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포괄하는 전체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회보장 관련 선행연구들은 소수에 불과함.
- 박대식·정명채·이영대·김종숙(1996)은 농어촌의 노인복지 실태 및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국내외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농어촌 노인복지정책의 개선 및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음. 분야별 개선 및 개발 방향으로 ① 소득보장대책, ② 의료보장대책, ③ 주택보장대책, ④ 사회적 서비스 대책을 제시하였음.
- 한정자·한경혜·모선희·유성호·김양희(2002)는 농촌노인의 생활·복지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의 관련 정책을 조사하여, 농촌노인복지 증진 방향을 ① 소득보장정책, ② 의료보장정책, ③ 주택보장정책, ④ 사회적 서비스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 이은구·박상진·심재호·김겸훈·권병욱·이갑숙(2005)은 농촌 노인인구의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농촌사회구조를 유형화하고, 그 유형별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모형을 개발하였음.
- 박대식·최경환(2006)은 농촌노인 사회안전망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대책을 제시하였음.
 - 사회안전망을 1차 사회안전망, 2차 사회안전망, 3차 사회안전망으로 나누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였음.
- 권용신·한성민(2012)은 경상북도 초고령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서비스 현황, 생활실태 및 농촌노인의 복지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였음. 농촌 노인복지 정책과제로는 ① 농촌노인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노인전문상담 기능 강화, ② 농촌노인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강화, ③ 농촌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장수프로그램 운영, ④ 농촌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생산물 판로개척 및 시니어클럽 확대, 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이용 확대, ⑥ 경로당을 다기능화하여 노인복지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 ⑦ 농촌노인의 생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 이용 바우처 제도 도입을 제시하였음.
- 최윤지(2014)는 농촌노인의 생활실태를 경제생활, 여가생활, 식생활 및 영양상태, 건강 및 의료, 복지서비스 이용실태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농촌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① 농촌사회 내부에 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하고, 지역의 자원을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함, ② 맞춤형 농촌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사업 추진이 필요함, ③ 농촌노인들의 일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센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조미형·박지연(2015)은 농촌고령자의 생활과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소득 지원 방안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시하였음.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집단은 현재 운영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의 개선이 요구됨, ② ‘할 일이 필요한 노인’ 집단은 마을 안에서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함께 일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내야 함, ③ 55세 이상 중고령자부터 ‘70세 미만 건강한 저소득 노인’ 집단은 ‘월 70만~8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함, ④ ‘가족을 돌보고 있는 노인’ 집단은 가족을 남에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기가 쉽지 않으므로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2.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선행연구들은 사회보장의 일부분이나 농업인 중심으로 연구된 것이 대부분임.
- 본 연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문제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모두 포괄, 조사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분명한 차별성이 있음.
- 그리고 본 연구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도 포괄하여 조사·연구를 한다는 점에서도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이 있음.
- 일부 선행연구들(박대식 외 1996; 한정자 외 2002)은 농촌노인의 복지실태를 비교적 종합적으로 다루었으나 오래전에 조사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그동

안 농촌노인의 복지나 사회보장 관련 정책이나 환경이 크게 바뀌었음.

- 본 연구는 「사회보장기본법」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 제3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2015~2019),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그리고 현재 계획을 수립 중인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20~2024)’ 등을 감안하여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확실한 차별성이 있음.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3.1. 연구의 범위

- 본 연구에 있어서 농촌의 범위는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을 말함.
- 노인은 만 65세 이상인 자를 지칭함.
-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함.

3.2. 연구의 주요 내용

-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의 범위와 내용,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를 다루었음.
-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촌인구의 노령화 동향과 전망, 우리나라 농촌노인의 주요 특성에 대하여 정리하였음.
- 제3장에서는 사회보장의 개념 관련 논의, 사회보장의 성립에 관한 이론, 사회보장의 기능,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과정, 본 연구에서 사회보장의 개념 정의를 다루었음.
- 제4장에서는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제5장에서는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음.
-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국내외의 모범사례를 조사하고 정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제7장에서는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기본 방향과 부문별 정책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그리고 제8장에서는 연구를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음.

4.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4.1. 연구 방법

4.1.1. 문헌조사

-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함.
- 기타 농촌노인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국내외의 문헌이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정리함.

4.1.2. 설문조사

- 전국의 만 65세 이상 농촌노인 537명(농업인 272명, 비농업인 265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표(초안)를 연구자가 만들어 연구자문회의, 사전조사 등을 통하여 수정·보완하여 최종 설문조사표를 마련함(〈부록 1〉 참조).
-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Research & Research)에 위탁함.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4.23\%$ Point
- 표본 추출
 - 집락 및 층화 추출법: 집락(읍·면) 및 층화(8개 도)

- 1차 추출 단위: 도별 시·군
- 2차 추출 단위: 시·군 내 읍·면
- 3차 추출 단위: 읍·면 내 농업인/비농업인

○ 조사기간: 2019. 7. 23(화) ~ 8. 23(금)

○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표 1-1> 참조)

- 성별은 남성 50.3%, 여성 49.7%, 읍·면 구분은 읍이 50.3%, 면이 49.7%, 연령은 65~74세 44.5%, 75세 이상 55.5%
- 농업인 여부는 농업인이 50.7%, 비농업인이 49.3%
- 거주 지역은 경기·인천·강원권이 22.3%, 충청권이 21.4%, 호남권이 23.7%, 영남권이 32.6%
- 가족 구성 형태는 노인단독(1인)가구가 32.9%, 노인부부(2인)가구가 56.2%, 자녀동거가구가 10.9%
- 가구소득은 '1,000만 원 미만'이 37.2%, '1,000만~2,000만 원 미만'이 35.0%, '2,000만~3,000만 원 미만'이 13.4%, '3,000만 원 이상'이 14.4%, 응답자의 3/4 정도가 가구소득이 '2,000만 원 미만'임.
- 학력은 '초등(소·국민)학교 중퇴·졸업'이 46.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중학교 중퇴·졸업'이 22.3% 순이었음. 무학이 16.8%나 되는 데 비해서 '전문대학 중퇴·졸업 이상'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자료 분석 방법

- 각종 자료들을 종합·정리하고, 필요시에는 원 자료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의 결과는 SPSS를 사용하여 빈도, 평균, 교차표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음.

표 1-1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70	50.3
	여성	267	49.7
읍면 구분	읍	270	50.3
	면	267	49.7
연령	65~74세	239	44.5
	75세 이상	298	55.5
농업인 여부	농업인	272	50.7
	비농업인	265	49.3
거주 지역	경기·인천·강원권	120	22.3
	충청권	115	21.4
	호남권	127	23.7
	영남권	175	32.6
가구소득	1,000만 원 미만	200	37.2
	1,000만~2,000만 원 미만	188	35.0
	2,000만~3,000만 원 미만	72	13.4
	3,000만 원 이상	77	14.4
가족 구성 형태	노인단독(1인)가구	175	32.9
	노인부부(2인)가구	299	56.2
	자녀동거가구	58	10.9
학력	무학(한글 모름)	22	4.1
	무학(한글 해독)	68	12.7
	초등(소·국민)학교 중퇴·졸업	247	46.0
	중학교 중퇴·졸업	120	22.3
	고등학교 중퇴·졸업	67	12.5
	전문대학 중퇴·졸업 이상	13	2.4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4.1.3. 국내 출장조사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촌노인 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모범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 출장조사를 실시함.
-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 설문조사표의 사전조사를 위하여 국내 출장조사를 실시함.

4.1.4. 전문가 원고 집필 의뢰

- 외국(일본)의 농촌노인 사회보장 관련 모범사례 수집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원고 집필을 의뢰함(1건).
 - 위탁 원고 제목: 일본의 농촌노인 사회보장제도 조사
 - 원고 작성자: 최경환 한국농촌복지연구원 원장
 - 원고 작성 기간: 2019년 5월 10일~7월 9일(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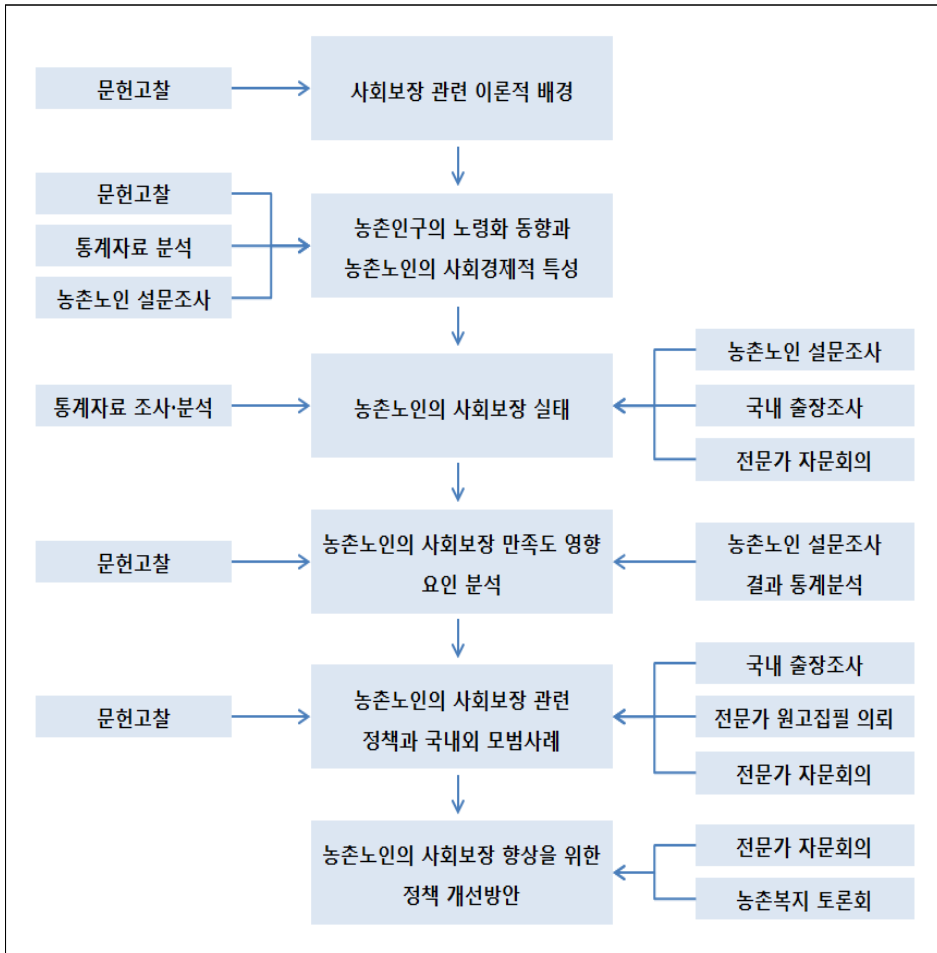
4.1.5.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농업인단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복지관, 농촌복지 관련 교수,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담당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음. 전문가 자문회의, 한국농촌복지연구원의 농촌복지 관련 토론회 등도 활용함.

4.2. 연구 추진체계

○ <그림 1-1>에는 본 연구의 추진체계가 도식화되어 있음.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자료: 저자 직접 작성.

제2장

농촌인구의 노령화 동향과 농촌노인의 특성



2

농촌인구의 노령화 동향과 농촌노인의 특성

1. 농촌인구의 노령화 동향과 전망

1.1. 농촌인구의 노령화 동향

○ 농촌인구의 노령화는 도시나 전국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 왔음(박대식 2004).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도시(동부)는 1980년의 2.6%에서 2015년의 11.4%로 증가했고, 전국은 1980년의 3.9%에서 2015년의 13.2%로 증가한 데 비해서, 농촌(읍·면부)은 1980년의 5.6%에서 2015년의 21.4%로 급증하였음<표 2-1>.

- 미국의 경우도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도시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Brown and Schafft eds. 2019).

○ 노년 부양비(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생산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는 도시(동부)가 1980년의 4.0에서 2015년의 15.3으로 증가했고,

전국 평균은 1980년의 6.2에서 2015년의 18.1로 증가한 데 비해서, 농촌(읍·면부)은 1980년의 9.5에서 2015년의 32.4로 급증하였음<표 2-1>.

○ 노령화 지수(0~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는 도시(동부)가 1980년의 7.9에서 2015년의 80.3으로 증가했고, 전국평균은 1980년의 11.4에서 2015년의 95.1로 증가한 데 비해서, 농촌(읍·면부)은 1980년의 15.7에서 2015년의 170.8로 급증하였음<표 2-1>.

○ 농촌(읍·면부)인구의 노령화가 도시(동부)보다 20년 정도 앞서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1 노인인구 관련 주요 지표의 변화 동향(1980~2015)

연도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전국	도시	농촌	전국	도시	농촌	전국	도시	농촌
1980	3.9	2.6	5.6	6.2	4.0	9.5	11.4	7.9	15.7
1990	5.0	3.6	9.0	7.2	5.1	13.4	19.4	13.6	38.2
2000	7.3	5.5	14.7	10.2	7.5	22.0	35.0	25.3	78.7
2010	11.3	9.2	20.9	15.6	12.4	32.6	69.7	55.7	140.4
2015	13.2	11.4	21.4	18.1	15.3	32.4	95.1	80.3	170.8

주 1) 노년 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15~65세 미만 인구)×100

2) 노령화 지수 = (65세 이상 인구/0~15세 미만 인구)×100

3) 2015년 자료는 등록 센서스 방식의 집계결과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 총 조사.

1.2. 농촌인구의 노령화 전망

○ 평균 성장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농촌인구의 노령화 지표들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음(정도채·심재현 2017).

○ 농촌(읍·면부)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의 22.9%에서 2040년의 38.0%로 증가할 전망이다<표 2-2>.

- 노년 부양비(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생산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는 2020년의 34.4에서 2040년의 71.3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노령화 지수(0~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는 2020년의 216.2에서 2040년의 437.0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 농촌인구의 노령화는 향후 20년 동안에도 계속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표 2-2 농촌 노인인구 관련 주요 지표의 변화 전망(2020~2040)

연도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2020	22.9	34.4	216.2
2025	26.1	40.8	263.7
2030	30.0	49.4	322.7
2035	33.9	59.5	372.8
2040	38.0	71.3	437.0

주 1) 노년 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15~65세 미만 인구)×100

2) 노령화 지수 = (65세 이상 인구/0~15세 미만 인구)×100

자료: 정도채·심재현(2017: 65-66)에서 재구성함.

2. 농촌노인의 주요 특성

2.1. 가족 및 사회적 관계

- 본 연구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 형태는 노인단독(1인)가구가 32.9%, 노인부부(2인)가구가 56.2%, 자녀동거가구가 10.9%로 나타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정경희 외 2017)에 의하면, 농촌노인의 가구 형태는 ‘노인독거’가 24.3%, ‘노인부부’가 54.2%, ‘자녀동거’가 17.0%, ‘기타’가 4.6%로 나타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정경희 외 2017)에 의하면, 농촌노인의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 빈도는 ‘1주일에 2~3회’(33.0%), ‘거의 매일’(29.7%), ‘1주일에 1회’(21.3%), ‘한 달에 1회’(12.6%) 순으로 나타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정경희 외 2017)에 의하면, 농촌노인의 친구·이웃·지인과의 연락 빈도는 ‘거의 매일’(23.7%), ‘1주일에 1회’(22.2%), ‘1주일에 2~3회’(20.3%), ‘한 달에 1회’(15.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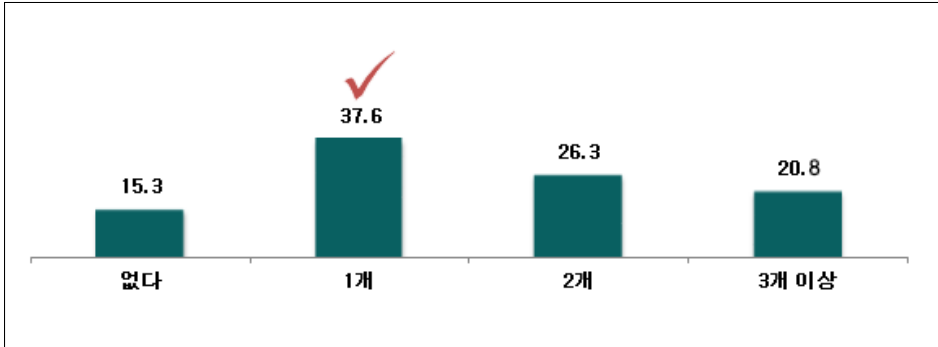
2.2. 건강

- 본 연구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병·의원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만성질환이 있는 응답자가 84.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2-1>.

- 만성질환 보유수가 ‘1개’(37.6%), ‘2개’(26.3%), ‘3개 이상’(20.9%)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 만성질환 보유 현황

단위: %, N=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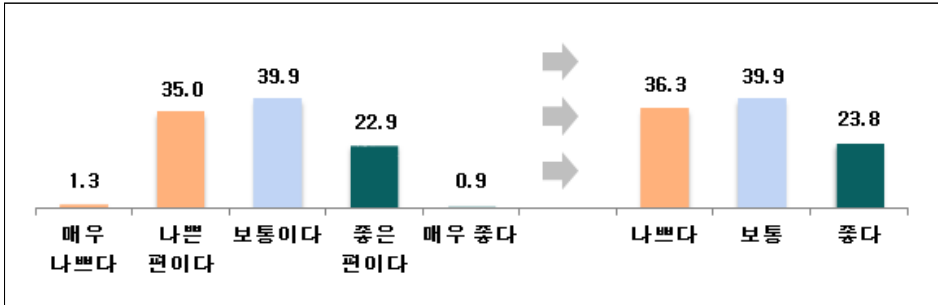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본 연구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나쁘다’가 36.3%(매우 나쁘다: 1.3%+나쁜 편: 35.0%), ‘좋다’가 23.8%(매우 좋다: 0.9%+좋은 편: 22.9%)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그림 2-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정경희 외 2017)에 의하면, 농촌노인의 평소의 건강상태는 ‘나쁘다’가 40.9%(건강이 매우 나쁘다: 4.7%+건강이 나쁜 편이다: 36.2%), ‘건강하다’가 36.8%(매우 건강하다: 2.2%+건강한 편이다: 34.6%)로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응답이 ‘건강하다’ 응답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 전반적인 건강상태

단위: %, N=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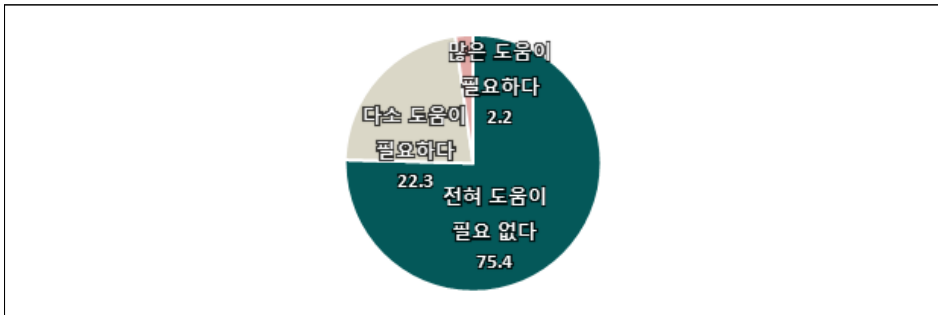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본 연구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혀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응답이 75.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다소 도움이 필요하다’가 22.3%,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가 2.2% 순으로 나타남<그림 2-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정경희 외 2017)에 의하면, ‘완전자립 수준’인 농촌노인의 비율은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경우는 91.0%,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경우는 73.7%로 나타남.

그림 2-3 타인의 도움 필요 정도

단위: %, N=537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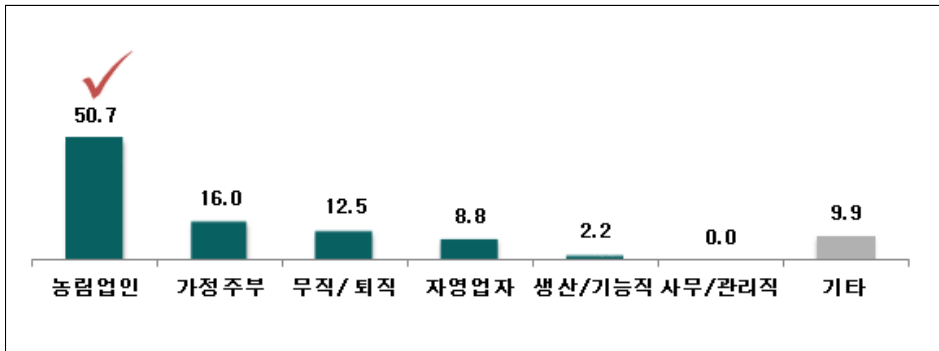
2.3. 경제활동

○ 본 연구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주로 종사하는 직업은 농림업인이 50.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가정주부’가 16.0%, ‘무직·퇴직’이 12.5%, ‘자영업자’가 8.8% 순으로 나타남<그림 2-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정경희 외 2017)에서는 응답 농촌노인의 60.5%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4 주로 종사하는 직업

단위: %, N=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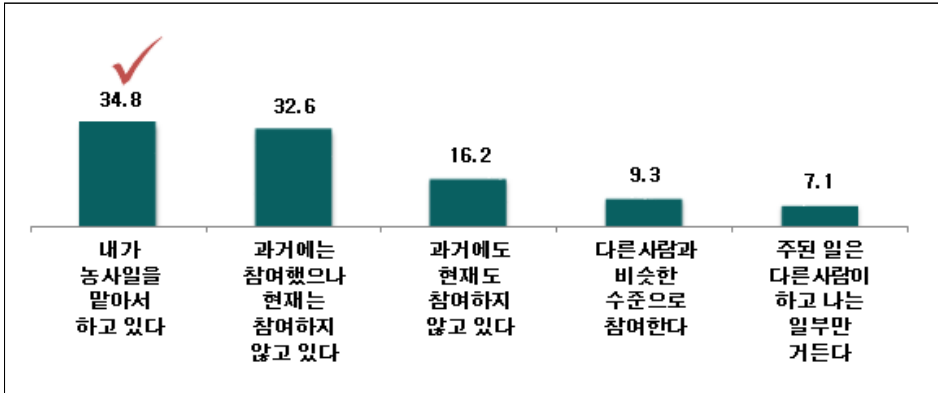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본 연구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사일 참여 정도는 ‘내가 농사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과거에는 참여했으나 현재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32.6%, ‘과거에도 현재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16.2% 순으로 나타남<그림 2-5>.

그림 2-5 농사일 참여 정도

단위: %, N=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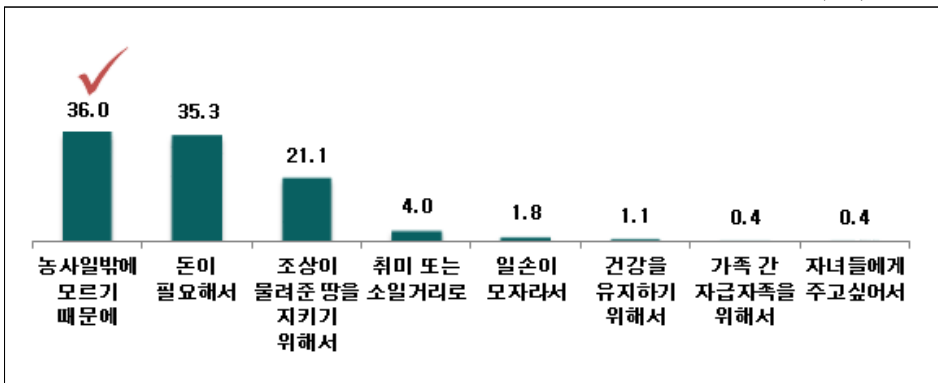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본 연구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n=275)를 대상으로 농사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농사일밖에 모르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6.0%, ‘돈이 필요해서’가 35.3%로 두 응답이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조상이 물려준 땅을 지키기 위해서’가 21.1%, ‘취미 또는 소일거리로’가 4.0% 순으로 나타남(그림 2-6).

그림 2-6 농사일을 하는 이유

단위: %, N=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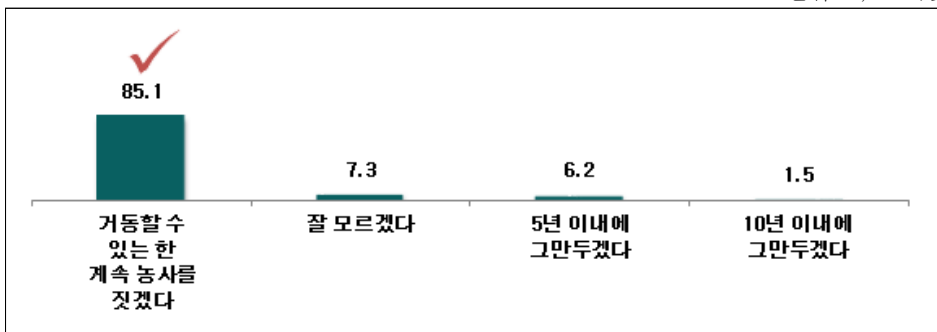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본 연구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n=275)의 향후 농사일을 할 의향은 ‘거동할 수 있는 한 계속 농사를 짓겠다’라는 응답이 85.1%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잘 모르겠다’가 7.3%, ‘5년 이내에 그만두겠다’가 6.2% 순으로 나타남. 즉, 응답자들의 대부분(85.1%)이 농사일을 계속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2-7>.

그림 2-7 향후 농사일 의향

단위: %, N=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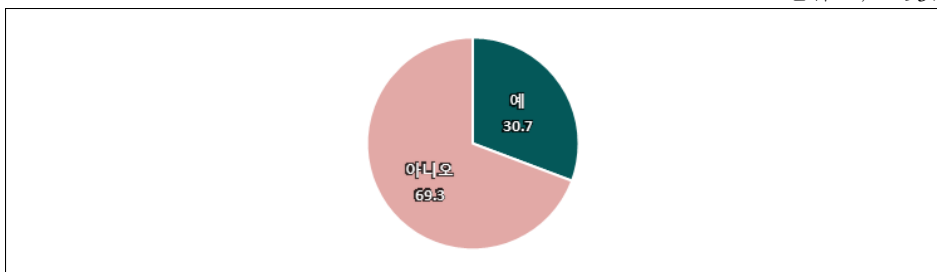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본 연구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사일이 아닌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9.3%, ‘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30.7%로 나타남<그림 2-8>.

그림 2-8 농사일이 아닌 수입이 되는 일

단위: %, N=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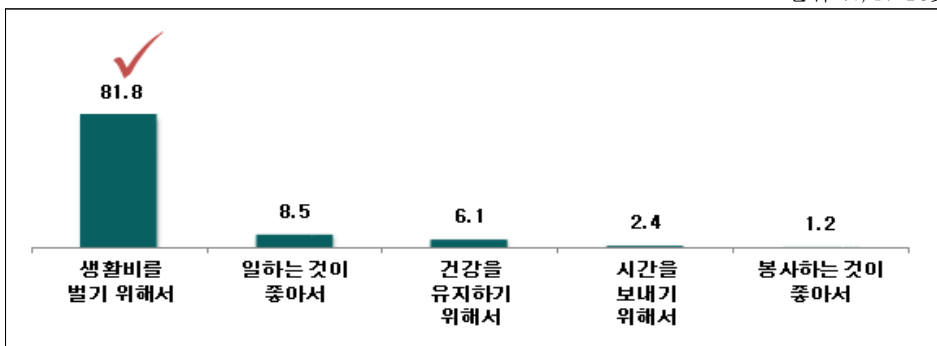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본 연구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하는 응답자(n=165)를 대상으로,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81.8%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일하는 것이 좋아서’가 8.5%,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6.1% 순으로 나타남<그림 2-9>.

그림 2-9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하는 이유

단위: %, N=165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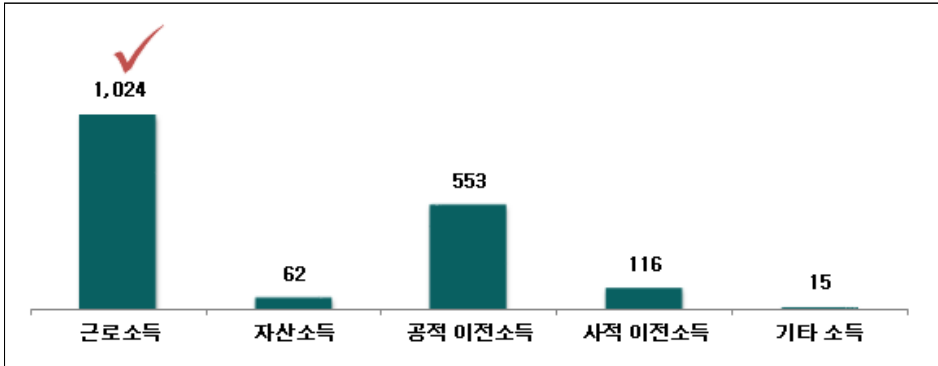
2.4. 소득 및 소비

○ 본 연구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총소득의 구성은 ‘근로소득’이 약 1,024만 원, ‘자산소득’이 약 62만 원, ‘공적이전소득’이 약 553만 원, ‘사적 이전소득’이 약 116만 원, ‘기타소득’이 약 15만 원으로 나타남<그림 2-1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정경희 외 2017)에서는 농촌노인의 ‘근로소득’이 573만 원, ‘사업소득’이 506만 원, ‘재산소득’이 92만 원, ‘공적 이전소득’이 635만 원, ‘사적 이전소득’이 396만 원, ‘사적 연금소득’이 3만 원, ‘기타소득’이 14만 원으로 나타남.

그림 2-10 연간 총소득의 구성

단위: 만 원, 평균, N=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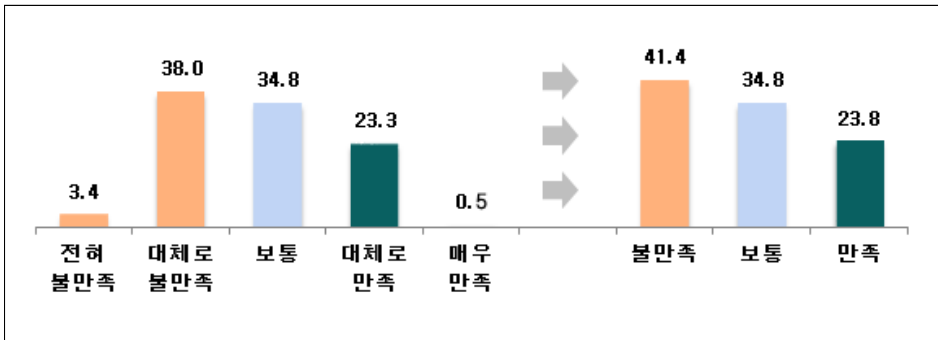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본 연구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소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 응답이 41.4%(전혀 불만족: 3.4% + 대체로 불만족: 38.0%), ‘만족’ 응답이 23.8%(매우 만족: 0.6% + 대체로 만족: 23.3%)로 불만족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그림 2-11>.

그림 2-11 연간소득 만족도

단위: %, N=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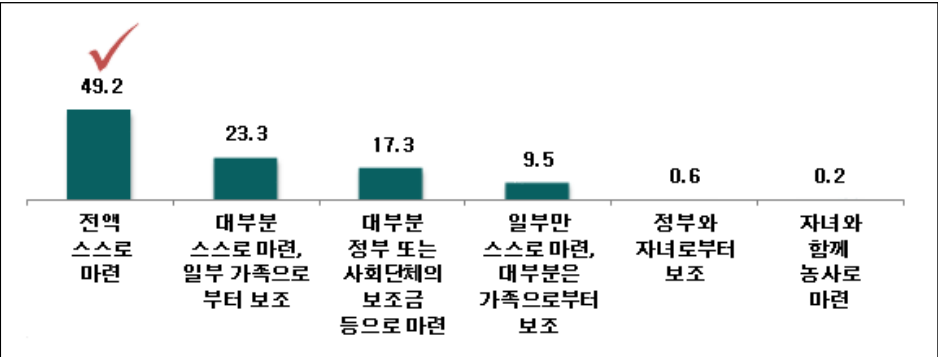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본 연구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비 마련 방법은 ‘전액 스스로 마련’이라는 응답이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대부분 스스로 마련, 일부 가족으로부터 보조’가 23.3%, ‘대부분 정부 또는 사회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마련’이 17.3%, ‘일부만 스스로 마련, 대부분은 가족으로부터 보조’가 9.5% 순으로 나타남<그림 2-12>.

그림 2-12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 N=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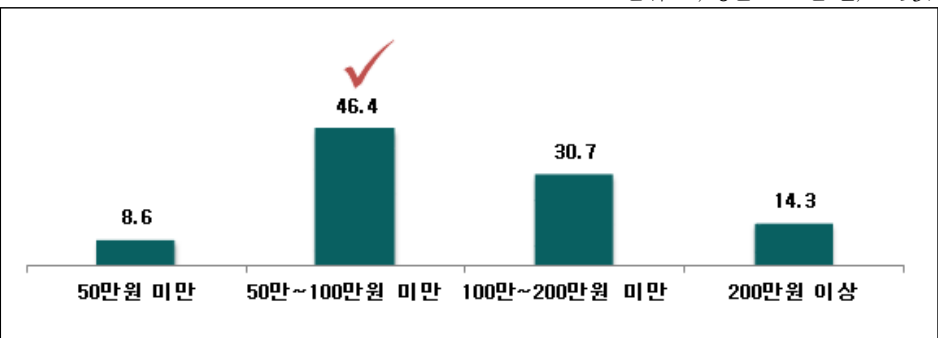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본 연구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생활비는 ‘50만~1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100만~200만 원 미만’이 30.7%, ‘200만 원 이상’이 14.3% 순으로 나타남<그림 2-13>.

그림 2-13 월평균 생활비

단위: %, 평균: 106만 원, N=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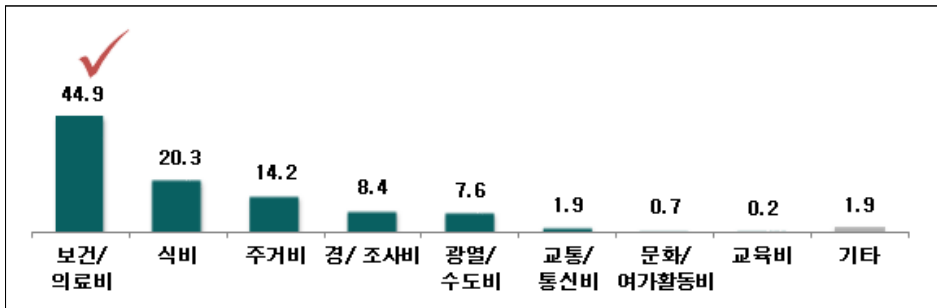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본 연구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담이 가장 큰 지출항목에 대해 살펴본 결과, ‘보건·의료비’라는 응답이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식비’가 20.3%, ‘주거비’가 14.2%, ‘경·조사비’가 8.4%, ‘광열·수도비’가 7.6% 순으로 나타남<그림 2-14>.

그림 2-14 부담이 큰 지출항목

단위: %, N=537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2.5.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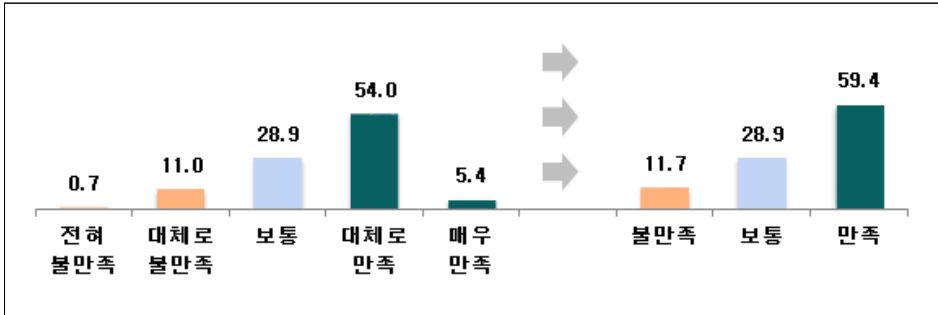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정경희 외 2017)에 의하면, 농촌노인의 주택 종류는 단독주택(69.8%), 아파트(22.0%), 연립·다세대주택(6.7%) 순으로 많았음.

- 거주 형태는 자가(74.9%), 무상(12.4%), 보증금 있는 월세(9.0%), 전세(2.5%) 순이었음.

○ 본 연구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거주하는 주택 만족도는 ‘만족’ 응답이 59.4%(매우 만족: 5.4%+대체로 만족: 54.0%), ‘불만족’ 응답이 11.7%(전혀 불만족: 0.7%+대체로 불만족: 11.0%)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그림 2-15>.

그림 2-15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

단위: %, N=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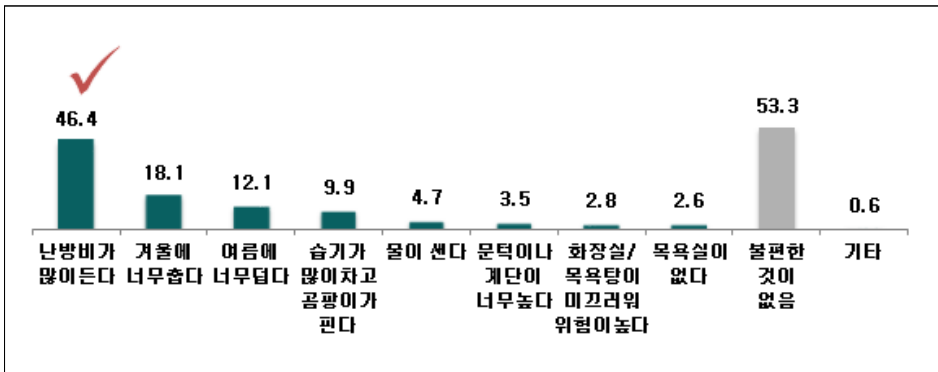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불편사항에 대해 살펴본 결과, ‘난방비가 많이 든다’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겨울에 너무 춥다’가 18.1%, ‘여름에 너무 덥다’가 12.1%, ‘습기가 많이 차고 곰팡이가 핀다’가 9.9% 순으로 나타남<그림 2-16>.

그림 2-16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불편사항

단위: %, N=537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3. 소결

- 농촌인구의 노령화는 도시보다 20년 정도 앞서서 빠르게 진행되어 왔음. 향후 농촌의 노인인구 비율은 2030년에는 30.0%, 2040년에는 38.0%로 증가할 전망이다.
- 농촌노인들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면, 가구 형태는 노인부부 또는 노인단독(1인)가구가 압도적으로 많고, 자녀동거가구는 10.9~17.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농촌노인들은 비동거 자녀나 친구·이웃·지인과의 연락은 비교적 자주 하고 있었음.
- 농촌노인들의 건강을 살펴보면, 주기적으로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4.7%나 되고,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사람이 36.3~40.9%나 되었음. 그리고 농촌노인들의 약 1/4 정도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농촌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응답노인들의 50% 이상이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음. 현재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일을 하는 주된 이유는 ‘농사일밖에 모르기 때문에’(36.0%), ‘돈이 필요해서’(35.3%), ‘조상이 물려준 땅을 지키기 위해서’(21.1%) 순이었음. 현재 농사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85.1%)은 ‘거동할 수 있는 한 계속 농사를 짓겠다’고 응답하였음. 농사일이 아닌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30.7%였음. 농촌노인들이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81.8%)로 나타남.

○ 농촌노인들의 소득 및 소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연간 총소득의 구성은 근로소득(약 1,024만 원)과 공적 이전소득(약 553만 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연간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만족한다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음. 그리고 생활비는 응답자의 3/4 정도가 전액 또는 대부분을 스스로 마련하고 있었음. 월평균 생활비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55.05)가 100만 원 미만이라고 답했음. 그리고 농촌노인들에게 부담이 가장 큰 지출항목은 ‘보건·의료비’(44.9%), ‘식비’(20.3%) 순이었음.

○ 농촌노인들의 주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촌노인들의 70% 정도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만족하는 사람은 6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주요 불편사항은 ‘난방비가 많이 든다’(46.4%), ‘겨울에 너무 춥다’(18.1%), ‘여름에 너무 덥다’(12.1%) 순이었음.

제3장

사회보장의 이론적 배경



3

사회보장의 이론적 배경

1. 사회보장의 개념 관련 논의

- 사회보장(社會保障)이란 용어는 영어인 ‘social security’를 번역한 것으로 대공황이라는 사회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1935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서 유래함(박정선 2014).
-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개념은 사회복지(social welfare) 개념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대략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박정선 2014; 전호성 2016).
 -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을 사회복지(social welfare)의 하위개념으로 보는 입장: 사회복지(social welfare)를 광의적인 의미의 복지로 파악함.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한정하는 데 반해서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모두를 포괄한다고 봄.

-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을 사회복지(social welfare)의 상위개념으로 보는 입장: 사회복지(social welfare)를 협의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서비스로 파악함. 따라서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모두 포괄한다고 봄.
-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사회복지(social welfare)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시각: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상하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개념의 다른 명칭에 불과하다고 봄.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광의적 의미로 파악함. 따라서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모두 포괄한다고 봄.

2. 사회보장제도의 성립에 관한 이론

○ 사회보장제도의 성립에 관한 주요 이론으로는 ‘합리론’, ‘불평등과 사회정의론’, ‘음모론’이 있음(정명채 2015).

○ 합리론

- 역사적으로 사회보장의 기초는 가족, 씨족, 마을공동체인데 산업화 과정에서 이들의 기능이 와해되거나 약화됨으로써 국가가 이 기능을 떠맡게 된다는 것임. 즉,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산업화로 인한 분산, 핵가족의 증가, 공동체의식의 와해 등으로 전통적인 사회보장기능이 약화되어 국가 개입의 요구가 증가되어 이에 부응하여 나타나게 되는 합리적 결정이라는 것임(Marshall 1975).

○ 불평등과 사회정의론

- 산업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수반되며, 이때 발생하는 빈곤은 사회적 책임이기 때문에 이를 사회공동의 노력으로 시정해 주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고, 그 필요에 따라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진다는 것임(Pinker 1974).

○ 음모론

- 사회보장제도는 사회 안정 및 질서와 통제를 위하여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적 조치라고 봄. 빈부격차의 심화, 가족기능의 와해와 같은 생활불안 요인들은 정권유지를 방해하는 요인임. 따라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이를 해결하고 빈곤층을 달래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게 된다는 것임(George and Wilding 1976).

3. 사회보장의 기능

- 사회보장이론 관련 선행연구들(김태성 2013; 채구묵 2015; 현외성 2018; 이상은 2019)에 의하면, 사회보장의 주요 기능은 ① 기본(최저)생활의 보장, ② 소득재분배, ③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임.

○ 기본(최저)생활의 보장

-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임. 즉, 사회보장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 소득재분배

- 사회보장을 통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야 함.
- 소득재분배의 방법에는 수직적 재분배(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동일계층 내의 소득재분배)가 있음.

○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 사회보장을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연대감을 증대시킴.
- 사회보장은 소득 상실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사회적 연대감을 보여 주는 제도적 장치임.

4.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근거

○ 「대한민국헌법」(제34조 제2항)

-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짐.

○ 「사회보장기본법」(제1조)

-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제1조)

-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5.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과정

○ 여러 학자들(김종찬 1992; 하상락 1997; 최익한 2013; 이성로 2015)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근대사회 이전부터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해왔음.

- 삼국시대에는 백성들에 대한 구제 사업(신라 및 백제의 재해 지원, 고구려의 진대법 등)이 중요한 국가시책이었음(김종찬 1992; 이성로 2015).
- 고려시대에는 흉년, 전란, 기근과 같은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의창(義倉), 상평창(常平倉) 등을 운영하였음. 불교의 영향으로 종교적 자비심이나 자비를 바탕으로 하는 시혜적 복지가 주류를 이루었음. 구제행정을 위한 기관으로는 제위보(濟危寶), 구제도감(救濟都監), 동서대비원(東西大

悲院), 혜민국(惠民局) 등이 있었음. 이외에 어린이 수양제도, 양로·경로제도 등이 있었음(김종찬 1992; 최익한 2013; 이성로 2015).

-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왕도정치사상을 기반으로 일반 백성들에 대한 구제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실시함(김종찬 1992). 춘궁기나 재해 발생 시에 관곡으로 빈민이나 이재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의창(義倉), 상평창(常平倉), 사창(社倉)¹⁾을 운영하였음. 아동, 노인, 빈민, 장애인, 홀아비, 과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도 있었음. 의료기관으로는 전의감(典醫監), 혜민서(惠民署), 동서활인서(東西活人署), 제생원(濟生院) 등을 운영하였음(김종찬 1992; 이성로 2015).
- 일제 강점기에는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충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혜 또는 자선 성격의 복지사업이 대부분이었음(김종찬 1992).

○ 해방 후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과정은 “① 응급구호정책기(1945~1960년), ② 개발종속정책기(1960~1987년), ③ 제도확장기(1987~1997년), ④ 복지국가 태동·조정기(1997~2017년), ⑤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기(2017년 이후)의 5단계”(김미곤 외 2018: 26)로 설명할 수 있음.

○ 응급구호정책기(1945~1960년)

- 미군정기(1945. 9.~1948. 8.) 동안에는 전재민(전재민)을 대상으로 임시적인 구호대책(응급구호대책, 주택대책, 실업대책, 농촌이주사업 등)이 추진되었음.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에는 전쟁복구를 위한 외국 의존적인 응급구호대책 중심이었음. 이 기간 동안에는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경을 대상으로 하는 군경원호사업과 일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구호사업을 주로 추진하였음(김미곤 외 2018; 남찬섭 2018).

¹⁾ 촌락이나 부락 단위의 구휼제도임.

○ 개발중속정책기(1960~1987년)

- 사회보장이 발전국가적인 개발정책에 종속되었음.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요구도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하였음. 유신정권 기간(1972~1979년) 동안에는 체제안정을 위해 일부 계층을 포섭하는 수단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함. 제5공화국 시기(1981~1988년) 「생활보호법」을 전부 개정하고, 「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을 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전부 개정하여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약간의 제도개선을 하였음(김미곤 외 2018).

○ 제도확장기(1987~1997년)

- 국민연금의 시행(1988년), 전 국민 의료보험의 달성(1989년), 「고용보험법」의 제정(1993년) 등 사회보험의 확충이 상당히 이루어짐.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년),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1990년), 「정신보건법」 제정(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5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1997년) 등이 추진되어 사회보장제도가 크게 확장되었음(남찬섭 2018).

○ 복지국가 태동·조정기(1997~2017년)

- 민주정부 전반기(김대중 정부)에는 생산적 복지라는 국정지표하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며, 전(全) 국민연금을 실현하고(1999년), 의료보험의 통합을 추진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개편하였으며(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1999년) 소득 및 건강보장 부문에서 상당한 개혁을 하였음(김미곤 외 2018; 남찬섭 2018).
- 민주정부 후반기(노무현 정부)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도입(2005년),

근로장려세제의 도입(2006년), 「노인장기요양법」의 제정(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2007년) 등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고 기존의 제도들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음(김미곤 외 2018; 남찬섭 2018).

- 보수정부(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시장 지향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음. 경로 의존적 복지 확대를 추진하기도 하였지만 복지 축소 지향성을 가진 것이 많았음(남찬섭 2018).

○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기(2017년 이후)

- 보수 패러다임이 붕괴함에 따라 ‘통일·평화·자유·민주·복지국가’라는 대한 패러다임을 추진할 기회가 생겼음(김미곤 외 2018).

6. 본 연구에서의 사회보장의 개념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을 광의의 사회복지(social welfare) 개념으로 파악함. 따라서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봄. 이러한 시각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농촌노인을 보호하고 농촌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고 개념 정의함.

제4장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



4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

1. 사회보험 부분의 사회보장 실태

1.1.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 해당 유형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이다’라는 응답이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다’가 30.7%,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양가족이다’가 10.1%, ‘의료급여1종 대상이다’가 2.4% 순이었으며,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는 0.7%로 나타남<그림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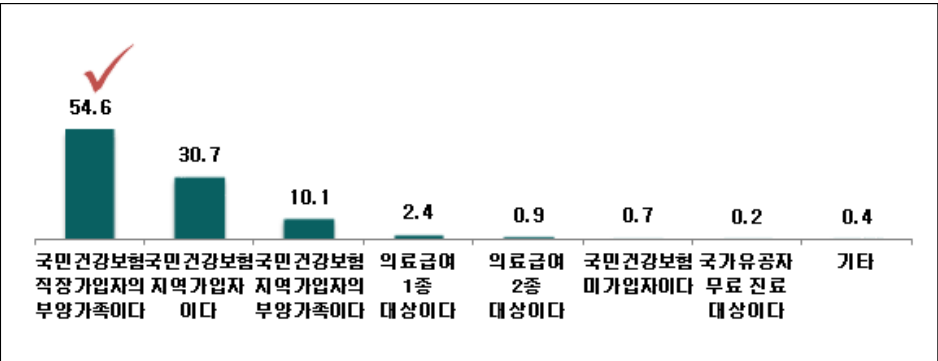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응답자의 비율(95.4%)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19) 복지실태조사의 전체 농어촌주민의 국민건강보험 가입률(94.6%)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165명)의 월평균 보험료는 67,147원이었으며, 응

답자의 2/3 정도(67.9%)가 매달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음<그림 4-2>.

그림 4-1 건강보험 해당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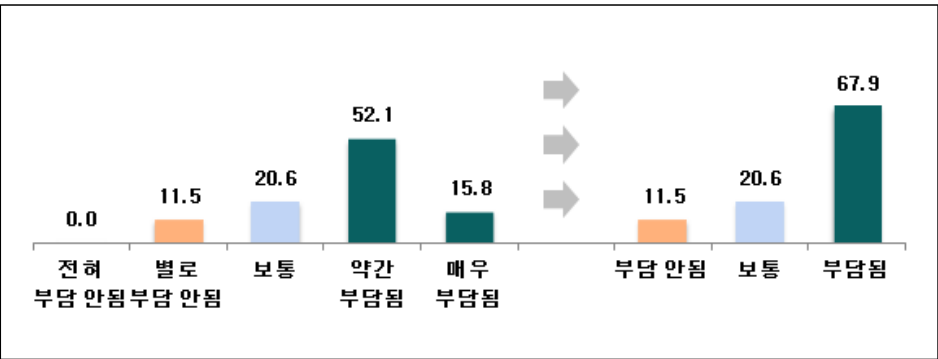
단위: %, N=537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그림 4-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 부담 정도

단위: %, N=165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1.2. 공적 연금

○ 공적 연금으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이 있음.

○ 국민연금 수혜

- 본 연구의 농촌노인 대상 사회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농촌노인의 22.5%만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음.
- 본인의 국민연금은 평균 월 35만 원 정도임: '30만 원 이하' 64.5%, '31만~50만 원 이하' 22.3%, '51만 원 이상' 13.2%(최저 10만 원~최고 200만 원)
- 응답 가구 전체(본인, 배우자, 기타 가족) 기준의 국민연금 수혜 비율 26.1%임.

○ 특수직역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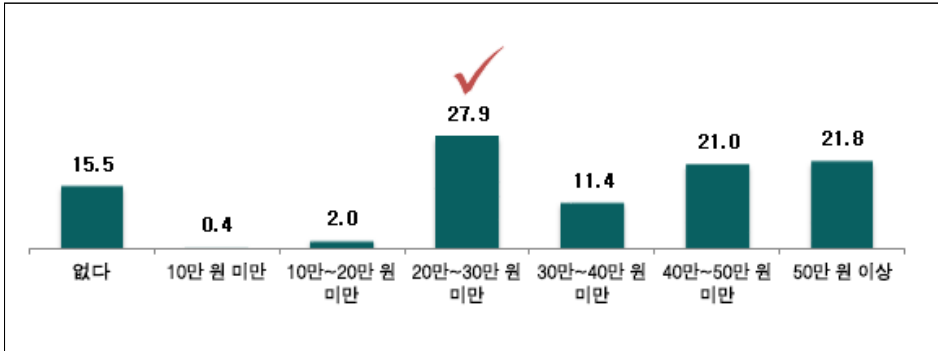
- 본 연구의 농촌노인 대상 사회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본인 기준의 특수직역연금 수급 비율은 공무원연금은 2.2%, 사학연금은 0%, 군인연금은 0.1%, 별정직 우체국연금은 0%로 나타남.
- 응답 가구 전체(본인, 배우자, 기타 가족) 기준의 특수직역연금 수혜 비율은 공무원연금은 2.8%, 사학연금은 0%, 군인연금은 0.3%, 별정직 우체국연금은 0.2%로 나타남.

○ 월평균 연금액²⁾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만~3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50만 원 이상'이 21.8%, '40만~50만 원 미만'이 21.0%, '연금액이 없다'가 15.5%, '30만~40만 원 미만'이 11.4% 순으로 나타남<그림 4-3>.

²⁾ 본인, 배우자, 기타 가족의 공적 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임.

그림 4-3 월평균 연금액

단위: %, N=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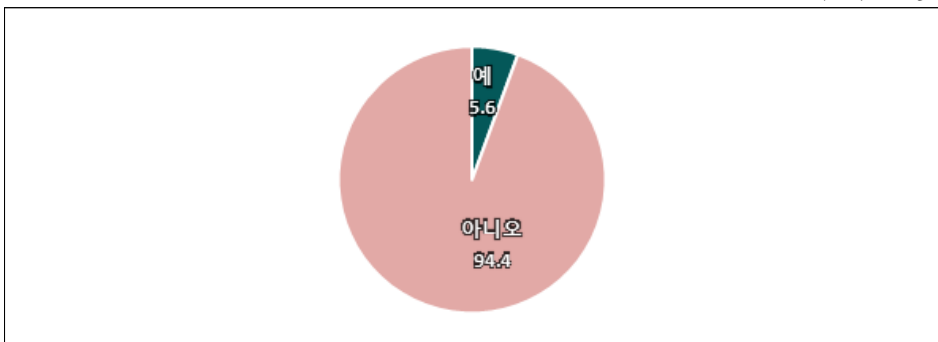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1.3.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신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니오’라는 응답이 94.4%, ‘예’라는 응답이 5.6%로 나타나 농촌노인의 극소수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4-4>.

그림 4-4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여부

단위: %, N=537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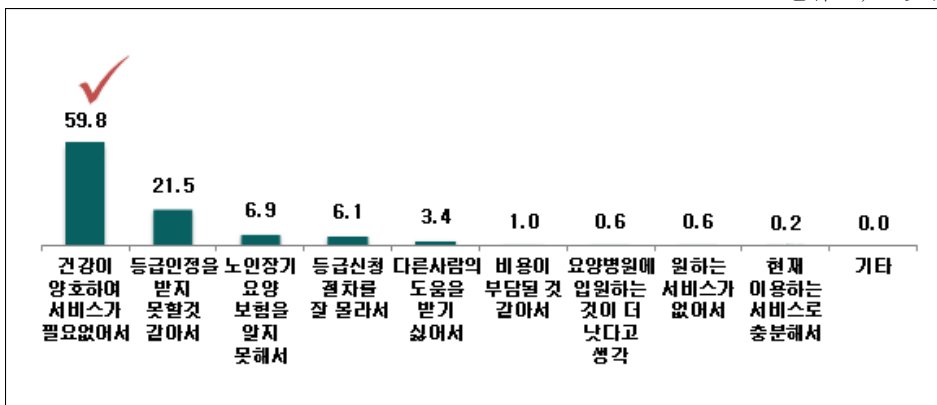
○ 농촌노인의 특성별(성별, 연령계층, 학력, 농업인 여부, 건강상태, 자녀동거 여부, 가구소득, 읍·면 지역)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여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chi^2=7.73$, $DF=1$, $P<.01$), 비농업인일수록($\chi^2=11.94$, $DF=1$, $P<.001$),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chi^2=5.87$, $DF=2$, $P<.05$) 등급신청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남.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하지 않은 응답자(N=507)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건강이 양호하여 서비스가 필요 없어서’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등급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가 21.5%,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알지 못해서’가 6.9%, ‘등급신청절차를 잘 몰라서’가 6.1%,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싫어서’가 3.4% 순으로 나타남<그림 4-5>.

- 상당수의 응답자들(13.0%)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와 교육이 부족해서 등급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신청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N=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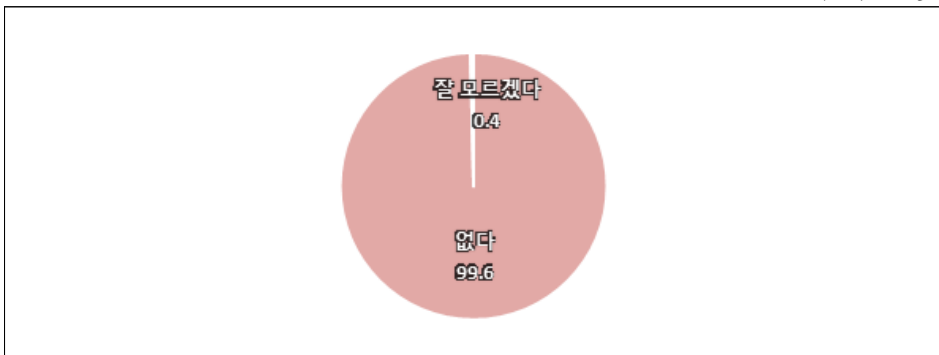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1.4. 산재보험

○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가구원 유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없다’라는 응답이 99.6%,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0.4%로 나타나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가구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알 수 있음<그림 4-6>.

그림 4-6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가구원 유무

단위: %, N=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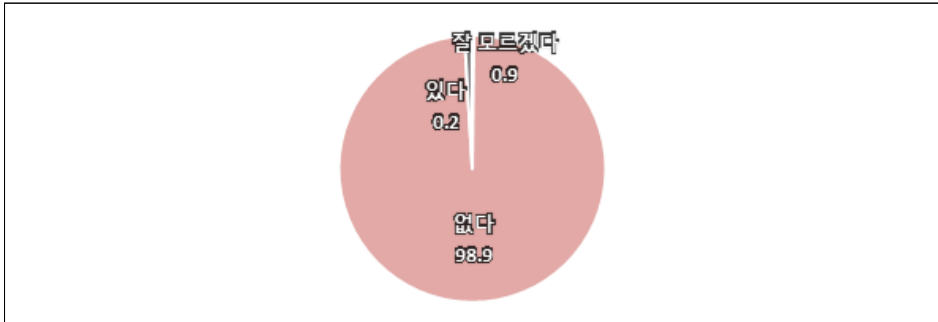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1.5. 고용보험

○ 고용보험 혜택을 받은 가구원 유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없다’라는 응답이 98.9%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잘 모르겠다’가 0.9%, ‘있다’가 0.2% 순으로 나타남. 고용보험 혜택을 받은 가구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그림 4-7>.

그림 4-7 고용보험 혜택을 받은 가구원 유무

단위: %, N=537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1.6.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혜택을 받은 가구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없다’라는 응답(농업인 대상)이 96.0%로 나타남.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3.7%에 불과하였음.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19)의 복지실태조사에서는 전체 농어가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은 16.8%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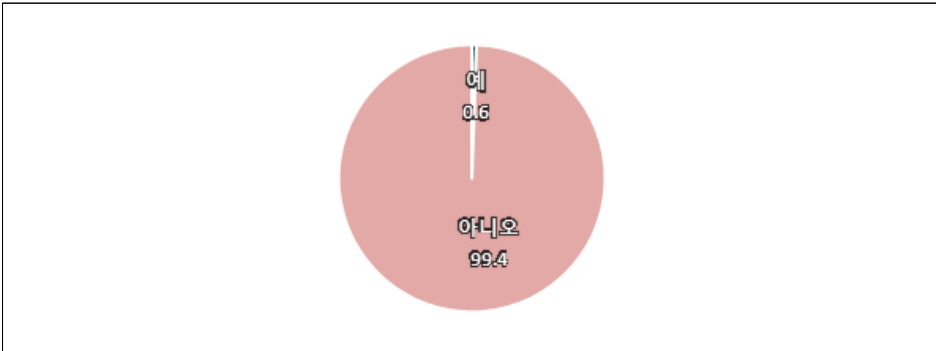
1.7. 농지연금³⁾

○ 농지연금 혜택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아니오’라는 응답이 99.4%, ‘예’라는 응답이 0.6%로 농지연금을 받지 않는 응답자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그림 4-8>.

³⁾ 농지연금은 농작물을 경작하는 땅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아님.

그림 4-8 농지연금 혜택 여부

단위: %, N=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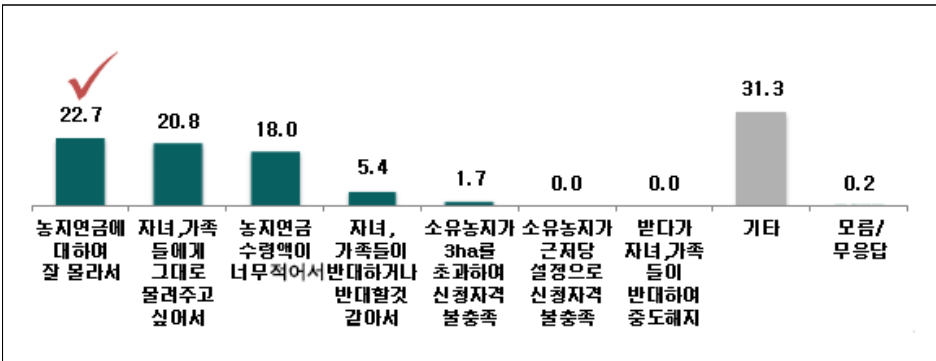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농지연금 혜택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농지연금혜택을 받지 않는 응답자(N=534)를 기준으로 ‘농지연금에 대해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농지를 자녀, 가족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어서’가 20.8%, ‘농지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어서’가 18.0%, ‘자녀, 가족들이 반대하거나 반대할 것 같아서’가 5.4% 순으로 나타남<그림 4-9>.

그림 4-9 농지연금 혜택을 받지 않는 이유

단위: %, N=534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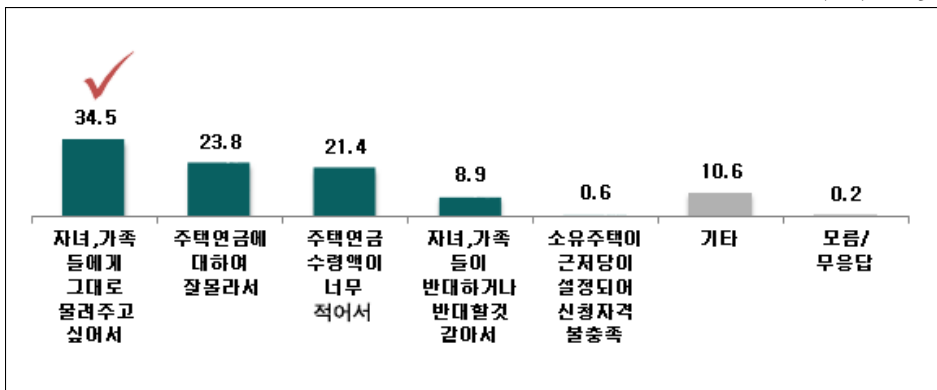
1.8. 주택연금⁴⁾

○ 주택연금 혜택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든 응답자가 주택연금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연금 혜택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주택을 자녀, 가족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주택연금에 대하여 잘 몰라서’가 23.8%, ‘주택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어서’가 21.4%, ‘자녀, 가족들이 반대하거나 반대할 것 같아서’가 8.9% 순으로 나타남<그림 4-10>.

그림 4-10 주택연금의 혜택을 받지 않는 이유

단위: %, N=537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4)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아님.

2. 공공부조 부문의 사회보장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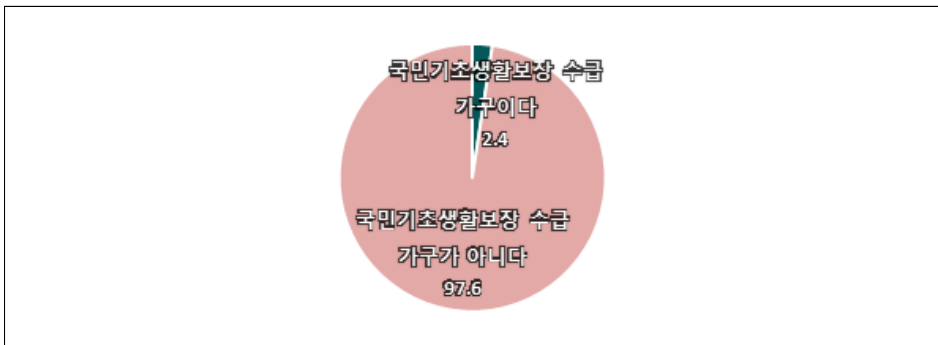
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아니다’라는 응답이 97.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이다’라는 응답이 2.4%로 나타나 아주 극소수의 가구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었음<그림 4-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은 농업인(0.4%)이 비농업인(4.5%)에 비해서 훨씬 낮았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정경희 외 2017)에서는 농촌노인의 4.9%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단위: %, N=537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농촌노인의 특성별(성별, 연령계층, 학력, 농업인 여부, 건강상태, 자녀동거 여부, 가구소득, 읍·면 지역)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비농업인일수록($\chi^2=9.84$, $DF=1$, $P<.00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인들은 농지나 농기계의 소유, 농업소

득 등으로 인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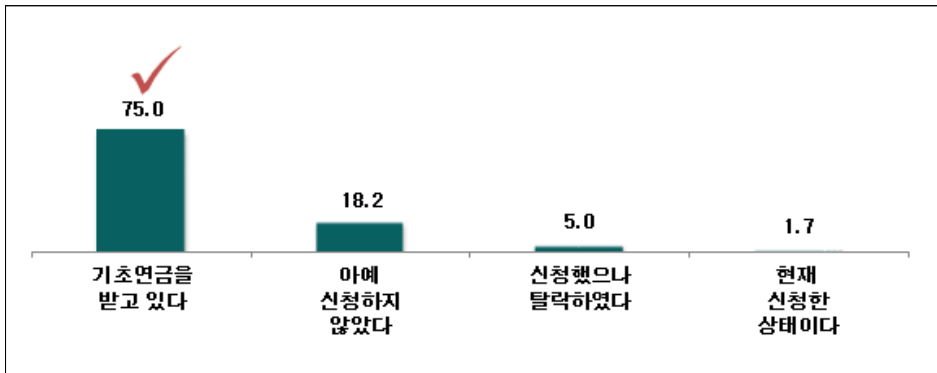
2.2. 기초연금

○ 기초연금 혜택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라는 응답이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가 18.2%, ‘신청했으나 탈락하였다’가 5.0%, ‘현재 신청한 상태이다’가 1.7% 순으로 나타남<그림 4-12>.

- 현재 농촌노인의 3/4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정경희 외 2017)에서는 전체 응답 노인(65세 이상)의 70.4%, 농촌(읍·면부) 거주 노인의 77.4%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2 기초연금 혜택 여부

단위: %, N=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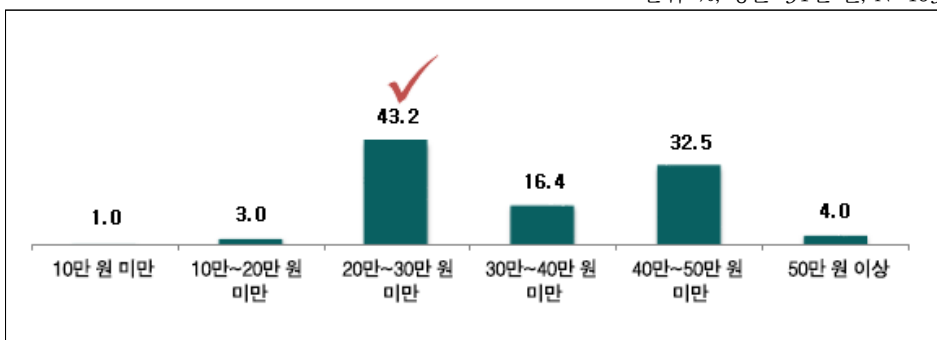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농촌노인의 특성별(성별, 연령계층, 학력, 농업인 여부, 건강상태, 자녀동거 여부, 가구소득, 읍·면 지역)로 기초연금 혜택 여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일수록($\chi^2=35.06$, $DF=3$, $P<.001$), 연령이 높을수록($\chi^2=36.85$, $DF=3$, $P<.001$), 학력이 낮을수록($\chi^2=66.80$, $DF=3$, $P<.001$),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chi^2=32.60$, $DF=6$, $P<.001$), 소득이 낮을수록($\chi^2=90.38$, $DF=6$, $P<.001$)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는 비율이 더 높았음.

○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응답자($N=403$)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매월 수령액에 대해 살펴본 결과, '20만~3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40만~50만 원 미만'이 32.5%, '30만~40만 원 미만'이 16.4%, '50만 원 이상'이 4.0%, '10만~20만 원 미만'이 3.0%, '10만 원 미만'이 1.0% 순으로 나타남<그림 4-13>.

그림 4-13 기초연금 매월 수령액

단위: %, 평균: 31만 원, $N=403$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응답자($N=27$)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탈락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재산이 많아서'라는 응답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근로소득이 많아서'가 25.9%, '탈락한 이유를 잘 모른다'가 18.5%, '공적 연금을 받고 있어서'가 14.8% 순으로 나타남.

○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은 응답자(N=98)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88.8%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받고 싶지 않아서’가 3.1%, ‘신청절차가 번거로워서’가 2.0%, ‘기초연금에 대하여 잘 몰라서’가 2.0% 순으로 나타남.

3. 사회서비스 부문의 사회보장 실태

3.1.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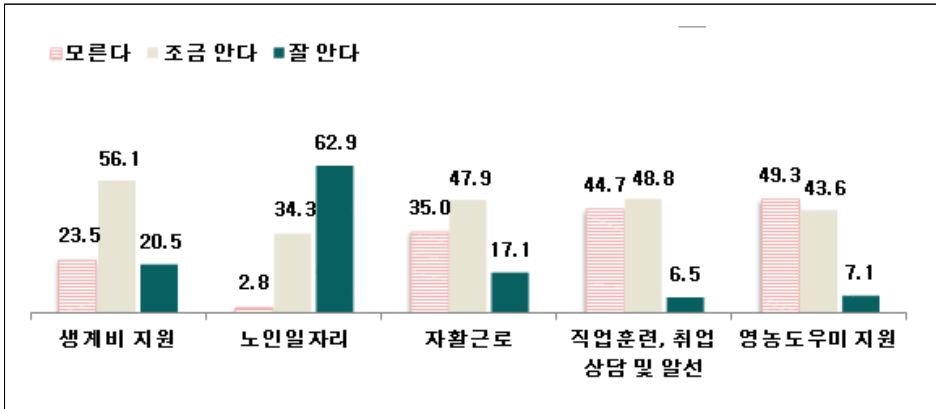
□ 인지도

○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서비스의 인지도(‘잘 안다’ 기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노인일자리’가 62.9%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생계비 지원’이 20.5%, ‘자활근로’가 17.1%, ‘영농도우미 지원’이 7.1% 순이었음<그림 4-14>.

- 서비스를 모르는 비율은 ‘영농도우미 지원’이 49.3%, ‘직업훈련, 취업상담 및 알선’이 44.7%로 나타나 많은 농촌노인들이 이들 서비스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14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서비스 인지도

단위: %, N=537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농촌노인의 특성별(성별, 연령계층, 학력, 농업인 여부, 건강상태, 자녀동거 여부, 가구소득, 읍·면 지역)로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서비스 인지도의 차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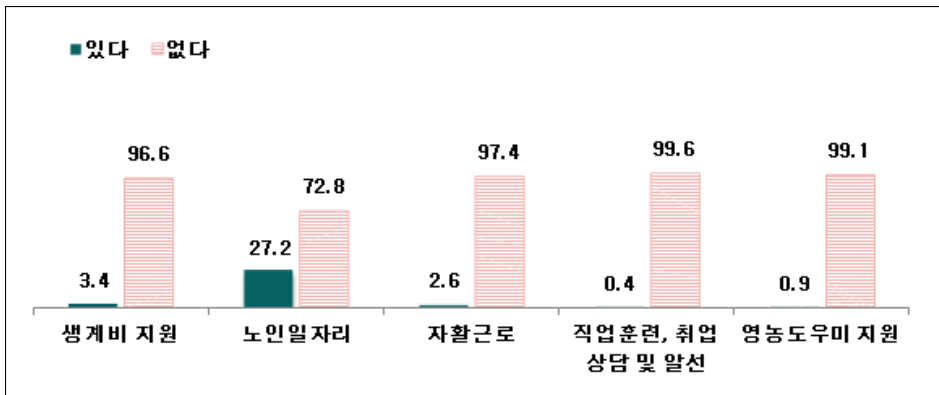
- ‘생계비 지원’은 면 지역일수록($\chi^2=35.06$, $DF=3$, $P<.001$)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음.
- ‘노인일자리’는 연령이 높을수록($\chi^2=9.10$, $DF=2$, $P<.01$)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음.
- ‘자활근로’는 여성일수록($\chi^2=7.38$, $DF=2$, $P<.05$)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음.
- ‘직업훈련, 취업 상담 및 알선’은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 ‘영농도우미 지원’은 여성일수록($\chi^2=5.80$, $DF=2$, $P<.05$)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음.

□ 이용경험

○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노인일자리’는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생계비 지원’이 3.4%, ‘자활근로’가 2.6%순으로 나타남<그림 4-15>.

그림 4-15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N=537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농촌노인의 특성별(성별, 연령계층, 학력, 농업인 여부, 건강상태, 자녀동거 여부, 가구소득, 읍·면 지역)로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의 차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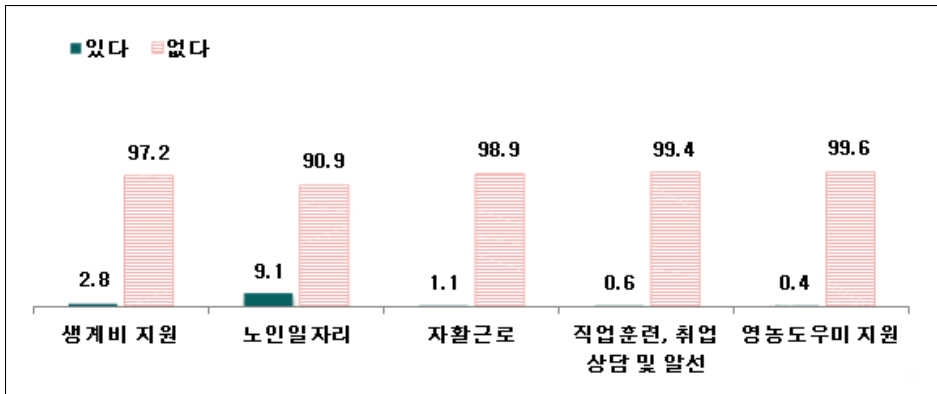
- ‘생계비 지원’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chi^2=6.13$, $DF=2$, $P<.05$) 이용경험의 비율이 더 높았음.
- ‘노인일자리’는 여성일수록($\chi^2=14.17$, $DF=1$, $P<.001$), 비농업인일수록($\chi^2=10.81$, $DF=1$, $P<.01$), 가구소득이 낮을수록($\chi^2=12.24$, $DF=2$, $P<.01$) 이용경험의 비율이 더 높았음.
- ‘자활근로’, ‘직업훈련, 취업 상담 및 알선’, ‘영농도우미 지원’은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이용경험의 차이가 없었음.

□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노인일자리’가 9.1%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생계비 지원’이 2.8%, ‘자활근로’가 1.1% 순으로 나타남(그림 4-16).

그림 4-16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단위: %, N=537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농촌노인의 특성별(성별, 연령계층, 학력, 농업인 여부, 건강상태, 자녀동거 여부, 가구소득, 읍·면 지역)로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의 차이 분석 결과

- ‘생계비 지원’은 비농업인일수록($\chi^2=8.60$, $DF=1$, $P<.01$), 건강상태가 나쁠수록($\chi^2=7.23$, $DF=2$, $P<.05$)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의 비율이 더 높았음.
- ‘노인일자리’는 연령이 높을수록($\chi^2=4.22$, $DF=1$, $P<.05$), 면 지역일수록($\chi^2=3.96$, $DF=1$, $P<.05$)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의 비율이 더 높았음.
- ‘자활근로’와 ‘직업훈련, 취업 상담 및 알선’은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 ‘영농도우미 지원’은 건강할수록($\chi^2=6.42$, $DF=2$, $P<.05$)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의 비율이 더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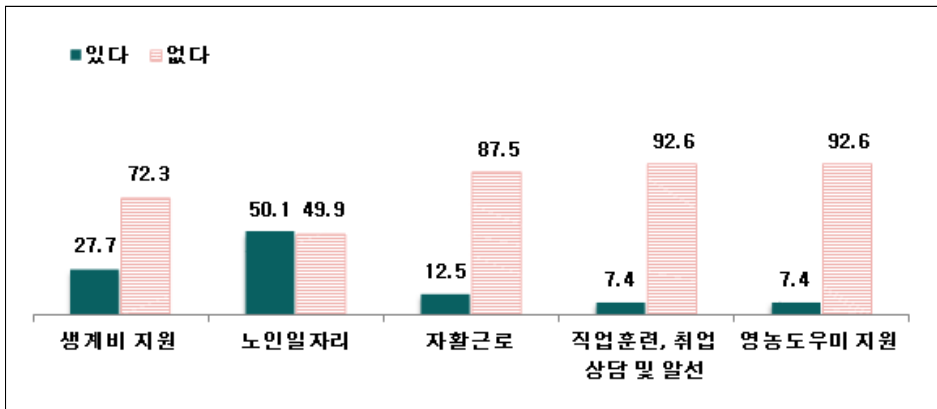
□ 향후 이용의사

○ 향후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의사에 대해 살펴본 결과, ‘노인 일자리’가 50.1%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생계비 지원’이 27.7%, ‘자활근로’가 12.5%, ‘직업훈련, 취업상담 및 알선’이 7.4%, ‘영농도우미 지원’이 7.4% 순으로 나타남<그림 4-17>.

- 노인일자리와 생계비 지원에 대한 농촌노인들의 향후 수요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17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서비스의 향후 이용의사

단위: %, N=537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농촌노인의 특성별(성별, 연령계층, 학력, 농업인 여부, 건강상태, 자녀동거 여부, 가구소득, 읍·면 지역)로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서비스의 향후 이용의사의 차이 분석 결과

- ‘생계비 지원’은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 ‘노인일자리’는 여성일수록($\chi^2=5.23$, $DF=1$, $P<.05$), 가구소득이 낮을수록($\chi^2=6.98$, $DF=2$, $P<.05$), 면 지역일수록($\chi^2=16.11$, $DF=1$, $P<.001$) 향후 이용의사가 더 높았음.
- ‘자활근로’는 면 지역일수록($\chi^2=4.03$, $DF=1$, $P<.05$) 향후 이용의사가 더 높았음.
- ‘직업훈련, 취업 상담 및 알선’은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 ‘영농도우미 지원’은 농업인일수록($\chi^2=6.47$, $DF=1$, $P<.05$) 향후 이용의사가 더 높았음.

3.2.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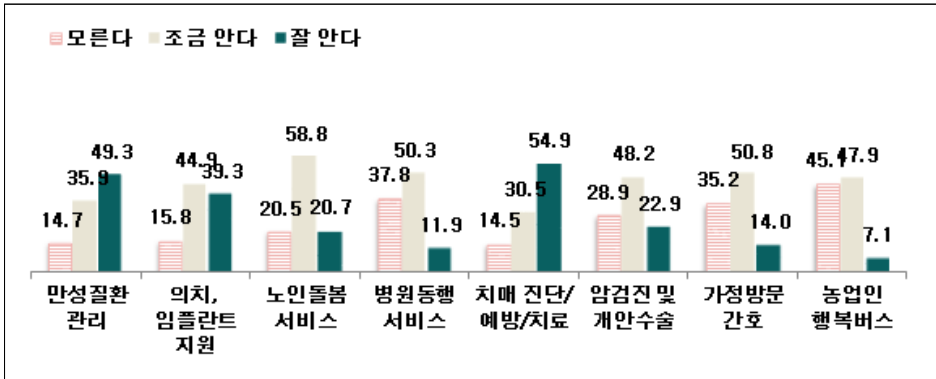
□ 인지도

○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의 인지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치매 진단·예방·치료’라는 응답이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만성질환 관리’가 49.3%, ‘의치, 임플란트 지원’이 39.3%, ‘암검진 및 개안수술’이 22.9%, ‘노인 돌봄서비스’가 20.7%, ‘가정방문간호’가 14.0%, ‘병원동행서비스’가 11.9%, ‘농업인행복버스’가 7.1% 순으로 나타남<그림 4-18>.

- 서비스를 모르는 비율은 ‘농업인행복버스’가 45.1%, ‘병원동행서비스’가 37.8%, ‘가정방문간호’가 35.2%로 나타나 상당수의 농촌노인들이 이들 서비스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18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 인지도

단위: %, N=537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농촌노인의 특성별(성별, 연령계층, 학력, 농업인 여부, 건강상태, 자녀동거 여부, 가구소득, 읍·면 지역)로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 인지도의 차이 분석 결과

- ‘만성질환 관리’는 여성일수록($\chi^2=10.02$, $DF=2$, $P<.01$), 건강할수록($\chi^2=15.16$, $DF=4$, $P<.01$), 자녀와 동거하지 않을수록($\chi^2=8.76$, $DF=2$, $P<.05$), 가구소득이 중간수준일수록($\chi^2=16.39$, $DF=4$, $P<.01$)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음.
- ‘의치, 임플란트 지원’은 면 지역일수록($\chi^2=7.79$, $DF=2$, $P<.05$)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음.
- ‘노인돌봄서비스’는 학력이 높을수록($\chi^2=10.08$, $DF=2$, $P<.01$), 농업인일수록($\chi^2=6.09$, $DF=2$, $P<.05$), 가구소득이 높을수록($\chi^2=9.56$, $DF=4$, $P<.05$) ‘잘 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음.
- ‘병원동행서비스’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chi^2=13.84$, $DF=4$, $P<.01$) ‘잘 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음.
- ‘치매 진단·예방·치료’는 학력이 높을수록($\chi^2=9.56$, $DF=2$, $P<.01$), 자녀동거 가구일수록($\chi^2=8.95$, $DF=2$, $P<.01$) ‘잘 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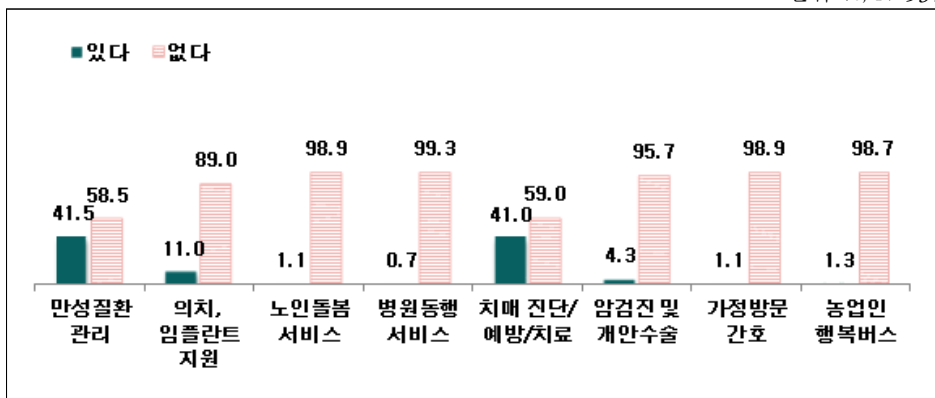
- ‘암 검진 및 개안수술’은 면 지역일수록($\chi^2=6.50$, $DF=2$, $P<.05$)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음.
- ‘가정방문간호’와 ‘농업인행복버스’는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 이용경험

-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만성질환 관리’라는 응답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치매 진단·예방·치료’가 41.0%, ‘의치, 임플란트 지원’이 11.0% 순으로 나타남<그림 4-19>.

그림 4-19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N=537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농촌노인의 특성별(성별, 연령계층, 학력, 농업인 여부, 건강상태, 자녀동거 여부, 가구소득, 읍·면 지역)로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의 차이 분석 결과

- ‘만성질환 관리’는 연령이 높을수록($\chi^2=12.73$, $DF=1$, $P<.001$), 건강이 나쁠수록($\chi^2=30.38$, $DF=2$, $P<.001$), 자녀동거가구일수록($\chi^2=9.48$, $DF=$

=1, $P<.001$), 가구소득이 높을수록($\chi^2=6.28$, $DF=2$, $P<.05$) 이용경험의 비율이 더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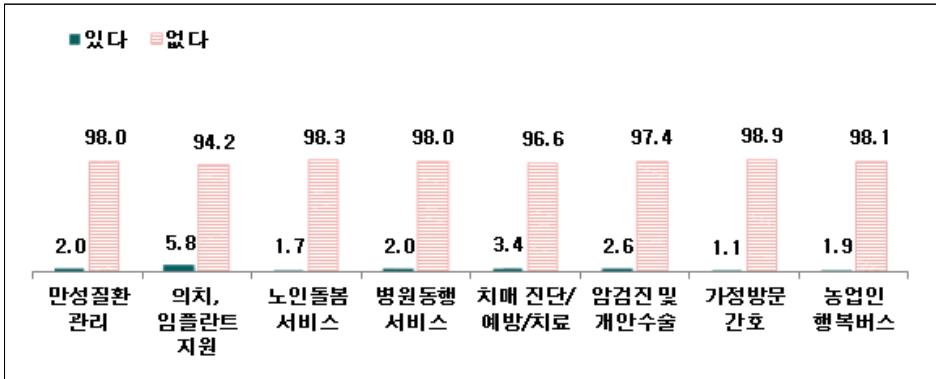
- ‘의치, 임플란트 지원’은 자녀와 동거하지 않을수록($\chi^2=5.71$, $DF=1$, $P<.05$), 읍 지역일수록($\chi^2=6.64$, $DF=1$, $P<.05$) 이용경험의 비율이 더 높았음.
- ‘노인돌봄서비스’는 건강상태가 나쁠수록($\chi^2=6.24$, $DF=2$, $P<.05$) 이용경험의 비율이 더 높았음.
- ‘병원동행서비스’는 농촌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 ‘치매 진단·예방·치료’는 연령이 높을수록($\chi^2=11.15$, $DF=1$, $P<.001$), 건강상태가 나쁠수록($\chi^2=15.87$, $DF=2$, $P<.001$), 자녀동거 가구일수록($\chi^2=10.09$, $DF=1$, $P<.01$) 이용경험의 비율이 더 높았음.
- ‘암 검진 및 개안수술’은 읍 지역일수록($\chi^2=10.05$, $DF=1$, $P<.001$) 이용경험의 비율이 더 높았음.
- ‘가정방문간호’와 ‘농업인행복버스’는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의치, 임플란트 지원’이라는 응답이 5.8%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치매 진단·예방·치료’가 3.4%, ‘암 검진 및 개안수술’이 2.6%, ‘만성질환 관리’가 2.0%, ‘병원동행서비스’가 2.0% 순으로 나타남(그림 4-20).

그림 4-20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단위: %, N=537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농촌노인의 특성별(성별, 연령계층, 학력, 농업인 여부, 건강상태, 자녀동거 여부, 가구소득, 읍·면 지역)로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의 차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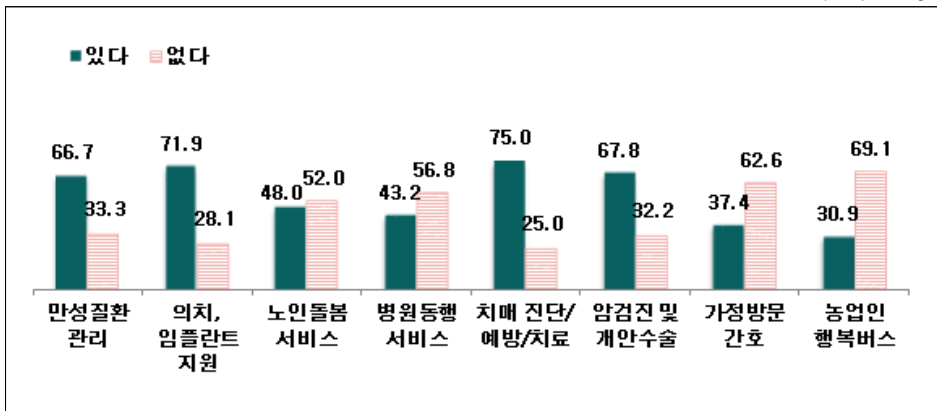
- ‘만성질환 관리’는 면 지역일수록($\chi^2=4.63$, $DF=1$, $P<.05$)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의 비율이 더 높았음.
- ‘의치, 임플란트 지원’과 ‘노인돌봄서비스’는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 ‘병원동행서비스’는 여성일수록($\chi^2=4.63$, $DF=1$, $P<.05$)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의 비율이 더 높았음.
- ‘치매 진단·예방·치료’는 농촌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 ‘암 검진 및 개안수술’은 농업인일수록($\chi^2=4.48$, $DF=1$, $P<.05$)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의 비율이 더 높았음.
- ‘가정방문간호’는 연령이 높을수록($\chi^2=4.87$, $DF=1$, $P<.05$)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의 비율이 더 높았음.
- ‘농업인행복버스’는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 향후 이용의사

- 향후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의사에 대해 살펴본 결과, ‘치매 진단·예방·치료’라는 응답이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의치, 임플란트 지원’이 71.9%, ‘암 검진 및 개안수술’이 67.8%, ‘만성질환 관리’가 66.7%, ‘노인 돌봄서비스’가 48.0%, ‘병원동행서비스’가 43.2% 순으로 나타남(그림 4-21).

그림 4-21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의 향후 이용 의사

단위: %, N=537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농촌노인의 특성별(성별, 연령계층, 학력, 농업인 여부, 건강상태, 자녀동거 여부, 가구소득, 읍·면 지역)로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의 향후 이용의사의 차이 분석 결과

- ‘만성질환 관리’는 농업인일수록($\chi^2=3.81$, $DF=1$, $P<.05$), 면 지역일수록($\chi^2=9.69$, $DF=1$, $P<.01$) 향후 이용의사가 더 높았음.
- ‘의치, 임플란트 지원’은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 ‘노인돌봄서비스’는 여성일수록($\chi^2=5.62$, $DF=1$, $P<.05$),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chi^2=7.54$, $DF=2$, $P<.05$), 가구소득이 낮을수록($\chi^2=11.89$,

DF=2, $P < .01$) 향후 이용의사가 더 높았음.

- ‘병원동행서비스’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chi^2=6.71$, DF=2, $P < .05$), 가구소득이 낮을수록($\chi^2=20.45$, DF=2, $P < .001$) 향후 이용의사가 더 높았음.
- ‘치매 진단·예방·치료’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chi^2=7.51$, DF=2, $P < .05$) 향후 이용의사가 더 높았음.
- ‘암 검진 및 개안수술’은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 ‘가정방문간호’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chi^2=8.50$, DF=2, $P < .05$) 향후 이용의사가 더 높았음.
- ‘농업인행복버스’는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3.3. 의식주 관련 사회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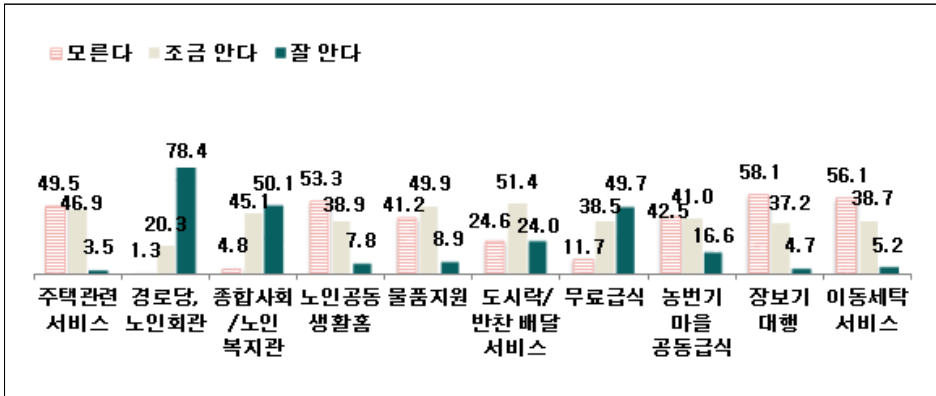
□ 인지도

○ 의식주 관련 사회서비스의 인지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경로당·노인회관’이라는 응답이 78.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종합사회·노인복지관’이 50.1%, ‘무료급식’이 49.7%, ‘도시락·반찬 배달서비스’가 24.0%,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이 16.6%, ‘물품 지원’이 8.9%, ‘노인공동 생활홈’이 7.8% 순으로 나타남<그림 4-22>.

- 특히, ‘이동세탁 서비스’, ‘장보기 대행’, ‘주택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농촌노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22 의식주 관련 사회서비스 인지도

단위: %, N=537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농촌노인의 특성별(성별, 연령계층, 학력, 농업인 여부, 건강상태, 자녀동거 여부, 가구소득, 읍·면 지역)로 의식주 관련 사회서비스 인지도의 차이 분석 결과
- ‘주거 관련 서비스’는 여성일수록($\chi^2=12.44$, $DF=2$, $P<.01$), 비농업인일수록($\chi^2=7.50$, $DF=2$, $P<.05$)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음.
 - ‘경로당, 노인회관’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chi^2=10.84$, $DF=4$, $P<.05$), 자녀동거가구일수록($\chi^2=13.97$, $DF=2$, $P<.01$), 읍 지역일수록($\chi^2=9.57$, $DF=2$, $P<.01$)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음.
 -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chi^2=9.54$, $DF=4$, $P<.05$), 면 지역일수록($\chi^2=13.15$, $DF=2$, $P<.01$) ‘잘 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음.
 - ‘노인공동생활홈’은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 ‘물품 지원’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chi^2=21.79$, $DF=4$, $P<.001$)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음.
 - ‘도시락·반찬 배달 서비스’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chi^2=16.01$, $DF=4$, $P<.01$) ‘잘 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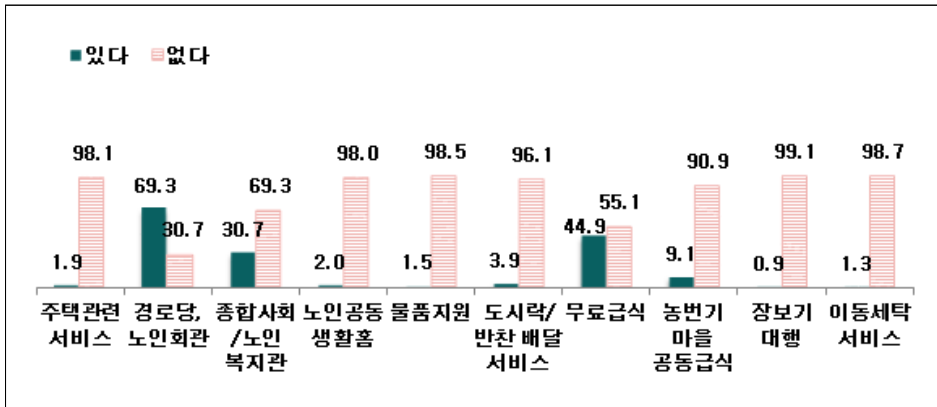
- ‘무료급식’은 연령이 높을수록($\chi^2=7.15$, $DF=2$, $P<.05$), 면 지역일수록($\chi^2=6.13$, $DF=2$, $P<.05$) ‘잘 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음.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chi^2=9.97$, $DF=4$, $P<.05$) ‘잘 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음.
- ‘장보기 대행’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chi^2=17.01$, $DF=4$, $P<.01$) 가구소득이 높을수록($\chi^2=11.53$, $DF=4$, $P<.05$) ‘잘 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음.
- ‘이동세탁서비스’는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 이용경험

○ 의식주 관련 사회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경로당·노인회관’이라는 응답이 69.3%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무료급식’이 44.9%, ‘종합사회·노인복지관’이 30.7% 순으로 나타남<그림 4-23>.

그림 4-23 의식주 관련 사회서비스의 이용경험

단위: %, N=537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도시락·반찬 배달 서비스’, ‘노인공동생활홈’의 이용경험이 낮은 것은 일부 지역 또는 계층을 대상으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농촌노인의 특성별(성별, 연령계층, 학력, 농업인 여부, 건강상태, 자녀동거 여부, 가구소득, 읍·면 지역)로 의식주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의 차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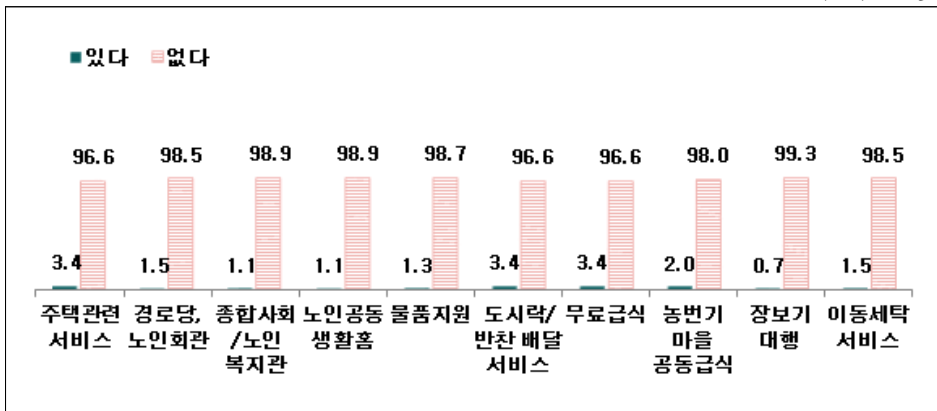
- ‘주택 관련 서비스’는 농촌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 ‘경로당, 노인회관’은 연령이 높을수록($\chi^2=21.37$, $DF=1$, $P<.001$),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chi^2=10.84$, $DF=4$, $P<.05$), 자녀동거가구일수록($\chi^2=5.56$, $DF=1$, $P<.05$), 가구소득이 낮을수록($\chi^2=12.68$, $DF=2$, $P<.01$) 이용경험이 더 있었음.
-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은 연령이 높을수록($\chi^2=5.48$, $DF=1$, $P<.05$), 가구소득이 낮을수록($\chi^2=14.24$, $DF=2$, $P<.01$) 이용경험이 더 있었음.
- ‘노인공동생활홈’은 건강상태가 보통수준일수록($\chi^2=12.45$, $DF=2$, $P<.01$) 이용경험이 더 있었음.
- ‘물품 지원’은 건강상태가 보통수준일수록($\chi^2=7.83$, $DF=2$, $P<.05$) 이용경험이 더 있었음.
- ‘도시락·반찬 배달 서비스’는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 ‘무료급식’은 연령이 높을수록($\chi^2=10.16$, $DF=1$, $P<.01$), 학력이 낮을수록($\chi^2=4.71$, $DF=1$, $P<.05$), 건강상태가 나쁠수록($\chi^2=18.10$, $DF=2$, $P<.001$), 자녀동거가구일수록($\chi^2=9.40$, $DF=1$, $P<.01$) 이용경험이 더 있었음.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장보기 대행’, ‘이동세탁서비스’는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 의식주 관련 사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주택 관련 서비스’와 ‘도시락·반찬 배달서비스’와 ‘무료급식’이라는 응답이 각각 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이 2.0%, ‘경로당·노인회관’이 1.5% 순으로 나타남<그림 4-24>.

그림 4-24 의식주 관련 사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단위: %, N=537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농촌노인의 특성별(성별, 연령계층, 학력, 농업인 여부, 건강상태, 자녀동거 여부, 가구소득, 읍·면 지역)로 의식주 관련 사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의 차이 분석 결과

- ‘주택 관련 서비스’, ‘경로당, 노인회관’,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노인공동생활홈’, ‘물품 지원’은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 ‘도시락·반찬 배달서비스’는 비농업인일수록($\chi^2=6.02$, $DF=1$, $P<.05$)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이 더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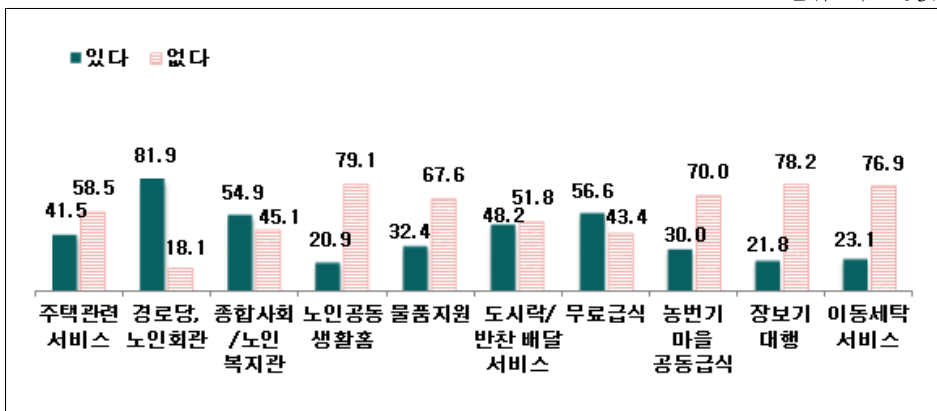
- ‘무료급식’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chi^2=6.13$, $DF=2$, $P<.05$)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이 더 있었음.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과 ‘장보기 대행’은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 ‘이동세탁서비스’는 여성일수록($\chi^2=4.64$, $DF=1$, $P<.05$)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이 더 있었음.

□ 향후 이용의사

○ 향후 의식주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의사에 대해 살펴본 결과, ‘경로당·노인회관’이라는 응답이 8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무료급식’이 56.6%, ‘종합사회·노인복지관’이 54.9%, ‘도시락·반찬 배달서비스’가 48.2%, ‘주택 관련 서비스’가 41.5%, ‘물품 지원’이 32.4%,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이 30.0% 순으로 나타남<그림 4-25>.

그림 4-25 의식주 관련 사회서비스의 향후 이용의사

단위: %, N=537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농촌노인의 특성별(성별, 연령계층, 학력, 농업인 여부, 건강상태, 자녀동거 여부, 가구소득, 읍·면 지역)로 의식주 관련 사회서비스 향후 이용의사의 차이가 분석 결과

- ‘주택 관련 서비스’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chi^2=7.26$, $DF=2$, $P<.05$) 향후 이용의사가 더 높았음.
- ‘경로당, 노인회관’은 면지역일수록($\chi^2=4.29$, $DF=1$, $P<.05$) 향후 이용의사가 더 높았음.
-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은 건강상태가 보통수준일수록($\chi^2=10.88$, $DF=2$, $P<.01$), 가구소득이 낮을수록($\chi^2=13.79$, $DF=2$, $P<.01$) 향후 이용의사가 더 높았음.
- ‘노인공동생활홈’은 건강상태가 보통수준일수록($\chi^2=18.32$, $DF=2$, $P<.001$) 향후 이용의사가 더 높았음.
- ‘물품 지원’은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 ‘도시락·반찬 배달서비스’는 연령이 높을수록($\chi^2=7.99$, $DF=1$, $P<.01$), 가구소득이 높을수록($\chi^2=9.47$, $DF=2$, $P<.01$) 향후 이용의사가 더 높았음.
- ‘무료급식’은 연령이 높을수록($\chi^2=3.92$, $DF=1$, $P<.05$), 건강상태가 나쁠수록($\chi^2=6.32$, $DF=2$, $P<.05$) 향후 이용의사가 더 높았음.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농업인일수록($\chi^2=6.42$, $DF=1$, $P<.05$), 가구소득이 낮을수록($\chi^2=7.19$, $DF=2$, $P<.05$) 향후 이용의사가 더 높았음.
- ‘장보기 대행’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chi^2=8.42$, $DF=2$, $P<.05$) 향후 이용의사가 더 높았음.
- ‘이동세탁서비스’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chi^2=7.76$, $DF=2$, $P<.05$) 향후 이용의사가 더 높았음.

3.4. 사회교육 관련 사회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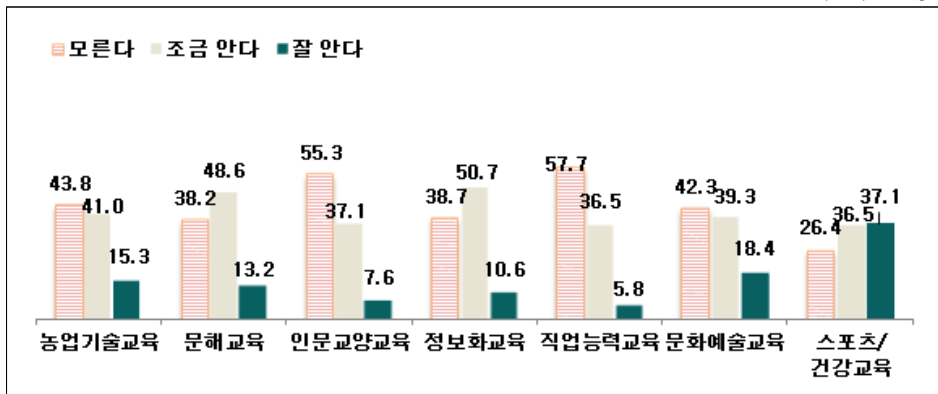
□ 인지도

○ 사회교육 관련 사회서비스의 인지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스포츠·건강교육’이라는 응답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이 18.4%, ‘농업기술교육’이 15.3%, ‘문해교육’이 13.2%, ‘정보화교육’이 10.6% 순으로 나타남<그림 4-26>.

- 서비스를 모르는 비율은 ‘직업능력교육’이 57.7%, ‘인문교양교육’이 55.3%, ‘농업기술교육’이 43.8%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6 사회교육 관련 사회서비스 인지도

단위: %, N=537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농촌노인의 특성별(성별, 연령계층, 학력, 농업인 여부, 건강상태, 자녀동거 여부, 가구소득, 읍·면 지역)로 사회교육 관련 사회서비스 인지도의 차이 분석 결과

- ‘농업기술교육’은 여성일수록($\chi^2=55.81$, $DF=2$, $P<.001$), 연령이 높을수록($\chi^2=22.29$, $DF=2$, $P<.001$), 비농업인일수록($\chi^2=48.64$, $DF=2$, $P<.001$), 건강상태가 나쁠수록($\chi^2=17.48$, $DF=4$, $P<.01$),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chi^2=25.36$, $DF=4$, $P<.001$), 면 지역일수록($\chi^2=6.52$, $DF=2$, $P<.05$)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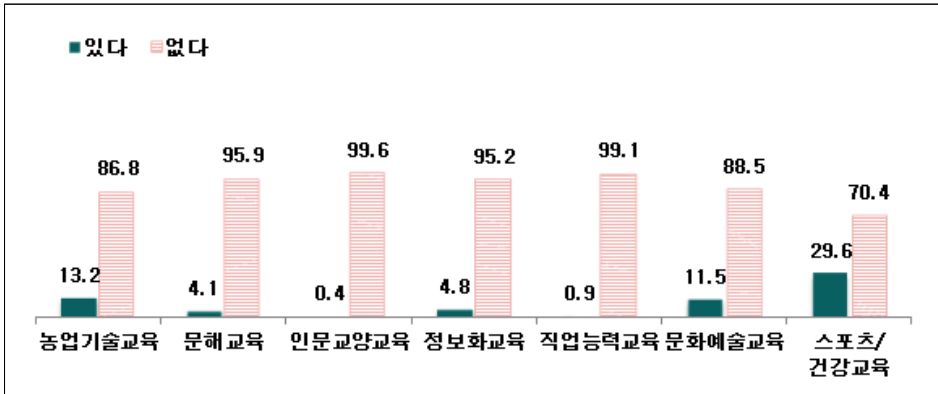
- ‘문해교육’은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 ‘인문교양교육’은 남성일수록($\chi^2=12.99$, $DF=2$, $P<.01$) ‘잘 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음.
- ‘정보화교육’은 학력이 높을수록($\chi^2=8.73$, $DF=2$, $P<.05$), 가구소득이 중간수준일수록($\chi^2=11.76$, $DF=4$, $P<.05$), 면 지역일수록($\chi^2=8.96$, $DF=2$, $P<.05$) ‘잘 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음.
- ‘직업능력교육’은 여성일수록($\chi^2=15.08$, $DF=2$, $P<.01$), 학력이 낮을수록($\chi^2=19.25$, $DF=2$, $P<.001$),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chi^2=12.60$, $DF=4$, $P<.05$), 소득이 낮을수록($\chi^2=9.98$, $DF=4$, $P<.05$)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음.
- ‘문화예술교육’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chi^2=16.51$, $DF=4$, $P<.01$), 자녀동거가구가 아닐수록($\chi^2=8.88$, $DF=2$, $P<.05$)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음.
- ‘스포츠·건강교육’은 여성일수록($\chi^2=10.01$, $DF=2$, $P<.001$), 자녀동거가구가 아닐수록($\chi^2=7.84$, $DF=2$, $P<.05$), 가구소득이 높을수록($\chi^2=11.32$, $DF=4$, $P<.05$)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음.

□ 이용경험

○ 사회교육 관련 사회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스포츠·건강교육’이라는 응답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농업기술교육’이 13.2%, ‘문화예술교육’이 11.5%, ‘정보화교육’이 4.8%, ‘문해교육’이 4.1% 순으로 나타남<그림 4-27>.

그림 4-27 사회교육 관련 사회서비스의 이용경험

단위: %, N=537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농촌노인의 특성별(성별, 연령계층, 학력, 농업인 여부, 건강상태, 자녀동거 여부, 가구소득, 읍·면 지역)로 사회교육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의 차이 분석 결과
- ‘농업기술교육’은 남성일수록($\chi^2=55.81$, $DF=2$, $P<.001$), 학력이 높을수록($\chi^2=9.08$, $DF=1$, $P<.01$), 농업인일수록($\chi^2=47.47$, $DF=1$, $P<.001$), 건강상태가 좋을수록($\chi^2=13.39$, $DF=2$, $P<.01$), 자녀동거가구일수록($\chi^2=6.75$, $DF=1$, $P<.05$), 가구소득이 높을수록($\chi^2=20.71$, $DF=2$, $P<.001$) 이용경험이 더 있었음.
 - ‘문해교육’은 여성일수록($\chi^2=4.86$, $DF=1$, $P<.05$), 비농업인일수록($\chi^2=9.68$, $DF=1$, $P<.01$), 가구소득이 낮을수록($\chi^2=8.46$, $DF=2$, $P<.05$) 이용경험이 더 있었음.
 - ‘인문교양교육’은 자녀동거가구일수록($\chi^2=16.58$, $DF=1$, $P<.05$) 이용경험이 더 있었음.
 - ‘정보화교육’은 연령이 낮을수록($\chi^2=4.82$, $DF=1$, $P<.05$), 학력이 낮을수록($\chi^2=4.78$, $DF=1$, $P<.05$), 농업인일수록($\chi^2=5.50$, $DF=1$, $P<.05$) 이용경험이 더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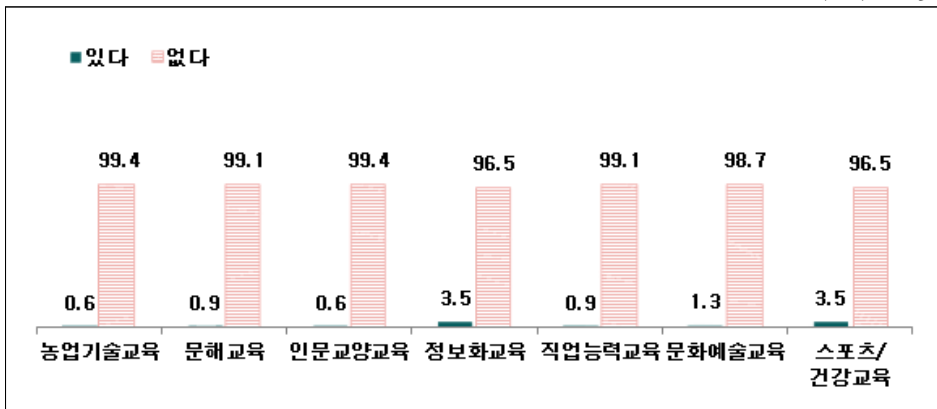
- ‘직업능력교육’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chi^2=9.01$, $DF=2$, $P<.05$) 이용경험이 더 있었음.
- ‘문화예술교육’은 여성일수록($\chi^2=4.87$, $DF=2$, $P<.05$), 자녀동거가구일수록($\chi^2=7.52$, $DF=1$, $P<.05$) 이용경험이 더 있었음.
- ‘스포츠·건강교육’은 건강상태가 나쁠수록($\chi^2=11.64$, $DF=2$, $P<.01$), 가구소득이 높을수록($\chi^2=7.06$, $DF=2$, $P<.05$), 면 지역일수록($\chi^2=5.10$, $DF=4$, $P<.05$) 이용경험이 더 있었음.

□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 사회교육 관련 사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스포츠·건강교육’과 ‘정보화교육’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는 ‘문화예술교육’이 1.3%. ‘문해교육’이 0.9% 순으로 나타남<그림 4-28>.

그림 4-28 사회교육 관련 사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단위: %, N=537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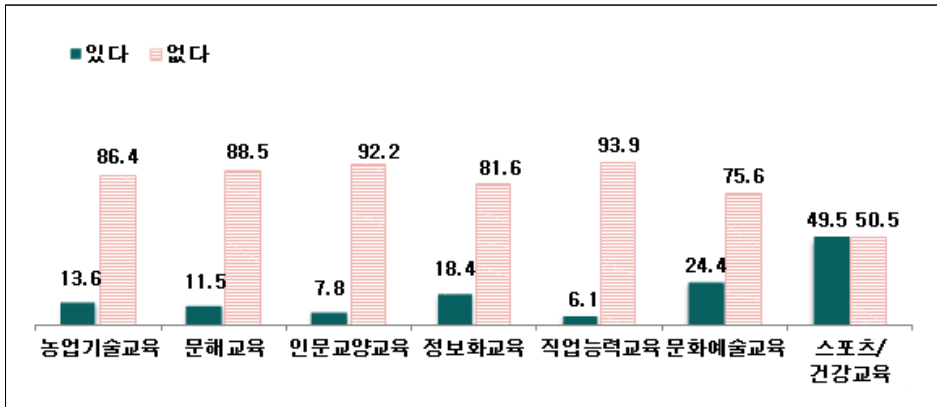
- 농촌노인의 특성별(성별, 연령계층, 학력, 농업인 여부, 건강상태, 자녀동거 여부, 가구소득, 읍·면 지역)로 사회교육 관련 사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의 차이 분석 결과 모든 서비스에서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 향후 이용의사

- 향후 사회교육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의사에 대해 살펴본 결과, ‘스포츠·건강 교육’이라는 응답이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이 24.4%, ‘정보화교육’이 18.4%, ‘농업기술교육’이 13.6%, ‘문해교육’이 11.5% 순으로 나타남<그림 4-29>.

그림 4-29 사회교육 관련 사회서비스의 향후 이용의사

단위: %, N=537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농촌노인의 특성별(성별, 연령계층, 학력, 농업인 여부, 건강상태, 자녀동거 여부, 가구소득, 읍·면 지역)로 사회교육 관련 사회서비스의 향후 이용의사의 차이 분석 결과

- ‘농업기술교육’은 여성일수록($\chi^2=4.37$, $DF=1$, $P<.05$), 농업인일수록($\chi^2=28.04$, $DF=1$, $P<.001$), 가구소득이 높을수록($\chi^2=9.894$, $DF=2$, $P<.01$) 향후 이용의사 더 높았음.
- ‘문해교육’은 여성일수록($\chi^2=4.87$, $DF=1$, $P<.05$), 건강상태가 나쁠수록($\chi^2=7.17$, $DF=2$, $P<.05$) 향후 이용의사 더 높았음.
- ‘인문교양교육’, ‘정보화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스포츠·건강교육’은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3.5. 기타 사회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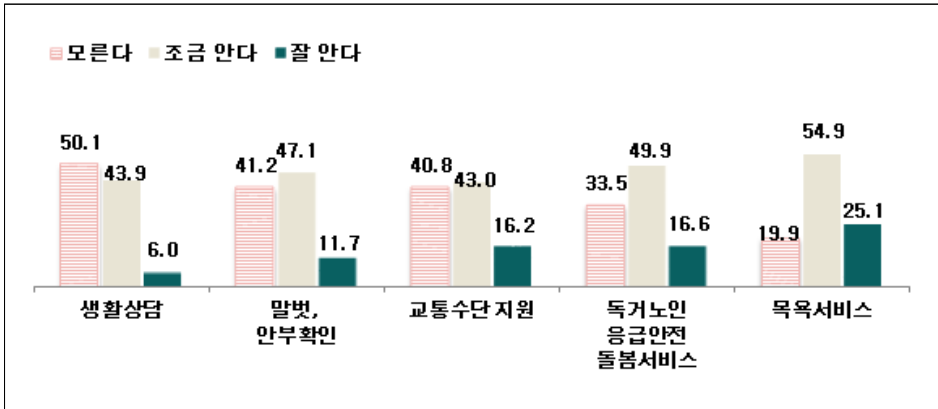
□ 인지도

○ 기타 사회서비스의 인지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목욕서비스’라는 응답이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가 16.6%, ‘교통수단 지원’이 16.2%, ‘말벗, 안부 확인’이 11.7%, ‘생활상담’이 6.0% 순으로 나타남<그림 4-30>.

- 서비스를 모르는 비율은 ‘생활상담’이 50.1%, ‘말벗, 안부 확인’이 41.2%, ‘교통수단 지원’이 40.8%로 나타나 많은 농촌노인들이 이들 서비스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30 기타 사회서비스 인지도

단위: %, N=537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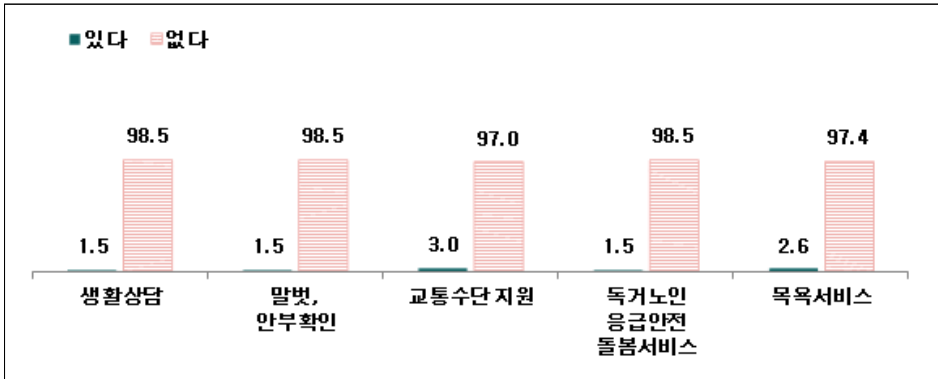
- 농촌노인의 특성별(성별, 연령계층, 학력, 농업인 여부, 건강상태, 자녀동거 여부, 가구소득, 읍·면 지역)로 기타 사회서비스 인지도의 차이 분석 결과
 - ‘생활상담’은 남성일수록($\chi^2=6.41$, $DF=2$, $P<.05$), 학력이 높을수록($\chi^2=7.64$, $DF=2$, $P<.05$), 농업인일수록($\chi^2=6.14$, $DF=2$, $P<.05$) ‘잘 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음.
 - ‘말벗, 안부 확인’, ‘교통수단 지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 ‘목욕서비스’는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 이용경험

- 기타 사회서비스의 이용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교통수단 지원’이라는 응답이 3.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목욕서비스’가 2.6%, ‘생활상담’, ‘말벗, 안부 확인’,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가 각각 1.5%로 나타남(그림 4-31).

그림 4-31 기타 사회서비스의 이용경험

단위: %, N=537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농촌노인의 특성별(성별, 연령계층, 학력, 농업인 여부, 건강상태, 자녀동거 여부, 가구소득, 읍·면 지역)로 기타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의 차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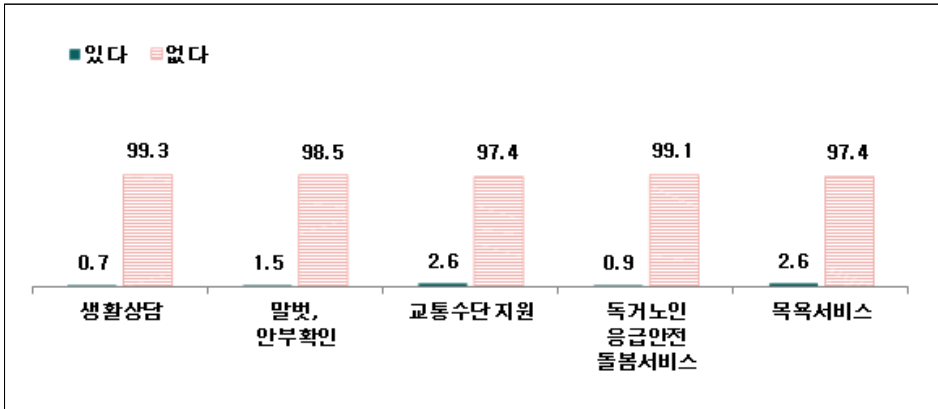
- ‘생활상담’은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 ‘말벗, 안부 확인’은 비농업인일수록($\chi^2=4.73$, $DF=1$, $P<.05$) 이용경험이 더 있었음.
- ‘교통수단 지원’은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는 건강상태가 나쁠수록($\chi^2=9.53$, $DF=2$, $P<.01$) 이용경험이 더 있었음.
- ‘목욕서비스’는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 기타 사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교통수단 지원’과 ‘목욕서비스’라는 응답이 각각 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말벗, 안부 확인’이 1.5% 순이었음(그림 4-32).

그림 4-32 기타 사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단위: %, N=537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농촌노인의 특성별(성별, 연령계층, 학력, 농업인 여부, 건강상태, 자녀동거 여부, 가구소득, 읍·면 지역)로 기타 사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의 차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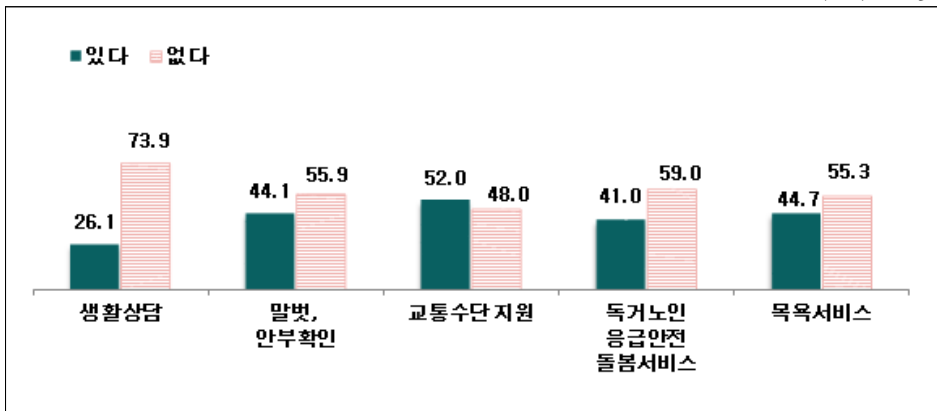
- ‘생활상담’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chi^2=6.11$, $DF=2$, $P<.05$)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이 더 있었음.
- ‘말뼉, 안부 확인’은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 ‘교통수단 지원’은 여성일수록($\chi^2=4.79$, $DF=1$, $P<.05$), 비농업인일수록($\chi^2=4.91$, $DF=1$, $P<.05$), 가구소득이 낮을수록($\chi^2=6.45$, $DF=2$, $P<.05$)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이 더 있었음.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는 여성일수록($\chi^2=5.10$, $DF=1$, $P<.05$)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이 더 있었음.
- ‘목욕서비스’는 연령이 높을수록($\chi^2=5.32$, $DF=1$, $P<.05$)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이 더 있었음.

□ 향후 이용의사

○ 향후 기타 사회서비스 이용의사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교통수단 지원’이라는 응답이 5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목욕서비스’가 44.7%, ‘말뱃, 안부 확인’이 44.1%,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가 41.0% 순으로 나타남<그림 4-33>.

그림 4-33 기타 사회서비스의 향후 이용의사

단위: %, N=537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 농촌노인의 특성별(성별, 연령계층, 학력, 농업인 여부, 건강상태, 자녀동거 여부, 가구소득, 읍·면 지역)로 기타 사회서비스의 향후 이용의사의 차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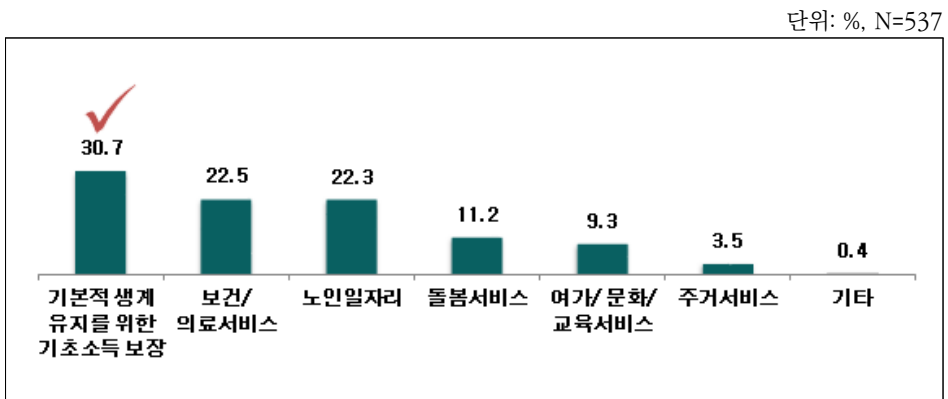
- ‘생활상담’은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 ‘말뱃, 안부 확인’은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 ‘교통수단 지원’은 연령이 높을수록($\chi^2=6.41$, $DF=1$, $P<.05$), 가구소득이 낮을수록($\chi^2=21.11$, $DF=2$, $P<.001$) 향후 이용의사가 더 있었음.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chi^2=7.78$, $DF=2$, $P<.05$) 향후 이용의사가 더 있었음.
- ‘목욕서비스’는 농촌노인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음.

3.6.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지원해야 할 사회서비스

○ 정부에서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지원해야 할 사회서비스는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소득 보장’(30.7%), ‘보건의료서비스’(22.5%), ‘노인일자리’(22.3%), ‘돌봄서비스’(11.2%) 순으로 나타남<그림 4-34>.

그림 4-34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수준 향상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지원해야 할 사회서비스



자료: 본 연구의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4. 실태조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사회보험 부문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미가입자의 비율이 0.7%에 불과함.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165명)의 월평균 보험료는 67,147원이었으며, 응답자의 2/3 정도 (67.9%)가 매달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음.
- 본 연구의 농촌노인 대상 사회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농촌노인의 22.5% 만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음. 가구당 월평균 연금액은 ‘30만 원 미만’이 45.8% 이고, ‘50만 원 이상’이 21.8%에 불과하여 노후소득으로는 대단히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신청을 한 농촌노인은 5.6%에 불과함.
 - 상당수의 응답자들(13.0%)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와 교육이 부족해서 등급신청을 하지 않고 있음.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수혜는 아주 미미한 수준임.
 - 고용보험 혜택을 받은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0.2%
 -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은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0.4%
- 농업인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은 응답자(농업인)는 3.7%에 불과함.
- 농지연금의 혜택을 받은 응답자는 0.6%에 불과함.
 - 농지연금혜택을 받지 않은 이유는 ‘농지연금에 대해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농지를 자녀, 가족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어서’가 20.8%, ‘농지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어서’가 18.0% 순임. 농지연금에 대한 정보 부족과 농지의 자녀상속 의향이 농지연금의 확대에 있어서 걸림돌임을 알 수 있음.

□ 공공부조 부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응답 농촌노인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은 농업인(0.4%)이 비농업인(4.5%)에 비해서 훨씬 낮았음.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현재 농촌노인의 3/4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서비스 부문

○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서비스

- 인지도는 노인일자리(62.9%)가 가장 높았음. 그러나 많은 농촌노인들이 ‘영농도우미 지원’(49.3%)과 ‘직업훈련, 취업상담 및 알선’(44.7%)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음.
- 이용경험은 ‘노인일자리’(27.2%)가 가장 높았음.
-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비율은 ‘노인일자리’(9.1%), ‘생계비 지원’(2.8%) 순이었음.
- 향후 이용의사는 ‘노인일자리’(50.1%), ‘생계비 지원’(27.7%), ‘자활근로’(12.5%) 순이었음.

-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한 농촌노인의 복지욕구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여 농촌의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다양한 노인일자리(예를 들면, 고령친화 농업이나 사회적 농업을 활용한 일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만 농촌은 도시에 비해서 노인일자리 관련 자원이 부족하고 관련 서비스나 사업에 대한 노인들의 접근성도 취약하다는 점(박대식·조미형·한태녕 2013)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

- 인지도는 ‘치매 진단·예방·치료’가 54.9%로 가장 높았음. 그다음으로 ‘만성질환 관리’(49.3%), ‘의치, 임플란트 지원’(39.3%), ‘암검진 및 개안수술’(22.9%), ‘노인돌봄서비스’(20.7%) 순이었음. 상당수의 농촌노인들은 ‘농업인행복버스’(45.1%), ‘병원동행 서비스’(37.8%), ‘가정방문간호’(35.2%)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음.
- 이용경험은 ‘만성질환 관리’(41.5%), ‘치매 진단·예방·치료’(41.0%) 순으로 높았음.
-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비율은 ‘의치, 임플란트 지원’(5.8%), ‘치매 진단·예방·치료’(3.4%) 순이었음.
- 향후 이용의사는 ‘치매 진단·예방·치료’(75.0%), ‘의치, 임플란트 지원’(71.9%), ‘암 검진 및 개안수술’(67.8%), ‘만성질환 관리’(66.7%), ‘노인돌봄서비스’(48.0%), ‘병원동행서비스’(43.2%) 순이었음.

○ 의식주 관련 사회서비스

- 인지도는 ‘경로당·노인회관’이라는 응답이 78.4%로 가장 높았음. 그다음으로 ‘종합사회·노인복지관’(50.1%), ‘무료급식’(49.7%), ‘도시락·반찬 배달서비스’(24.0%),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16.6%) 순이었음. ‘이동세탁

서비스', '장보기 대행', '주택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농촌노인들이 잘 모르고 있었음.

- 이용경험은 '경로당·노인회관'(69.3%), '무료급식'(44.9%), '종합사회·노인복지관'(30.7%) 순으로 높았음.
-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비율은 '주택 관련 서비스'와 '도시락·반찬 배달서비스'와 '무료급식'이라는 응답이 각각 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이 2.0%였음.
- 향후 이용 의사는 '경로당·노인회관'(81.9%), '무료급식'(56.6%), '종합사회·노인복지관'(54.9%), '도시락·반찬 배달서비스'(48.2%), '주택 관련 서비스'(41.5%), '물품 지원'(32.4%),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30.0%) 순이었음.

○ 사회교육 관련 사회서비스

- 인지도는 '스포츠·건강교육'이라는 응답이 37.1%로 가장 높았음. 그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18.4%), '농업기술교육'(15.3%), '문해교육'(13.2%), '정보화교육'(10.6%) 순이었음. 서비스를 모르는 비율은 '직업능력교육'이 57.7%, '인문교양교육'이 55.3%, '농업기술교육'이 43.8% 순으로 나타남.
- 이용경험은 '스포츠·건강교육'(29.6%), '농업기술교육'(13.2%), '문화예술교육'(11.5%) 순이었음.
-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비율은 '스포츠·건강교육'(3.5%), '정보화교육'(3.5%), '문화예술교육'(1.3%) 순이었음.
- 향후 이용의사는 '스포츠·건강교육'(49.5%), '문화예술교육'(24.4%), '정보화교육'(18.4%), '농업기술교육'(13.6%), '문해교육'(11.5%) 순이었음.

○ 기타 사회서비스

- 인지도는 ‘목욕서비스’(25.1%),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16.6%), ‘교통수단 지원’(16.2%), ‘말벗, 안부 확인’(11.7%) 순으로 나타남.
- 이용경험은 ‘교통수단 지원’(3.0%), ‘목욕서비스’(2.6%) 순이었음.
-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비율은 ‘교통수단 지원’과 ‘목욕서비스’라는 응답이 각각 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향후 이용의사는 ‘교통수단 지원’(52.0%), ‘목욕서비스’(44.7%), ‘말벗, 안부 확인’(44.1%),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41.0%) 순이었음.

- 정부에서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지원해야 할 사회서비스는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소득 보장’(30.7%), ‘보건의료서비스’(22.5%), ‘노인일자리’(22.3%), ‘돌봄서비스’(11.2%) 순이었음.

제5장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5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1. 분석모형

○ 개인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건강 상태 등이 노인들의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들임.⁵⁾ 그리고 ‘농업인 여부’는 농촌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라는 측면에서 노인들의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삶의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성별이 노인들의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이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들(김진훈·고보선 2016; 오영희 외 2005; 최현석·하정철 2012)이 있는 반면에 여성이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연구(권혁창·조혜정 2019; 허준수 2004)도 있음.

- 연령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들의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삶의

⁵⁾ 노인들의 사회보장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별로 없기 때문에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관련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들(강희경·유병선 2011; 권혁창·조혜정 2019; 김홍철 2019; 이설림 2016; 최경희·조덕호 2012; 허원구 2017)이 많지만, 연령과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삶의 만족도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들(김정엽 2010; 박기남 2004; 허준수 2004)도 있음.

- 학력(교육수준)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노인들의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들(곽경자·정재필 2009; 김정엽 2010; 김진훈·고보선 2016; 문정화·강민아 2017; 백경숙·권용신 2007, 이설림 2016)이 많지만, 학력과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삶의 만족도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허준수·조승호 2017)도 있음.
- 건강 상태는 노인들의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강희경·유병선 2011; 권혁창·조혜정 2019; 김수봉 2009; 김정훈 2018; 문지현·김다혜 2018; 박순미·손지아·배성우 2009; 배진희 2012; 배정희·윤옥화 2014; 이설림 2016; 최경희·조덕호 2012; 최종훈·서정원 2019; 한경혜·윤순덕 2001; 허원구 2017).

○ 가구 및 지역 관련 특성으로는 자녀동거 여부, 보건의료 만족도, 주택 만족도, 소득, 지역(읍·면 지역) 등이 노인들의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들임.

- ‘자녀동거 여부’는 농촌노인의 노후생활 및 사회보장에 상당한 영향을 줌. 배진희(2012)에 따르면, 독거노인보다는 비독거노인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자녀동거 여부’는 농촌노인들의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삶의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지역 보건의료 만족도는 농촌노인의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삶의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조택희·배민기(2017)에 의하면, 보건·복지 만족도는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거환경이나 주택만족도는 노인들의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배진희 2012; 전명진·문성원 2016; 장항채 2018).
- 가구소득은 노인들의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권혁창·조혜정 2019; 강은미·이영철 2018; 장희경·유병선 2011; 김정훈 2018; 장항채 2018).
- 지역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권혁창·조혜정 2019; 장항채 2018). 그리고 읍 지역과 면 지역은 사회보장 관련 각종 기관이나 시설, 서비스 등에서 많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읍·면 지역’은 농촌노인들의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삶의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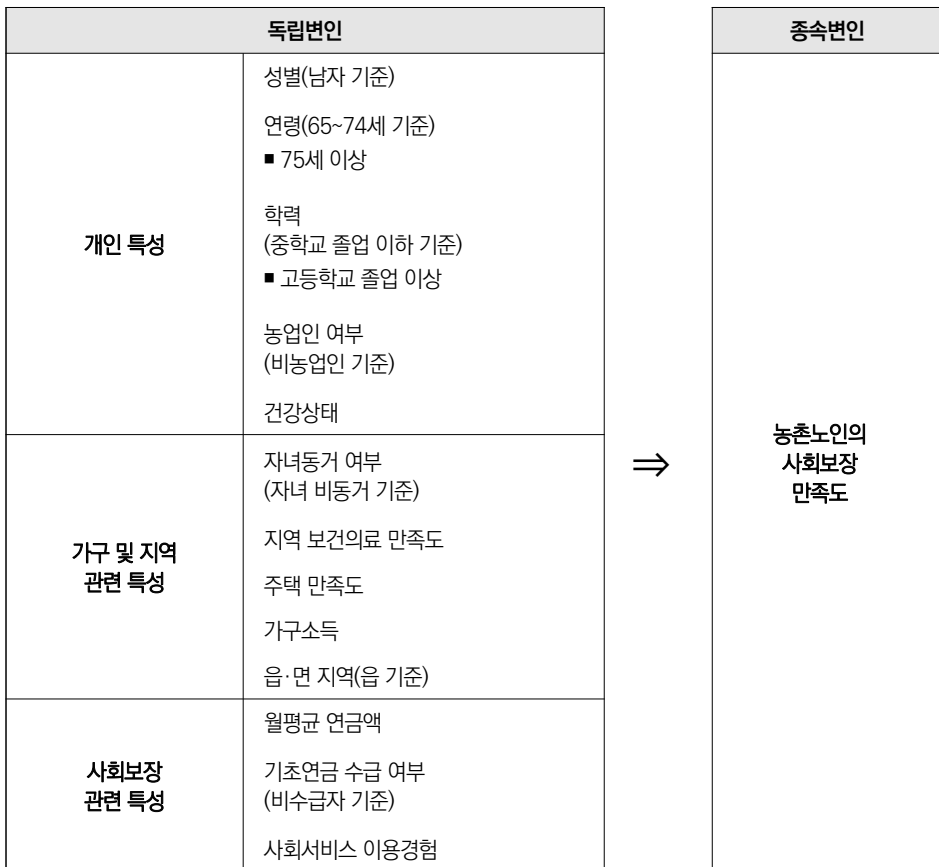
○ 사회보장 관련 특성으로는 연금, 기초연금의 수급,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등이 노인들의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들임.

- 연금은 노인들의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권혁창·조혜정 2019; 오영수·류건식·임병인·김재현 2005; 임병인·강성호 2005).
-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도 노인들의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김정훈 2018; 장항채 2018).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 응답자의 극소수만이 급여를 받고 있어서 본 연구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제외하였음.
-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은 노인들의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김정훈 2018; 안은선·송순만 2017; 오정숙 2019).

○ <그림 5-1>에는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모형이 제시되어 있음.

- 종속변인은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임.
- 독립변인은 개인 특성(성별, 연령, 학력, 농업인 여부, 건강상태), 가구 및 지역 관련 특성(자녀동거 여부, 지역 보건의료 만족도, 주택 만족도, 가구소득, 읍·면 지역), 사회보장 관련 특성(월평균 연금액, 기초연금 수급 여부,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에 관한 것임.

그림 5-1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모형



자료: 저자 직접 작성.

2. 변인의 측정방법

2.1. 독립변인

□ 개인 특성

- 성별(0=남, 1=여), 연령(0=만 65~74세, 1=만 75세 이상), 학력(0=중학교 졸업 이하, 1=고등학교 졸업 이상), 농업인 여부(0=비농업인, 1=농업인), 건강 상태(전반적 건강상태에 관한 5점 리커트 척도(1=매우 나쁘다, 5=매우 좋다)).

□ 가구 및 지역 관련 특성

- 자녀동거 여부: 자녀 비동거=0, 자녀동거=1
- 지역 보건의료 만족도: 거주지역의 농촌노인 관련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관한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매우 만족한다)
- 주택 만족도: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관한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매우 만족한다)
- 가구소득: 2018년의 가구의 총 연간 소득(소득이 있었던 모든 가구원의 소득 합계 금액)을 만 원 단위로 조사함.
- 읍·면 지역: 0=읍, 1=면

□ 사회보장 관련 특성

- 월평균 연금액: 2018년 한 해 동안에 받은 연금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한 총 금액(단위: 만 원)
- 기초연금 수급 여부: 0=비수급자, 1=수급자
-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서비스(5종),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8종), 의식주 관련 사회서비스(10종), 사회교육 관련 사회서비스(7종), 기타 사회서비스(5종)의 총 35종의 사회서비스 이용경험(각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1점으로 계산)을 합산함.

2.2. 종속변인

-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 자신의 전반적인 사회보장(복지) 수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관한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매우 만족한다)

3.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표 5-1>에는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음.

표 5-1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 변인	Beta	t	VIF
개인 특성			
성별(남자 기준)	.09	1.81	1.45
연령(65~74세 기준)			
75세 이상	.10*	2.33	1.22
학력(중학교 졸업 이하 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상	.06	1.16	1.52
농업인 여부(비농업인 기준)	.09*	2.12	1.16
건강상태	-.03	-.70	1.21
가구 및 지역 관련 특성			
자녀동거 여부(자녀 비동거 기준)	-.04	-.96	1.15
지역 보건의로 만족도	.24***	5.65	1.14
주택 만족도	.16***	3.65	1.19
가구소득	.08	1.64	1.58
읍·면 지역(읍 기준)	-.08*	-1.92	1.03
사회보장 관련 특성			
월평균 연금액	.12**	2.83	1.23
기초연금 수급 여부(비 수급자 기준)	.00	.01	1.32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11*	2.52	1.08
F	8.14***		
R ²	0.17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저자 직접 작성.

○ 독립변인 간의 상관계수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⁶⁾를 점검한 결과 다중공선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

- 최대 상관계수 값은 -.458이고, 분산팽창요인(VIF)도 모두 '10' 미만이었음.

○ 다중회귀분석 결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특성의 경우는 연령과 농업인 여부, 가구 및 지역 관련 특성의 경

⁶⁾ 일반적으로 분산팽창요인(VIF)이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으로 인해서 회귀계수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봄.

우는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주택 만족도, 읍·면 지역, 사회보장 관련 특성의 경우는 월평균 연금액과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으로 나타났음.

- Model의 설명력(R^2)은 0.17로 나타났음.

○ 관련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와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독립변인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은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연령은 선행연구들(강희경·유병선 2011; 권혁창·조혜정 2019; 김홍철 2019; 이설림 2016; 최경희·조덕호 2012; 허원구 2017)과 마찬가지로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은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이것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농촌노인의 절대다수(85.1%)의 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에 치우쳐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 '농업인 여부'는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즉, 농업인은 비농업인에 비해서 사회보장 만족도가 더 높았음.
- 건강상태는 선행연구들(강희경·유병선 2011; 권혁창·조혜정 2019; 김수봉 2009; 김정훈 2018; 문지현·김다혜 2018; 박순미·손지아·배성우 2009; 배진희 2012; 배정희·윤옥화 2014; 이설림 2016; 최경희·조덕호 2012; 최종훈·서정원 2019; 한경혜·윤순덕 2001; 허원구 2017)과 마찬가지로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동거 여부'는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지역 보건의료 만족도’는 조택희·배민기(2017)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 만족도’는 선행연구들(배진희 2012; 전명진·문성원 2016; 장항채 2018)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은 선행연구들(권혁창·조혜정 2019; 강은미·이영철 2018; 강희경·유병선 2011; 김정훈 2018; 장항채 2018)과는 달리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읍·면 지역’의 경우는 읍 지역 거주자와 비교해서 면 지역 거주자가 사회보장 만족도가 더 높았음.
- ‘월평균 연금액’은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은 선행연구들(김정훈 2018; 안은선·송순만 2017; 오정숙 2019)과 마찬가지로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에 유의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4. 소결

○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개인 특성의 경우는 ‘75세 이상’이 ‘65~74세’에 비해서 사회보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농업인’이 ‘비농업인’에 비해서 사회보

장 만족도가 높았음. 농업인이 비농업인과 비교해서 농지, 농기계, 자동차 등으로 인해서 각종 사회보장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은 농업인의 소득수준이 비농업인보다 더 높기 때문으로 추측됨.

○ 가구 및 지역 관련 특성의 경우는 ‘지역 보건의료 만족도’와 주택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보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에서 지역 보건의료와 주거여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읍 지역에 비해서 면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 노인이 사회보장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것은 면 지역이 읍 지역에 비해서 각종 사회서비스의 접근성, 비용 등에서 불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보장 관련 특성의 경우는 월평균 연금액이 높을수록 사회보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농촌노인의 월평균 연금액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이 많을수록 사회보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사회서비스의 경우는 농촌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각종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해야 할 것임.

제6장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정책과 국내외 모범사례



6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정책과 국내외 모범사례

1. 우리나라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1. 현황

1.1.1.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기본계획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2023(보건복지부 2019. 2.)

- 사회보장의 장기비전: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 추진 원칙 및 전략: ①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②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③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조정 강화, ④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
- 정책 지표: 4개 정책영역(고용,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별 성과 목표를 제시함.

- 노인 관련 주요 정책과제: ①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②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강화,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노인일자리 확대), ③ 필수의료 보장(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감시·대응체계 구축,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확대), ④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⑤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개발 및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돌봄·요양 서비스 연계 제공, ⑥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2015~2019(관계부처 합동·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2014. 12.)

- 비전: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
- 7대 부문(① 보건·복지, ② 교육, ③ 정주생활기반, ④ 경제활동·일자리, ⑤ 문화·여가, ⑥ 환경·경관, ⑦ 안전)별 목표를 제시함.
- 보건·복지 부문: ① 목표: 농어촌 보건·복지 서비스 질 제고와 복지 체감도 증진, ② 주요 과제: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및 의료 취약지 해소, 계층별 복지서비스 강화,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구축
- 농어촌 노인 관련 정책과제: ① 농어업인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내실화 ② 농어업인 대상 중층적 노후 지원체계 강화, ③ 취약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④ 취약농어가 자립생활 지원

○ 제3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2015~2019(보건복지부 2015. 9.)

- 비전: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농어촌
- 추진 원칙: 농어촌주민이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사업 영역: ①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보건복지 안전망 강화, ② 취약인구(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요보호가구) 대상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③ 취약지역(의료취약지, 복지취약지) 대상 보건복지 접근성 강화
- 노년기 중점 추진과제: ① 농어촌 노인의 활기찬 생활환경 조성, ② 노년기 건강관리 및 돌봄 서비스 강화

○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2.)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 목표: ① 삶의 질 향상, ② 성 평등 구현, ③ 인구변화 적극 대비
- 추진영역: ①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②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③ 인구변화 적극 대비(인구구조 변화 대응 핵심 분야 대책 마련, 지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인구 대응 사업 활성화).
- 노인복지 관련 정책과제: ① 은퇴와 나이 들이 걱정되지 않는 고령사회 준비, ②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완, ③ 신중년, 새로운 인생출발 지원, ④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환경 조성

1.1.2.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정책

□ 사회보험 부문

○ 농촌노인 관련 사회보험 부문의 주요 정책 또는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지연금 등이 있음<표 6-1>.

-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에 5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초로 도입되었고, 농어촌지역에는 1988년에 도입됨.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998년 12월부터 2003년까지는 농어촌 거주자에 한하여 15~22%까지 경감하다가, 2004년부터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추가로(8~28%) 지원하고 있음(박대식 외 2011). 2006년부터 농어업인 지원율(농식품부)은 28%, 농어촌지역 경감률(보건복지부)은 22%.
- 국민연금은 1988년에 ‘산업 및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처음 도입됨. 1995년 7월부터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농어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2004년 7월부터 기준소득금액 이하는 본인 보험료의 1/2 금액을 정률로, 기준소득금액 초과하는 해당 기준소득금액의 1/2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음(박대식 외 2011).
-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1964년에 근로자 500인 이상 규모의 광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도입됨. 2005년 1월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 규모의 농림어업 법인으로 확대되었음(정명채 2015).
- 고용보험은 1995년에 도입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등이 있음(고용노동부 2019).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에 도입되었으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함(박대식 외 2009).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1996년에 ‘농업인재해공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으며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농협에 운영하고 있음. 2012년에 ‘공제’에서 ‘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공공부조 부문

- 농촌노인 관련 공공부조 부문의 주요 정책 또는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이 있음<표 6-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한 것으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기초연금은 2014년에 도입되었으며,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하위 20% 이하에게는 월 30만 원까지 지급함.

□ 사회서비스 부문

- 농촌노인 관련 사회서비스 부문의 주요 정책 또는 세부 프로그램은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 ‘의식주 관련 사회서비스’, ‘사회교육 관련 사회서비스’, 그리고 ‘기타’로 구분할 수 있음<표 6-1>.
 -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서비스’로는 ① 생계비 지원, ② 노인일자리, ③ 자활근로, ④ 직업훈련, 취업 상담 및 알선, ⑤ 영농도우미 지원 등이 있음.
 -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로는 ① 만성질환 관리, ② 의치(틀니), 임플란트 지원, ③ 노인돌봄서비스(기본·종합), ④ 병원 동행 서비스, ⑤ 치매 진단·예방·치료, ⑥ 안 검진 및 개안수술, ⑦ 가정방문 간호, ⑧ 농업인 행복버스 등이 있음.

- ‘의식주 관련 사회서비스’로는 ① 주택 관련 서비스, ② 경로당·노인회관, ③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④ 노인공동생활홈, ⑤ 물품 지원, ⑥ 도시락·반찬 배달서비스, ⑦ 무료급식, ⑧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⑨ 장보기 대행, ⑩ 이동세탁서비스 등이 있음(박대식·안석·오정훈 2016).
- 사회교육 관련 사회서비스로는 ① 농업기술교육, ② 문해교육, ③ 인문교양 교육, ④ 정보화교육, ⑤ 직업능력교육, ⑥ 문화예술교육, ⑦ 스포츠·건강 교육 등이 있음.
- 기타 사회서비스로는 ① 생활상담, ② 말벗, 안부 확인, ③ 교통수단 지원, ④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 ⑤ 목욕서비스 등이 있음.

표 6-1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정책

부문	주요 정책 및 세부 프로그램		비고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77 도입 '88 농어촌 지역 확대
	국민연금		'88 도입 '95 농어촌 지역 확대
	산재보험		'64 도입 '05 근로자 1인 이상 농림어업 법인으로 확대
	고용보험		'95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08 도입
	농업인안전재해보험		'96 도입 '12에 '공제'에서 '보험'으로 명칭 변경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00 도입
	기초연금		'14 도입
사회서비스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생계비 지원	생계급여는 제외
		노인일자리	-
		자활근로	-
		직업훈련, 취업 상담 및 알선	-
		영농도우미 지원	영농도우미, 행복나눔미
	보건의료 관련	만성질환 관리	-
		의치(틀니), 임플란트 지원	-

(계속)

부문	주요 정책 및 세부 프로그램		비고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종합
		병원 동행 서비스	-
		치매 진단·예방·치료	-
		안 검진 및 개안수술	-
		가정방문 간호	-
		농업인 행복버스	의료지원, 장수사진 촬영 등
	의식주 관련	주택 관련 서비스	신축, 수리, 도배 등
		경로당, 노인회관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
		노인공동생활홈	-
		물품 지원	식료품, 의류, 가구 등
		도시락·반찬 배달 서비스	-
		무료급식	경로식당, 사회복지관 등에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
		장보기 대행	-
		이동세탁서비스	-
	사회교육 관련	농업기술교육	-
		문해교육	한글교실, 한문교실 등
		인문교양교육	인문학, 요리, 외국어교육 등
		정보화교육	인터넷, 스마트폰, 컴퓨터 등 관련
		직업능력교육	자격증 강좌, 취·창업 준비과정 등
		문화예술교육	음악·미술 강좌 등
		스포츠·건강교육	체조교실, 건강교육 등
	기타	생활상담	고민, 갈등, 정신건강, 알코올, 학대, 가정폭력 등 관련
		말벗, 안부 확인	-
		교통수단 지원	셔틀버스, 택시 등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
		목욕서비스	-

자료: 박대식(2006), 박대식(2013), 박대식·최경환(2006), 보건복지부(2019)를 참고하여 작성함.

1.2. 문제점

1.2.1. 농촌노인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 문제점

○ 사회보장 관련 주요 기본계획에서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정책과제가 별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농촌노인에 특화된 것은 농지연금 정도이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개발 및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도 농촌에 대한 고려가 크게 부족함.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 농어촌 노인 관련 정책과제들(① 농어업인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내실화② 농어업인 대상 중층적 노후 지원체계 강화, ③ 취약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④ 취약농어가 자립생활 지원)이 있지만 농업인 중심이어서 비농업인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가 있음.

- 제3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2015~2019): 농어촌 노인에 특화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함(① 농어촌 노인의 활기찬 생활환경 조성, ② 노년기 건강관리 및 돌봄 서비스 강화).

-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농촌노인에 특화된 것은 농지연금의 대폭 확산, 고령친화 식품산업 육성 정도임.

○ 사회보장제도의 외형적 틀은 잘 갖추고 있으나 농촌노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함.

- 건강보험은 대부분의 농촌노인들이 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연금액은 노후 소득보장으로 크게 부족함.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수혜자가 미미한 수준임.
- 국민기초생활제도 수급자도 극소수임.
- 사회서비스의 경우,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우가 상당 수준임.

1.2.2. 사회보장 부문별 문제점

□ 사회보험 부문

- 건강보험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농촌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보장성이 부족하여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응답 농촌노인의 약 1/3 정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월평균 연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가 45.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 소득보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신청을 한 농촌노인은 5.6%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응답자들(13.0%)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와 교육이 부족해서 등급 신청을 하지 않고 있음.
- 농촌노인들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수혜 수준은 아주 미미한 수준임.
 - 고용보험 혜택을 받은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0.2%
 -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은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0.4%
- 농업인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은 응답자(농업인)는 3.7%에 불과함.
 - 농업인 재해율은 전체 산업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률은 55%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음.

- 농기계종합보험의 가입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농업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업무상 손상률도 가장 높은 경운기의 가입률도 1% 미만임.

○ 농지연금의 혜택을 받은 응답자는 0.6%에 불과함.

- 농지연금에 대한 정보 부족과 농지의 자녀상속 의향이 농지연금의 확대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2018)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농지연금의 가입건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2017년 기준 누적가입률은 1.2%에 불과하며, 중도해지율도 약 40%나 됨. 중도해지 사유는 ‘농지매매’(28.0%), ‘자녀반대’(18.5%), ‘수급자 사망’(17.8%), ‘기간종료’(10.7%), ‘상속’(9.3%), ‘채무 부담 과다’(5.9%) 등으로 나타남. 농지연금을 ‘자녀반대’나 ‘상속’ 때문에 해지하는 비율이 약 1/4(27.8%)이나 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됨.
- 농지연금의 경우, ‘종신형’(종신정액형, 일시인출형, 전후후박형)의 가입비중이 약 40% 수준에 머물고 있음. 2017년까지 농지연금의 누계실적을 보면, 종신형의 가입비중은 전체 8,631건 중에서 39.2%(3,382건)에 불과하며, 기간형(기간정액형, 경영이양형)이 60.8%(5,248건)를 차지함. 종신형의 가입비중이 기간형에 비해서 낮은 이유는 종신형의 월평균 지급금액이 대체로 기간형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됨.

□ 공공부조 부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응답 농촌노인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농업인(0.4%)이 비농업인(4.5%)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농촌노인의 3/4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나 가구당 기초연금 수령액이 '40만 원 미만'인 경우가 63.6%나 됨.

□ 사회서비스 부문

○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서비스

- 많은 농촌노인들이 '영농도우미 지원'(49.3%)과 '직업훈련, 취업상담 및 알선'(44.7%)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음.
-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비율은 '노인일자리'(9.1%), '생계비 지원'(2.8%) 순이었음.

○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

- 상당수의 농촌노인들은 '농업인행복버스'(45.1%), '병원동행서비스'(37.8%), '가정방문간호'(35.2%)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음.
-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비율은 '의치, 임플란트 지원'(5.8%), '치매 진단·예방·치료'(3.4%) 순이었음.

○ 의식주 관련 사회서비스

- '이동세탁 서비스', '장보기 대행', '주택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농촌노인들이 잘 모르고 있었음.
- 이용경험은 '경로당·노인회관'(69.3%), '무료급식'(44.9%), '종합사회·노인복지관'(30.7%) 순으로 높았음.
-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비율은 '주택 관련 서비스'와 '도시락·반찬 배달서비스'와 '무료급식'이라는 응답이 각각 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이 2.0%였음.

○ 사회교육 관련 사회서비스

- 서비스를 모르는 비율은 ‘직업능력교육’이 57.7%, ‘인문교양교육’이 55.3%, ‘농업기술교육’이 43.8% 순으로 나타남.
-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비율은 ‘스포츠·건강교육’(29.6%), ‘농업기술교육’(13.2%), ‘문화예술교육’(11.5%) 순이었음.

○ 기타 사회서비스

-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비율은 ‘교통수단 지원’과 ‘목욕서비스’라는 응답이 각각 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2.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⁷⁾

2.1. 사회보험 부문

□ 일본 노재보험의 농업자 특별가입제도⁸⁾

○ 노재보험은 본래 노동자의 업무 또는 통근에 따른 부상, 질병, 장애, 사망에 대해 보험급부를 하는 제도이지만, 노동자 이외에도 그 업무의 실태, 재해의 발생상황 등으로 보아, 특히 노동자에 준하여 보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임의가입을 인정함. 이것이 특별가입제 도입.

⁷⁾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 추진 실적, 수상 내역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본받아 배울 점이 많은 사례를 모범사례로 선정하였음.

⁸⁾ 전문가 위탁 원고인 최경환(2019)을 요약하여 정리함.

- 일본 노재보험의 농업인 특별가입제도는 특정농작업종사자(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배·채취, 가축·잠견의 사육 관련 기계작업, 농약살포 등과 관련), 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자(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농기계작업 관련), 중소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함.
- 일본의 노재(산재)보험은 5대 사회보험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는데, 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재해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는 등 운영 성과가 양호하기 때문임.⁹⁾
-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부르나 일본에서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노재보험)으로 칭하고 있음.

□ 영국의 80세 이상 고령자 연금¹⁰⁾

- 영국의 80세 이상 고령자 연금(Over 80 Pension)은 평생 동안 소득이 없었거나 최저 한계소득 미만의 소득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연금보험료 기여가 낮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임(박대식·최경환 2006).
- 연금의 수급 조건은 무 각출 연금 신청 시에 영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80세 이상이어야 함.
- 적용 대상: ① 기초연금 비수급자, ②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에는 완전 기초연금의 60% 미만의 연금을 받는 자

⁹⁾ 배준호 외(2018)를 참고하여 정리함.

¹⁰⁾ 노대명·김근혜·정희선(2018)과 박대식·최경환(2006)을 참고하여 정리함.

□ 일본의 농업자연금¹¹⁾

(1) 농업자연금의 위상

- 농업자연금은 농업종사자 중 자영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제도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의 추가연금의 한 가지임.
- 농업경영을 법인화하고, 그 법인의 직원, 사원 등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는 샐러리맨의 추가연금인 후생연금에 강제가입(농업자연금의 대상 외)

(2) 농업자연금제도의 개요(현행)〈표 6-2〉

- 농업자연금기금은 농업자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자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적립하고, 적립금을 안전·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연금 등을 급부하는 사업을 실시함.
- 목적: 농업자의 노후생활의 안전, 농업자의 확보
- 피보험자: 농업에 종사하는(연간 60일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1호 피보험자
- 보험료: 월액 2만~6만 7,000엔의 범위에서 피보험자가 스스로 납부액을 결정(가입 후에 변경 가능)
- 자금 운용: 피보험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적립하여 적절한 분산투자를 하는 등 급부재원으로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¹¹⁾ 전문가 위탁 원고인 최경환(2019)의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함.

○ 급부(적립방식·확정각출형)

- 농업자노령연금
 - 65세부터 종신 급부(60세까지 소급 수급도 가능)
 - 연금액은 보험료의 적립 및 그 운용수익에 근거하여 결정
- 사망일시금
 - 80세 미만에 사망한 피보험자·수급권자의 유족에게 급부
 - 80세까지 수취하는 농업자노령연금의 현재 가치 상당을 지급

○ 특례부가연금(정책지원분)

(3) 정책지원

- 농업 종사자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보험료 각출을 국가가 보조하여, 해당 보조를 원자(原資)로 특례부가연금을 지급
- 대상자: ① 인정농업자 또는 인정신규취업자로 청색신고자(이들의 경영에 참여하는 배우자 및 후계자도 대상), ② 39세까지 가입, ③ 농업소득이 900만 엔 이하

○ 지원내용

- 특례보험료 적용(보험료 각출에 대한 보조)
 - 월액 보험료의 하한액(2만 엔)에 대해 5~2할의 특례보험료(1만~1만 6천 엔)를 적용하고 그 차액(1만~4천 엔)을 국고보조
 - 지원기간은 최장 20년(그중 35세 이상의 기간은 10년분이 상한)
- 특례부가금 지급
 - 보험료 보조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65세 이후 종신 급부(60세까지 소급 수급도 가능)

- ①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의 합계가 20년 이상
- ② 경영계승 등에 의해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닐 것
- 연금액은 보험료 보조의 적립 및 그 운용수익에 기초하여 결정

(4) 농업자연금제도 개혁(2001년 개정)

- 은퇴세대의 연금급부를 현역세대(가입자)가 부담하는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던 구제도는 농촌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입자 1인이 수급자 3인을 부담하는 구조가 되어 재정적으로 한계
- 이 때문에 노후에 수취할 연금의 재원을 현역 시에 자신이 각출한 보험료로 마련하는 ‘적립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필요한 수정을 실시. 이에 따라 연금재정은 가입자·수급자 수에 좌우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
- 2001년 개정: ① 가입자·수급자 수에 좌우되지 않는 적립방식으로 변경, ② 신제도 이행 후에도 구제도하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부는 계속(전액 국고부담. 단, 연금액은 평균 9.8% 감액), ③ 신제도로의 이행을 희망하지 않는 자 등에게 특례탈퇴일시금을 지급(납부 보험료 총액의 8할 수준)

표 6-2 농업자연금 신·구제도의 비교

	구 제도(1971~2001)	현행 제도(2002~)
구조	부과방식(물가슬라이드), 확정급부형	적립방식(물가슬라이드 없음), 확정각출형
목적	농업경영 근대화 및 농지보유 합리화 (저연령화 및 규모 확대)	농업자 확보
가입	강제가입(농지가 50a 이상인 농업자) ※ 30~50a 미만의 경영자와 그 후계자는 임의 가입	임의가입(농업종사자)
보험료	정액(월액 20,440엔)	가입자가 결정(하한 2만 엔 및 상한 6만 7,000 엔만 법령에 규정)

(계속)

	구 제도(1971~2001)	현행 제도(2002~)
급부	· 65세까지 경영이양을 한 자에게는 국고 지원에 의해 증액된 연금(경영이양연금)을 지급 · 경영이양하지 않고 65세가 된 자에게는 보험료를 급부재원으로 하는 연금(농업자노령연금)을 지급	· 보험료 및 운용수익을 원자(原資)로 하는 농업자노령연금을 원칙적으로 65세부터 지급 · 정책지원을 받은 자가 농업을 폐지한 때는 원칙적으로 65세 이후 국고보조와 그 운용수익을 원자(原資)로 하는 특례부가연금을 지급
정책지원 (국고지원)	경영이양연금의 급부비를 지원	보험료 각출을 지원

자료: 農林水産省, 2019.2. 農業者年金制度について.

(5) 농업자연금의 정책 지원

○ 특례보험료와 보험료 보조

- 요건: 다음의 전부에 해당하는 자: ① 60세까지 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됨, ② 농업소득(필요 경비 공제 후)이 900만 엔 이하, ③ 아래의 구분 1~5의 어느 것에 해당할 것<표 6-3>.

표 6-3 정책지원 대상자 구분

구분	정책지원 대상자	보험료 월액 2만 엔에 대한 국고보조	
		35세 미만	35세 이상
1	인정농업자로 청색신고자	10,000엔 (5할)	6,000엔 (3할)
2	인정신규취농자로 청색신고자		
3	위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후계자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고, 경영에 참여가 필요)		
4	인정농업자 또는 청색신고자의 어느 것에 3년 이내에 위의 1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약속한 자	6,000엔	4,000엔 (2할)
5	35세(25세 미만은 10년 이내)까지 1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약속한 농업후계자		-

자료: 農林水産省, 2019.2. 農業者年金制度について.

○ 보험료 보조분에서 지급되는 연금

- 지급요건: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① 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 이상일 것, ② 65세에 도달할 것(60세 이후라면 조기 수급도 가능), ③ 경영계승에 의해 농업에서 은퇴(65세 이후에도 가능)

- 경영계승: 특례부가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농업에서 은퇴하는 경우, 농지 등의 경영자원을 후계자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승계시키는 것이 필요함 <표 6-4>.

표 6-4 경영계승의 대상 자산과 처분방법

대상 자산		경영계승 방법
농지 및 채초방목지		적격 승계자에 대하여 권리 이전 또는 설정 등 (매각, 증여, 대부 등)을 실시
농업용 시설	잔존내용년수 10년 이상인 축사·온실, 잔존내용년수 10년 미만인 축사·온실, 기타 생산시설	시설의 처분(처분 대상은 불문), 공용 폐지, 용도변경 등(주)
	위 이외(저장시설, 가공시설, 집출하시설, 격납고 등)	처분 불필요
농지나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배우자나 후계자		가족경영협정에 따라 농업경영에서 제외됨

주: 시설 내에 재고자산이 없는 것을 농업위원회의 확인이 필요.

자료: 農林水産省. 2019.2. 農業者年金制度について.

- 적격 승계자(농지, 채초방목지, 잔존내용년수 10년 이상인 축사·온실만)
 - 후계자: 60세 미만의 직계비속의 1인 및 그 배우자
 - 제2자: 개인: 60세 미만의 농업경영자 나 신규 취농자
 - 법인: 농업법인, 농지중간관리기구, 농협 등(주)

□ 독일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¹²⁾

○ 자녀양육기간 및 가족돌봄기간에 대한 크레딧

- 육아 크레딧의 수급 조건은 자녀양육이며, 크레딧 인정 기간은 자녀당 3년임.
- 돌봄 크레딧의 대상은 수발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며, 인정 기간은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전 기간임.
- 크레딧 인정소득은 노인이나 장애인의 수발 정도에 따라 달라짐.

¹²⁾ 국회예산정책처(2017: 10-13)의 내용을 요약함.

○ 직업훈련기간에 대한 크레딧

- 전문학교 등록 기간 혹은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인정 기간은 최대 8년이나 기여기간에 대한 인정기간은 3년임.
- 크레딧 인정소득은 개인 소득점수의 평균이 사용됨.

○ 군복무기간(혹은 사회봉사기간)에 대한 크레딧

- 자발적 군복무 기간이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최대 1년 동안의 크레딧을 제공함.
- 수급조건은 군복무를 하거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회봉사활동을 한 경우임.
- 인정소득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60%임.

○ 질병급여, 실업급여 등 사회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크레딧

- 수급조건: 질병급여(혹은 상해급여), 실업급여 등 사회급여 수급자
- 인정기간은 기본적으로 각 급여의 수급기간이나, 질병급여는 최대 78주까지, 실업급여는 최대 24개월까지 수급할 수 있음.
- 크레딧 인정소득은 실직 전 개인소득의 80%임.

○ 비기여기간에 대한 크레딧

- 비기여기간에 대해서는 질병급여(혹은 상해급여)와 실업급여의 장기 수급 후에 지급되는 크레딧과 모성휴가 기간에 대한 크레딧, 직업훈련 기간에 대한 크레딧 제도가 운영됨.
- 질병급여(혹은 상해급여)와 실업급여의 최대 수급기간(질병급여 78주, 실업급여 24개월) 이후에 연금의 의무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크레딧을 지급함.

○ 고려기간에 대한 크레딧

- 대상: ① 2명 이상의 10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주부, ② 1명 이상의 10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며 시간제로 일하여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을 버는 여성
- 인정기간: 자녀가 4세부터 10세까지 최대 7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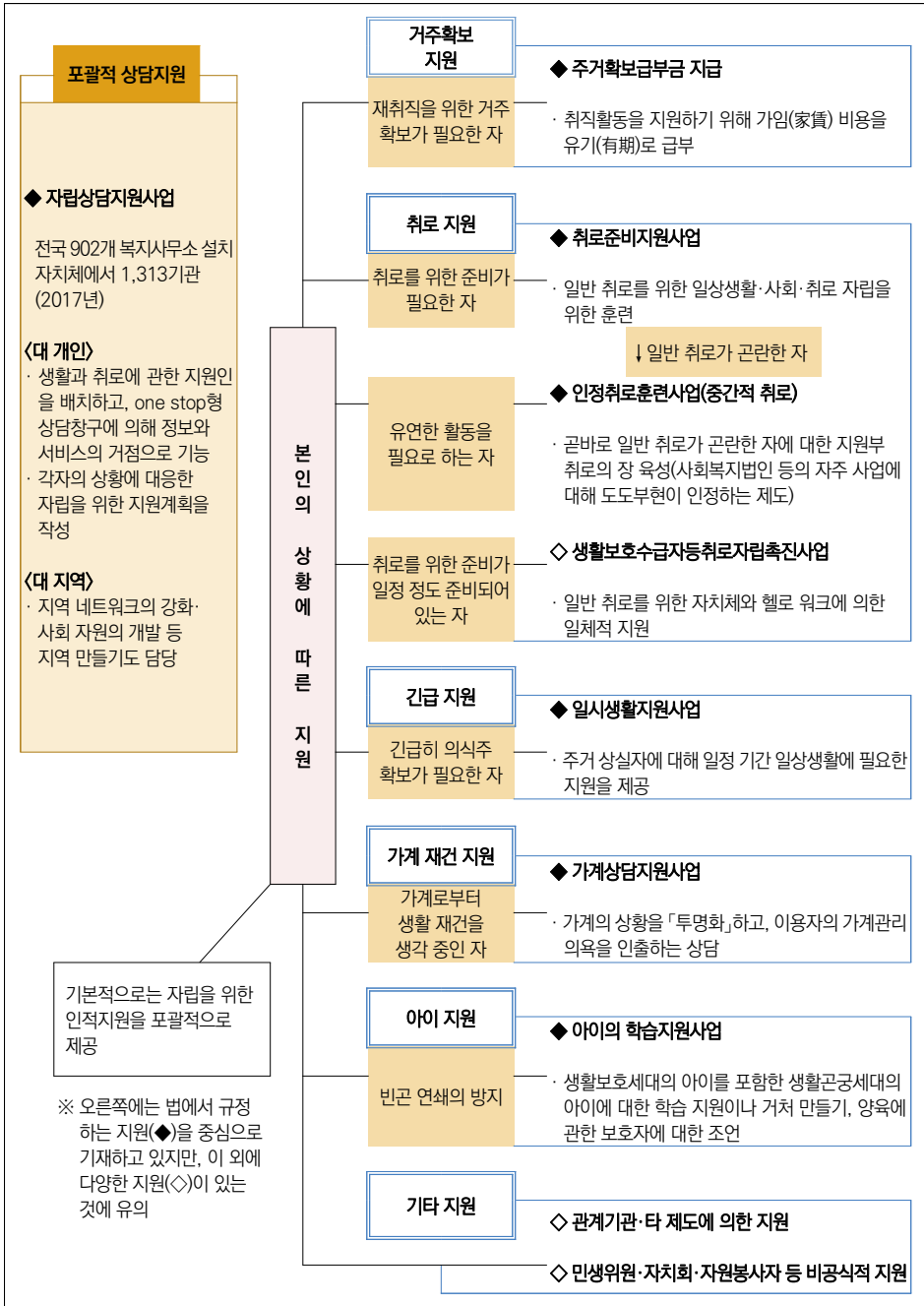
2.2. 공공부조 부문

□ 일본의 생활곤궁자지원제도¹³⁾

○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2013년 법률 제105호)은 생활보호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의 자립지원책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지방자치체에 있어서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는 생활곤궁자에 대해 아래의 각종 지원을 실시하는 외에, 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활곤궁자의 조기 발견이나 포괄적인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임: ① 생활곤궁자로부터의 상담을 받고, 니즈에 대응한 계획적·계속적인 지원을 코디네이트하는 ‘자립상담지원사업’(필수사업), ② 이직에 의해 주거를 상실한 자 등에 대해 家賃 상당액의 급부를 지급하는 ‘주거확보급부금’(필수사업), ③ 생활리듬이 붕괴되어 있는 등 취로를 향한 준비가 필요한 자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취로준비지원사업’(임의사업), ④ 긴급적·일시적으로 의식주를 제공하는 ‘일시생활지원사업’(임의사업), ⑤ 가계의 재건을 목적으로 한 지원을 하는 ‘가계상담지원사업’(임의사업), ⑥ 생활곤궁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학습지원사업’(임의사업)<그림 6-1>.

¹³⁾ 전문가 위탁 원고인 최경환(2019)의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함.

그림 6-1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의 개요



자료: 厚生労働省(2018).

- 생활보호에 이르기 전 단계의 자립지원책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생활곤궁자에 대해 자립상담 지원 사업의 실시, 주거확보급여금의 지급, 기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 시행 후 2년간의 지원 상황은 신규 상담접수 건수는 약 45만 명, 플랜 작성에 의해 계속적으로 지원한 사람은 약 12만 명이며, 각각의 필요에 따른 포괄적인 지원의 제공에 의해 약 6만 명이 취로나 增收로 연결되었음.

□ 호주의 기초연금제도¹⁴⁾

○ 호주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공부조형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1908년에 「장애 및 노령연금법(The Invalid and Old Age pensions Act)」을 제정하여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

○ 2009년의 연금개혁을 통하여 부부가구의 전액수급 기준으로 남성 근로자 주간 평균소득의 41.76%를 보장하도록 하였음.

- 단독가구는 부부가구가 수급할 수 있는 최고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음.

○ 2018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의 최고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주당 834.40 호주달러(약 67만 원)이고, 부부가구의 경우 1인당 2주에 629호주달러(약 50만 원)임.

¹⁴⁾ 국회예산정책처(2018: 20-24)의 내용을 요약함.

○ 기초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3월과 9월) ‘소비자물가지수’와 ‘연금수급자 및 수혜자 생활비 지수’ 중에서 더 큰 것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을 조정함.

○ 수급 대상

- 주거요건: 기초연금을 신청할 당시에 호주에 거주해야 하며, 최소 10년 이상 연속 거주해야 함.
- 수급이 가능한 최소 연령: 만 65.5세
- 65세 이상 노인의 65.8%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음.
- 소득 한도: 기초연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단독가구는 172호주달러(2주 기준), 부부가구는 304호주달러(2주 기준)를 넘지 않아야 함. 감액수급의 상한액은 단독가구는 2,004.20호주달러(2주 기준), 부부가구는 3,066.80호주달러임.
- 자산조사의 기준은 가구유형과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짐.

2.3. 사회서비스 부문

□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¹⁵⁾

(1) 자립지원·중복화 방지를 위한 보험자 기능의 강화 대응 추진

○ 고령화가 진전하는 가운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추진함과 아울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인 시정촌의 보험자 기능을 강화하고 고령자의 자립 지원·중복화 방지를 위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함.

¹⁵⁾ 전문가 위탁 원고인 최경환(2019)의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함.

- 이를 위해 전 시정촌이 보험자 기능을 발휘하여 자립 지원·중복화 방지에 대처할 수 있도록, ① 데이터에 근거한 과제 분석과 대응, ② 적절한 지표에 의한 실적 평가, ③ 대응실적에 따른 시정촌·도도부현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라는 구조를 법률에 의해 제도화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시정촌의 인원 체제와 노하우 축적 등의 상황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후생노동성과 도도부현이 적극적으로 정중하게 지원해 가는 것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는 도도부현이 시정촌을 지원하는 것을 법률상에 명기하고, 도도부현에 의한 시정촌 직원에 대한 연수의 실시, 의료직 등의 파견에 관한 관련 단체와의 조정 등을 실시함.
 - 후생노동성은 시정촌이 다각적으로 지역과제를 분석하는 것을 지원함과 아울러, 도도부현 직원에 대해 연수 등을 하고, 시정촌의 대응을 지원함.
- 일본에서는 고령자 4명에 1명이 인지증(치매) 또는 그 예비군이라고 하고 있으며, 인지증은 지금 누구나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친근한 질병임. 세계 각국에서도 인지증인 사람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대응은 세계 공통의 과제임.
- 후생노동성에서는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15년 1월에 「인지증시책추진종합전략~인지증 고령자등에 쉬운 지역 만들기를 위하여~(신오렌지 플랜)」(이하 「종합전략」이라고 함)을 관계 성청과 공동으로 책정했음. 그 책정에서는 인지증인 사람과 그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였음.
- 종합전략은 소위 ‘단괴(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목표로 하여 인지증인 사람의 의사가 존중되어, 가능한 한 살아온 지역의 좋은 환경에서 본인다운 삶을 계속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할 것으로, 7개의 기둥(① 인지

증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기 위한 보급·계발의 추진, ② 인지증의 용태에 따른 적시·적절한 의료·개호 등의 제공, ③ 청년성 인지증 시책의 강화, ④ 인지증인 사람의 개호자에 대한 지원, ⑤ 인지증인 사람을 포함한 고령자에 편리한 지역 만들기 추진, ⑥ 인지증 예방법, 진단법, 치료법, 재활모델(rehabilitation model), 개호모델 등의 연구 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 추진, ⑦ 인지증인 사람과 그 가족의 관점 중시)에 따라 인지증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으로, 2017년도 말 등을 당면 목표연도로 하고, 시책별 수치목표를 정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인지증초기집중지원팀을 2018년도까지 전 시정촌에 설립하는 등 의료·개호 등을 연계하고, 가능한 한 조기 단계부터 인지증인 사람을 지원함과 아울러, 근본 치료약에 대해 2020년도까지의 치료개시를 목표로 하는 등 예방과 치료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인지증 서포터를 2017년도까지 800만 명 양성하는 등 인지증인 사람과 고령자에게 편리한 지역 만들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강화를 위한 개호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종합전략의 기본적인 사고(인지증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등)를 법률상에도 설정하여 대처함.

(2) 의료·개호의 연계 추진

○ 금후 요개호인정률과 인지증의 발생률 등이 높은 75세 이상 고령자의 증가에 수반하여 의료 니즈와 개호 니즈를 함께 지닌 고령자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택의료·개호를 일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과 그 연계가 점점 필요함.

○ 이를 위해 재택의료·개호연계추진사업을 지역지원사업의 포괄적지원사업으

로 설정하고, 2018년 4월에는 모든 시정촌에서 아래의 8가지 사업 항목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① 지역의 의료·개호 자원의 파악, ② 재택의료·개호연계 과제의 추출과 대응책 검토, ③ 단절 없는 재택의료와 재택개호의 제공체제 구축 추진, ④ 의료·개호관계자의 정보제공 지원, ⑤ 재택의료·개호연계에 관한 상담, ⑥ 의료·개호 관계자 연수, ⑦ 지역주민에 대한 보급 계발, ⑧ 재택의료·개호연계에 관한 관계 시정촌의 연계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의료처치 등이 필요하나, 입원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자택이나 특별요양노인홈 등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고령자에게도 대응 가능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함. 이를 위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강화를 위한 개호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서 ‘일상적인 의학관리’나 ‘간호·터미널 케어’ 등의 의료기능과 ‘생활시설’로서의 기능을 겸해 준비한 새로운 개호보험시설로 ‘개호의료원¹⁶⁾’을 창설했음.

(3) 지역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한 대처의 추진

- 일본은 소자고령화(少子高齢化)¹⁷⁾에 수반한 인구 감소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기존의 분절된 제도로는 효과적으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와 기존 제도의 협소성으로 제도에 의한 해결이 곤란한 과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힘을 강화함과 아울러 공적인 지원체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갈라져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협동하면서 포괄적

¹⁶⁾ 요개호자에 대해 ‘장기요양을 위한 의료’와 ‘일상생활상의 돌봄(개호)’을 일체적으로 제공함. 개호보험법상의 개호보험시설이지만, 의료법상은 의료제공시설로서의 법적 지위를 지님. 개설 주체는 지방공동단체,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등임.

¹⁷⁾ 소자고령화는 태어나는 아이는 적고 노인들은 늘어나는 현상을 지칭함.

으로 지원을 해가는 것이 필요하게 되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강화를 위한 개호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서는 시정촌이 포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지역복지계획을 복지 각 분야의 공통사항을 기재한 상위 계획으로서 설정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의 일부 개정을 포함하고 있음.

- 동 법에서는 장애인¹⁸⁾이 개호보험의 피보험자로 된 때에 사용해온 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소를 계속 이용하기 쉽게 되고, 또 복지에 관련된 인재에 제한이 있는 가운데 지역 실정에 맞추어 인재를 잘 활용하면서 적절히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 일본의 고령자보람활동촉진사업¹⁹⁾

-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은 2013년부터 농복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면서 농업은 건강한 고령자의 활약의 장으로 는 물론, 인지증 등 개호를 요하는 고령자 삶의 보람의 장으로서 니즈도 높아지고 있음.
 - ‘고령사회대책대강’(2018년 2월 각의결정)에서는 활력 있는 농산어촌의 재생을 위해 고령자의 활약과 생활의 장으로서의 정비가 설정되어 대책이 추진되고 있음.
 - 농복연계²⁰⁾의 대응은 지역에서의 장애인이나 생활곤궁자의 취로훈련과 고용, 고령자의 삶의 보람 등의 장으로서뿐 아니라, 노동력 부족과 과소화라

18)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이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임.

19) 전문가 위탁 원고인 최경환(2019)의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함.

20)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업 분야와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일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과 복지를 연계하는 것을 말함.

는 문제를 안고 있는 농업·농촌에 있어서도 일손의 확보와 지역 농업의 유지, 나아가 지역 활성화에도 연계됨.

- 고령자보람활동촉진사업도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고령자보람활동촉진사업의 내용

- 고령자의 삶의 보람과 건강 만들기와도 연계하면서 동시에 개호예방이나 생활지원서비스 기반이 되는 고령자에 의한 유상 볼런티어에 관한 모델적인 활동의 시작을 지원

○ 보조율: 1개소당 100만 엔

○ 실시 주체: 시정촌

○ 사례: ‘농(農)’을 활용한 고령자의 사회 참가(岩手縣 花卷市)

- 岩手縣 花卷市の 高松第3行政區에서는 재택 고령자를 지원하는 생활지원 서비스 등의 사업주체가 적고, 금후 자조·호조에 의한 지역 스스로의 대응이 중요하게 된다고 인식.
- 한편으로 고령화에 의한 이농이나 경작포기지의 증가가 걱정인 상황에서 ‘복지와 농업의 연계’에 의한 지역 만들기 모델을 계획함.
- 고령자보람활동촉진사업을 花卷市로부터 수탁함.
 - 빈 농지를 활용하여 고령자 등의 볼런티어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고령자 생기발달농원’을 설립하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와 함께 운영함.
 - 농원에서 수확한 농산물에 대해 인근 개호사업소에 제공하거나 농산물을 가공한 식품을 고령자의 배식 서비스 등에 이용하는 등의 활동을 실시함.

□ 성인 문해교육

- 문해교육이란 “글을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능력을 길러주는 교육”(교육부 2015. 9. 5.)을 지칭함.
- 교육부에서는 2006년부터 ‘성인 문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성인 맞춤형 문해 교과서 개발, 문해교육 교사 양성, 문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교육부 2015. 9. 5.).
- 교육부(2019. 2. 14.)의 2019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사업으로는 ① 광역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②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③ 문해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④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시범운영 등이 있음.
 - 사업의 관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가문해교육센터)에서 함.
- 성인 문해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촌 지자체로는 나주시, 무안군, 칠곡군 등을 들 수 있음.
 - 2019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나주시 성인 문해교육’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7개 마을에서 66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글 읽기·쓰기, 숫자 셈하기, 편지 쓰기, 기초 금융활동, 핸드폰 활용, 체험학습 등을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에서 실시하였음(지방자치일보 2019. 11. 8.).
 - 무안군에서는 7개 읍·면 8개 기관에서 130여명을 대상으로 성인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교육은 8명의 문해교사들이 1회 2시간씩 1주일에 2회 실시하고 있음(무안군 2019).
 - 칠곡군에서는 2006년부터 성인 문해교실을 운영해왔으며, 2019년 기준 25개 마을의 3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음. 칠곡군에서

는 성인 문해교육을 통해 칠곡할매시집을 여러 권 발간하기도 했음(대구경북타임스 2019. 10. 19.). 그리고 칠곡군에서는 2015년에 「칠곡군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경상북도의 치매보듬마을사업²¹⁾

○ ‘치매보듬마을’은 2015년 6월에 경상북도에서 독창적으로 개발한 치매 관련 공동체 모델임.

- ‘치매가 있어도 우리 동네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목표로 함.
-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을주민 스스로가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임.
- 치매를 앓는 주민을 마을 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것임.
- 주민 전체가 치매 친화적인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사회적 가족’이 될 수 있게 함.

○ 경상북도의 ‘치매보듬마을사업’은 2016년에 5개 시·군(포항, 김천, 구미, 의성, 칠곡)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경북 도내 23개 전체 시·군 25개 마을로 확대되었음.

○ ‘치매보듬마을’의 주요 특성: ① 주민 참여, ② 주민의 치매 이해, ③ 인지건강 환경 개선, ④ 지역사회 중심 치매 예방, ⑤ 치매환자 가족 지원.

○ ‘치매보듬마을’에는 ① 경로당 리모델링, ② 도서관·미술관 신설, ③ 농장·화단·텃밭 조성, ④ 한글·한자·생활영어 강습, ⑤ 공동생활공간의 문턱 제거, ⑥

²¹⁾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과 경상북도(2019. 5. 8)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치매 예방을 위한 치매 조기 검진 등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짐.

- 경북의 ‘치매보듬마을사업’은 2017년 행정자치부의 ‘국민디자인 과제’에 선정되었음.
- 더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상북도의 치매보듬마을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전국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농업인 행복버스²²⁾

- 농업인 행복버스: 농식품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농촌주민들에게 의료 지원, 장수사진 촬영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 농촌지역으로 직접 찾아가서 건강검진, 장수사진 촬영, 법률상담, 농기계 수리, 문화공연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해왔음.
-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 실적: 354개 지역에서 대략 13만 명의 농촌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인 행복버스에 대한 전국 농촌지역의 높은 수요를 감안하여 2019년에는 전국 90개 지역에서 약 4만 명의 농촌노인들에게 다양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²²⁾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2019)의 농촌사랑 주요사업을 참고하였음.

□ 황성군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일자리 사업: 손맛사업단

- 손맛사업단은 복지관 내 은빛어르신대학에 참여하던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하였음. 그러다가 2007년에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되어 28명의 노인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장경호·이호중·박지은·홍영석 2011), 2019년 기준으로 약 50명의 노인들이 일하고 있음.
- 노인들의 근무형태는 1일 4시간, 오전·오후로 교대근무를 함. 보수는 성수기에는 월 40만~50만 원 정도이고, 비수기에는 월 25만~30만 원 정도임. 황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업 과정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으며 초기 자본금만 약간 지원하였다고 함(장경호 외 2011).
- 감자떡을 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명절에는 만두와 송편도 만들어 판매하고 있음. 쌀, 콩, 깨, 녹두 등과 같은 농산물은 모두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김치는 수녀원의 밭에서 노인들이 직접 농사를 지은 배추를 사용하고 있음.
- 명절에 황성의 독거노인, 노인복지시설 등에 떡이나 만두 등을 나누어주는 행사도 하고 있음.

3. 정책적 시사점

-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기본계획으로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등이 있음.

- 농촌노인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 문제점으로는 ① 사회보장 관련 주요 기본계획에서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정책과제가 별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② 사회보장제도의 외형적 틀은 잘 갖추고 있으나 농촌노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함 등을 들 수 있음.
-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농업인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일본은 노재(산재)보험에서 농업자 특별가입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인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에 농업인 특별가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80세 이상 고령자 연금'처럼 평생 소득이 없었거나 소득이 낮아서 연금보험료 기여도가 낮아 연금수급액이 작거나 아예 없는 농촌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농업자연금의 경우, 2004년 개정을 통해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목적도 '농업자 연소화 및 규모 확대'에서 (후계)농업자 확보로 전환되었음.
- 독일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크레딧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① 자녀양육기간 및 가족돌봄기간에 대한 크레딧, ② 직업훈련기간에 대한 크레딧, ③ 군복무기간(혹은 사회봉사기간)에 대한 크레딧, ④ 질병급여, 실업급여 등 사회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크레딧, ⑤ 비기여기간에 대한 크레딧.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크레딧제도는 좀 더 개선하고, 없는 크

레딧제도는 신규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생활곤궁자지원제도’는 생활보호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차상위 계층 지원에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음.
- 호주의 기초연금 수급 최고액(2018년)은 단독가구의 경우 2주당 834.40호주달러(약 67만 원)이고, 부부가구의 경우 1인당 2주에 629호주달러(약 50만 원)임. 그리고 호주는 기초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3월과 9월) ‘소비자물가지수’와 ‘연금수급자 및 수혜자 생활비 지수’ 중에서 더 큰 것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을 조정하고 있음. 호주의 기초연금제도는 향후 우리나라 기초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임.
-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은 고령자가 가능한 한 살아온 지역에서 보유한 능력에 맞추어 자립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호, 개호예방, 주거 및 자립 일상생활의 지원이 포괄적으로 확보되는 체제를 말함. 그리하여 시설개호보다는 재택개호를 지향함.
 - 고령화 진전의 속도와 지역자원의 상황 등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
 - 개호보험제도가 정착하여 서비스 이용의 대폭적인 신장에 수반하여 개호비용이 급속히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호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추진이 중요함.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심화·추진하면서 자립지원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보험자의 기능 강화, 의료·개호의 연계, 지역공생사회의 실현 등과 아울러 부담에 따른 개호납부금 조정을 시도함.

- 고령화에 따라 불가피한 개호에 대비하면서 개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경상북도의 ‘치매보듬마을사업’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을주민 스스로가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하였음.
 - 보건복지부에서 ‘치매보듬마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농업·농촌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야 할 것임.
- 농업인 행복버스는 농촌노인을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므로 농촌 지역사회의 여건을 감안하여 좀 더 체계화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음.

제7장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7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1. 기본방향

- 첫째, 농촌인구 노령화의 중장기적 전망에 근거하여 선도적인 사회보장 정책을 마련해야 함.
- 도시보다 20년 이상 앞서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농촌인구의 노령화 추세에 맞는 선도적인 노인 사회보장정책이 필요함.
 - 이미 초고령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203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30%에 도달할 전망이다. 농촌인구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함.
 - 농촌은 도시보다 인구 노령화 과정이 상당히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농촌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은 향후 도시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본보기가 되는 선도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노화’로 바뀌고 있음을 감안해

야 함. 농촌노인은 단순한 사회보장의 수혜 대상이 아니라 사회보장의 주체 내지 자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농촌노인들이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일에 어느 정도 참여하면서도 사회보장정책의 혜택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사회적 농업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 활동과 농촌노인의 사회보장정책을 긴밀하게 연계해야 함.

□ 둘째, 모든 농촌노인들이 소득, 고용, 주거, 보건의료, 교육, 돌봄 등과 같은 삶의 질 영역에서 사각지대 없이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포용적인 농촌노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농촌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을 구축해야 함.

○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계층의 농촌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체계 구축

- 그동안 저소득층 위주로 추진되어 온 노인 사회보장정책을 전체 농촌노인으로 확대해야 함.

○ 농촌노인 관련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부문 간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보험(특히, 고용보험, 산재보험, 농업인안전보험)과 공공부조(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문에서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이러한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하여 핵심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을 해야 함. 또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부문의 정책들 간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노인의 국민

연금 수혜 비율은 대략 25% 내외에 불과하고, 본인이 받는 월평균 국민연금액은 35만 원 정도로 나타나 노후소득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노인들을 위한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함.

- 그리고 농촌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이용체계를 마련하여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체감 수준을 개선해야 함.

○ 농촌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의 제공기반은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그리고 서비스 연계의 측면에서 구축되어야 함.

- 농촌노인들이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자신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어야 함(관계부처 합동 2018).

□ 셋째, 농촌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을 추진해야 함.

○ 농촌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욕구도 다양함.

○ 본 연구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별(성별, 연령계층, 학력, 농업인 여부, 건강상태, 자녀동거 여부, 가구소득, 읍·면 지역)로 사회보장 수혜 실태와 복지욕구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면,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는 비율이 더 높았음. 각종 사회서비스에 대한 향후 이용의사도 성별, 학력, 농업인 여부, 건강상태, 가구소득, 읍·면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음.

- 따라서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대책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으로 추진되어야 함.

2. 부문별 정책 개선방안

2.1. 사회보험 부문

2.1.1. 농촌노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 상향 조정

- 국민연금 가입 농어업인의 평균소득월액(2018년 기준)이 111만 원임을 감안할 때 현행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월 91만 원)은 너무 낮기 때문에 상향 조정을 해야 함.
-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을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농촌 거주 65세 이상 비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 농촌의 열악한 보건의료 여건과 농촌노인들의 노후대책 미비 등을 고려하여, 농촌의 65세 이상 비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농어촌의 65세 이상 비농어업인은 과거에 농어업에 종사하다가 은퇴한 사람이 절대다수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1.2. 농촌주민 노후 연금 수령액 제고 방안 마련

- 농촌주민들이 자신의 실제 소득 수준에 가까운 금액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상당수의 농촌주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자신의 실제 소득 수준보다 낮게 신고하고 있음.
 - 국민연금 보험료를 자신의 실제 소득보다 낮게 내면 당장에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지만 노후에 그만큼 낮아진 연금을 받게 된다는 점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
- 농촌주민들이 임의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 등을 활용하여 부부가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음(박대식 외 2011).

2.1.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

-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 대상 확대
 - 농촌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현행 국민건강보험료 하위 15%)을 ‘국민건강보험료 하위 3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기요양급여의 공급 불균형 시정
 -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적정 수준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유지되도록 유도
 - 현재 농어촌에서 대체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보건소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함(박대식 외 2009).

○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선

- 농어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요양보호사 재교육 강화
- 농어촌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전문 인력(예를 들면, 영양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확보를 위한 지원

○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을 확실하게 보장
- 요양기관 종사자의 복지 수준을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지원 차등화²³⁾
- 노인요양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교육 강화(박대식 외 2009)

2.1.4. 산재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개선

○ 산재보험의 농업인 특별가입제도 도입

- 산재보험의 농어업인 특별가입제도 도입: 일본 노재보험의 농업인 특별가입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 일본 노재보험의 농업인 특별가입제도는 특정농작업종사자(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배·채취, 가축·잠견의 사육 관련 기계작업, 농약살포 등과 관련), 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자(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팩트 등 농기계 작업 관련), 중소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함.

²³⁾ 일본 후생노동성은 '개호 직원 처우 개선 가산제도'를 도입하여 개호 직원의 처우 개선에 노력을 기울인 기관 운영자에게 가산금을 차등적으로(월 1만 5,000~3만 7,000엔) 지원하고 있음.

○ 농업인안전보험의 개선

- 상품별 차별성을 강화하여 보험의 실효성 제고
- 장기적으로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발전시켜 의무가입을 하도록 함.

2.1.5. 사회보험에 대한 농촌주민 대상 교육·홍보 강화 및 가입률 제고

- 각종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한 농촌주민 교육 및 홍보 강화
- 농어업인 교육, 주민교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험 일반 및 보험료 지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및 가입률 제고

2.1.6. 농지연금의 개선

- 본 연구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지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응답자는 0.6%에 불과하고, 농지연금의 혜택을 받지 않는 주요 이유는 ‘농지연금에 대해 잘 몰라서’(22.7%), ‘농지를 자녀, 가족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어서’(20.8%), ‘농지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어서’(18.0%), ‘자녀, 가족들이 반대하거나 반대할 것 같아서’(5.4%)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농업인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에 대한 고객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함.
 - 농지연금은 노령 농업인들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농업인 복지제도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농지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가입 대상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1대 1 면담 및 안내문 발송, 농지연금의 개선 내용에 대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자녀들이나 기타 가족들이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경우에는 노령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의 가입을 결정하기가 훨씬 쉽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각종 명절 등을 활용하여 농지연금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농지연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녀들이 부모의 농지연금 가입을 반대하거나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자녀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에 대한 이해교육을 강화해야 함.

○ 농지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가입 연령 조건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완화
- *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최근에 연령 기준이 만 55세로 낮아졌음.

○ 농지연금의 월 수령액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함.

- 현재 농지연금의 대상 지목은 논, 밭, 과수원이고, 농업용 시설이나 과수원에 심어진 과수목은 제외됨. 더구나 농가주택과 부지도 농지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따라서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특용작물재배사 등과 같은 농업용 시설과 과수원에 심어진 과수목, 농가주택과 부지도 농지연금의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
- 농지의 감정평가액 반영비율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야 함.

2.2. 공공부조 부문

2.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 소득평가액 산정 시 농어촌 특성 반영 확대(박대식·안석·임지은 2017)

- 지출 비용으로 인정되는 직접지불금의 범위 확대: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과 경관보전 직접지불금도 지출 비용으로 인정
- 농업 대출금 상환액 중 이자비용의 차감 비율을 현행 50%에서 향후 100%로 확대
- * 현재 지출 비용으로 인정되는 직접지불금은 경영이양·친환경농업·조건불리지역·밭농업·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임.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방식 개선

- 기본재산액 공제액 상향 조정
- * 대도시는 2000년의 3,300만 원에서 2009년 5,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데 비해서 농어촌은 2000년부터 2,900만 원으로 계속 고정되어 있음(박대식 외 2017).
- 농지의 소득환산 시 적용되는 환산율(현행 4.17%) 인하
- 재산의 소득환산액 적용 시 자동차 기준(현행 100% 환산)의 완화

2.2.2. 기초연금의 개선

○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 원

이 지급될 예정임.

* 호주 사례: 기초연금의 절대 액수가 우리나라의 3배 이상이고, 기초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도록 매년 두 차례 연금액을 조정함.

- 2021년 이후에 기초연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농촌노인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안 모색

○ 소득조사에서 농어업소득 반영 세부지침 마련: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기초연금 사업안내’ 등에 농어업소득 반영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지침을 제시

○ 재산의 소득환산율 개선: 소득이 전혀 없는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율(현행 4%)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있어서 농촌의 기본재산 공제액(현행 7,250만 원)을 인상

- 현재 대도시의 기본재산 공제액은 1억 3,500만 원임.

2.3. 사회서비스 부문

2.3.1. 농촌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충

○ 본 연구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촌노인의 27.2%가 노인일자리의 이용 경험이 있고, 향후 노인일자리의 이용의사가 50.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존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들은 도시 중심으로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농촌에 적합한 일자리는 크게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다양한 농촌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들을 개발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촌노인들의 일자리 관련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사업의 추진
- 다양한 농촌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개발하여 공급 부족 상황을 개선
- 지역의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특화형 일자리 개발
- 영농 기술이나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 농한기에 마을이나 인근에서 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개발
- 사회적 경제와 연계한 노인일자리 개발: 사회적 일자리,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농업 등과 노인일 자리를 연계하여 다양한 노인 일 자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2.3.2. 농촌노인의 사회서비스 접근성 개선

□ 사회서비스 관련 정보 접근성 개선

○ 본 연구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는 응답자들의 13.0%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와 교육이 부족해서 등급신청을 하지 않았음.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잘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서비스는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서비스의 경우에는 ‘영농도우미 지원’과 ‘직업훈련, 취업상담 및 알선’,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농업인행복버스’, ‘병원동행서비스’, ‘가정방문간호’, 의식주 관련 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동세탁서비스’, ‘장보기 대행’, ‘주택 관련 서비스’, 사회교육 관련 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직업능력교육’, ‘인문

교양교육', '농업기술교육', 기타 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생활상담', '말벗, 안부 확인', '교통수단 지원'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와 각종 사회서비스 관련 정보를 농촌노인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제고해야 함.

- 영농교육, 반사회, 이장회의, 경로당, 노인 및 농업인 관련 단체의 행사나 교육, 신문, 방송, 인터넷, 휴대폰, 사회교육, 지역축제 등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박대식·최경환·조미형 2012).

□ 사회서비스기관에의 교통 접근성 제고

○ 농촌노인들은 교통 소외 계층인 경우가 많아서 주로 시·군청 소재지나 읍 지역에 위치한 다양한 사회서비스기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상대적으로 많이 듦.

○ 최근 버스승객 수요의 감소,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 등으로 인해서 농촌의 교통서비스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있음.

○ 이러한 여건에서 농촌노인들의 사회서비스기관에의 교통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은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를 정립하는 것임.

- 버스, 승합차, 택시, 승용차 등을 활용 농촌노인의 수요에 대응하여 맞춤형으로 운행

- 현행 관련 사업(예를 들면, 행복택시, 행복버스)은 이용이 가능한 횟수가 한 달에 3~4회 정도이고, 서비스 수혜 대상자도 극소수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여 서비스 수혜 자격요건이 되는 농촌노인의 경우 이용이 가능한 횟수를 좀 더 늘려주고 서비스 수혜 지역과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찾아가는 사회서비스의 확대

○ 방문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

- 본 연구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의 향후 이용의사의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서비스는 ‘만성질환 관리’(66.7%), ‘노인돌봄서비스’(48.0%), ‘가정방문간호’(37.4%), ‘농업인행복버스’(30.9%) 순으로 나타났다.
- 농촌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촌노인 왕진제도의 도입: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진료, 간호 등을 제공하는 왕진제도를 농촌에서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함.

○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의 확대

-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하여 농촌노인들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 일자리 사업, 문해교육, 스포츠·건강교육, 정보화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을 확대함.

2.3.3. 농촌노인의 주거환경 개선

○ 집수리 사업 및 케어안심주택의 확충

- 농촌노인이 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집수리 사업을 실시:
① 노후 전기시설 교체, ② 지붕 수리, ③ 벽지 교체, ④ 문턱 제거, ⑤ 도색 등
- 농촌노인 맞춤형 케어안심주택의 확충: 소규모 노인용 공공임대주택을 농촌노인 맞춤형 케어안심주택으로 조성

글상자 1 전남형 안심 공동홈

- 전라남도에서는 농촌노인들이 노후 걱정 없이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1·2인 가구용 주택 10여동을 집단으로 배치해 독립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전남형 안심 공동홈’ 조성사업을 추진함.
- 2019년에는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군 공모를 통해 3개소에서 30여 세대를 공급할 예정임.
- 주택 노후화와 인구 고령화로 마을의 공동화가 진행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보건진료소 등이 인접한 곳에 조성함.
- 기존 노후주택의 철거를 조건으로 신규로 단지가 조성되며, 시장·군수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입주자에게 영구임대한 후에 임대료를 받아서 시설을 관리하게 됨.
- 임대료는 주거급여법의 임차급여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함.

자료: 전라남도(2019. 4. 23.). 보도자료. “노후 걱정 없는 ‘전남형 안심 공동홈’ 조성.”

○ 다양한 유형의 노인 공동생활홈 개발

-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부부생활형, 겨울철 임시거주형 등으로 확대
- 마을회관, 경로당, 폐교 등을 활용
- 노인생활 지원 프로그램
- 노인 공동생활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마을규약을 제정하여 실천하도록 지원

○ 농촌노인의 에너지복지 개선

- 본 연구의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노인들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불편사항은 ‘난방비가 많이 든다’(46.4%)와 ‘겨울에 너무 춥다’(18.1%), ‘여름에 너무 덥다’(12.1%) 순으로 나타나 에너지복지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농촌 지역(특히, 면 지역)은 도시가스(LNG)가 보급되지 않는 마을이 많아 서 난방은 석유(등유)보일러, 취사는 LPG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
- *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석유보일러도 잘 사용하지 않고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는 농촌노인들도 많음.

- 향후 농촌노인들도 난방과 취사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도시가스 사업체와 협조하여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함.
- * 전기, 도시가스 등이 공급되지 않는 에너지 취약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함.

제8장

요약 및 결론



8

요약 및 결론

1. 요약 및 결론

1.1. 연구 목적 및 방법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국내 출장조사, 전문가 원고 집필 의뢰,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임.
- 문헌조사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의 문헌이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정리하였음.

- 설문조사는 전국의 만 65세 이상 농촌노인 537명(농업인 272명, 비농업인 265명)을 대상으로 함. 설문조사 결과는 SPSS를 사용하여 빈도, 평균, 교차표 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함.
- 국내 출장조사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농촌노인 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모범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음.
- 전문가 원고 집필 의뢰는 일본의 농촌노인 사회보장 관련 정책과 모범사례 수집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1건을 의뢰하였음.
- 이 밖에 사회보장, 노인복지 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1.2. 농촌인구의 노령화 동향과 농촌노인의 특성

- 농촌인구의 노령화는 도시보다 20년 정도 앞서서 빠르게 진행되어 왔음. 농촌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의 21.4%에서 2040년의 38.0%로 증가할 전망이다.
- 농촌노인들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면, 가구 형태는 노인부부 또는 노인단독(1인)가구가 압도적으로 많고, 자녀동거가구는 10.9~17.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농촌노인들의 건강을 살펴보면, 주기적으로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4.7%나 되고, 농촌노인들의 약 1/4 정도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농촌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응답 노인들의 50% 이상이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음. 현재 농사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85.1%)은 ‘거동할 수 있는 한 계속 농사를 짓겠다’고 응답하였음. 농사일이 아닌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30.7%였음.
- 농촌노인들의 소득 및 소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연간 총소득의 구성은 근로소득(약 1,024만 원)과 공적 이전소득(약 553만 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생활비는 응답자의 3/4 정도가 전액 또는 대부분을 스스로 마련하고 있었음. 그리고 농촌노인들에게 부담이 가장 큰 지출항목은 ‘보건·의료비’(44.9%), ‘식비’(20.3%) 순이었음.
- 농촌노인들의 주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촌노인들의 70% 정도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음.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주요 불편사항은 ‘난방비가 많이 든다’(46.4%), ‘겨울에 너무 춥다’(18.1%), ‘여름에 너무 덥다’(12.1%) 순이었음.

1.3. 사회보장의 이론적 배경

- 사회보장(社會保障)이란 용어는 영어인 ‘social security’를 번역한 것으로 대공황이라는 사회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1935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서 유래함(박정선 2014).
- 사회보장제도의 성립에 관한 주요 이론으로는 ‘합리론’, ‘불평등과 사회정의론’, ‘음모론’이 있음(정명채 2015).

- 사회보장의 주요 기능은 ① 기본(최저)생활의 보장, ② 소득재분배, ③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임.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근거로는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들 수 있음.
- 여러 학자들(김종찬 1992; 하상락 1997; 최익한 2013; 이성로 2015)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근대사회 이전부터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해왔음.
- 해방 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과정은 “① 응급구호정책기(1945~1960년), ② 개발종속정책기(1960~1987년), ③ 제도확장기(1987~1997년), ④ 복지국가 태동·조정기(1997~2017년), ⑤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기(2017년 이후)의 5단계”(김미곤 외 2018: 26)로 설명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을 광의의 사회복지(social welfare)개념으로 파악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농촌노인을 보호하고 농촌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고 개념 정의함.

1.4.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

□ 사회보험 부문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미가입자 비율이 0.7%에 불과함.
- 월평균 연금액의 경우 '30만 원 미만'인 경우가 45.8%이고, '50만 원 이상'이 21.8%에 불과하여 노후소득으로는 대단히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신청을 한 농촌노인은 5.6%에 불과함.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수혜는 아주 미미한 수준임.
- 농업인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은 응답자(농업인)는 3.7%에 불과함.
- 농지연금의 혜택을 받은 응답자는 0.6%에 불과함.

□ 공공부조 부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응답 농촌노인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은 농업인(0.4%)이 비농업인(4.5%)에 비해서 훨씬 낮았음.
- 현재 농촌노인의 3/4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서비스 부문

○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서비스

- 인지도는 노인일자리(62.9%)가 가장 높았음.
- 이용경험은 '노인일자리'(27.2%)가 가장 높았음.
-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비율은 '노인일자리'(9.1%), '생계비 지원'(2.8%) 순이었음.
- 향후 이용의사는 '노인일자리'(50.1%), '생계비 지원'(27.7%), '자활근로'(12.5%) 순이었음.

○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

- 인지도는 '치매 진단·예방·치료'가 54.9%로 가장 높았음. 그다음으로 '만성질환 관리'(49.3%), '의치, 임플란트 지원'(39.3%), '암검진 및 개안수술'(22.9%), '노인돌봄서비스'(20.7%) 순이었음.
- 이용경험은 '만성질환 관리'(41.5%), '치매 진단·예방·치료'(41.0%) 순으로 높았음.
-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비율은 '의치, 임플란트 지원'(5.8%), '치매 진단·예방·치료'(3.4%) 순이었음.
- 향후 이용의사는 '치매 진단·예방·치료'(75.0%), '의치, 임플란트 지원'(71.9%), '암 검진 및 개안수술'(67.8%), '만성질환 관리'(66.7%), '노인돌봄서비스'(48.0%), '병원동행서비스'(43.2%) 순이었음.

○ 의식주 관련 사회서비스

- 인지도는 '경로당·노인회관'이라는 응답이 78.4%로 가장 높았음. 그다음으로 '종합사회·노인복지관'(50.1%), '무료급식'(49.7%) 순이었음.

- 이용경험은 ‘경로당·노인회관’(69.3%), ‘무료급식’(44.9%), ‘종합사회·노인복지관’(30.7%) 순으로 높았음.
-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비율은 ‘주택 관련 서비스’와 ‘도시락·반찬 배달서비스’와 ‘무료급식’이라는 응답이 각각 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향후 이용의사는 ‘경로당·노인회관’(81.9%), ‘무료급식’(56.6%), ‘종합사회·노인복지관’(54.9%), ‘도시락·반찬 배달서비스’(48.2%), ‘주택 관련 서비스’(41.5%) 순이었음.

○ 사회교육 관련 사회서비스

- 인지도는 ‘스포츠·건강교육’이라는 응답이 37.1%로 가장 높았음. 그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18.4%), ‘농업기술교육’(15.3%), ‘문해교육’(13.2%), ‘정보화교육’(10.6%) 순이었음.
- 이용경험은 ‘스포츠·건강교육’(29.6%), ‘농업기술교육’(13.2%), ‘문화예술교육’(11.5%) 순이었음.
-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비율은 ‘스포츠·건강교육’(3.5%), ‘정보화교육’(3.5%) 순이었음.
- 향후 이용의사는 ‘스포츠·건강교육’(49.5%), ‘문화예술교육’(24.4%), ‘정보화교육’(18.4%), ‘농업기술교육’(13.6%), ‘문해교육’(11.5%) 순이었음.

○ 기타 사회서비스

- 인지도는 ‘목욕서비스’(25.1%),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16.6%), ‘교통수단 지원’(16.2%), ‘말벗, 안부 확인’(11.7%) 순이었음.
- 이용경험은 ‘교통수단 지원’(3.0%), ‘목욕서비스’(2.6%) 순이었음.
-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비율은 ‘교통수단 지원’과 ‘목욕서비스’라는 응답이 각각 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향후 이용의사는 ‘교통수단 지원’(52.0%), ‘목욕서비스’(44.7%), ‘말벗, 안부 확인’(44.1%),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41.0%) 순이었음.

○ 본 연구의 농촌노인 사회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좀 더 요약해보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부문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기초연금을 제외하고는 농촌노인들의 노후생활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었음. 사회서비스의 이용도 일부 서비스(노인 일자리, 만성질환 관리, 치매 진단·예방·치료, 경로당·노인회관, 무료 급식, 스포츠·건강교육)는 이용 경험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나머지 많은 사회서비스는 이용 경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1.5.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개인 특성의 경우는 ‘75세 이상’이 ‘65~74세’에 비해서 사회보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농업인’이 ‘비농업인’에 비해서 사회보장 만족도가 높았음.

○ 가구 및 지역 관련 특성의 경우는 ‘지역 보건의료 만족도’와 ‘주택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보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읍 지역에 비해서 면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 노인이 사회보장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보장 관련 특성의 경우는 월평균 연금액이 높을수록 사회보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농촌노인의 월평균 연금액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이 많을수록 사회보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1.6.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정책과 국내외 모범사례

-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기본계획으로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등이 있음.
- 농촌노인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 문제점으로는 ① 사회보장 관련 주요 기본계획에서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정책과제가 별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② 사회보장제도의 외형적 틀은 잘 갖추고 있으나 농촌노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함 등을 들 수 있음.
-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농업인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영국의 '80세 이상 고령자 연금'처럼 평생 소득이 없었거나 소득이 낮아서 연금보험료 기여도가 낮아 연금수급액이 작거나 아예 없는 농촌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농업자연금의 경우, 2004년 개정을 통해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목적도 '농업자 연소화 및 규모 확대'에서 (후계)농업자 확보로 전환되었음.
- 독일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크레딧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크레딧제도를 좀 더 개선하고, 없는 크레딧제도는 신규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호주의 기초연금 수급 최고액(2018년)은 단독가구의 경우 2주당 834.40호주달러(약 67만 원)이고, 부부가구의 경우 1인당 2주에 629호주달러(약 50만 원)임. 호주의 기초연금제도는 향후 우리나라 기초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임.
-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은 고령자가 가능한 한 살아온 지역에서 보유한 능력에 맞추어 자립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호, 개호예방, 주거 및 자립 일상생활의 지원이 포괄적으로 확보되는 체제를 말함. 그리하여 시설개호보다는 재택개호를 지향함.
- 경상북도의 ‘치매보듬마을사업’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을주민 스스로가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하였음(경상북도 2019. 5. 8.). 보건복지부에서 ‘치매보듬마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농업·농촌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야 할 것임.
- 농업인 행복버스는 농촌노인을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므로 농촌 지역사회의 여건을 감안하여 좀 더 체계화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음.

1.7.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 기본방향

- 첫째, 농촌인구 노령화의 증장기적 전망에 근거하여 선도적인 사회보장정책을 마련해야 함.

○ 둘째, 모든 농촌노인들이 소득, 고용, 주거, 보건의료, 교육, 돌봄 등과 같은 삶의 질 영역에서 사각지대 없이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포용적인 농촌노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농촌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해야 함.

○ 셋째, 농촌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을 추진해야 함.

□ 부문별 정책 개선방안

○ 사회보험 부문: ① 농촌노인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② 농촌주민 노후 연금 수령액 제고 방안 마련, ③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확대, 장기요양급여의 공급 불균형의 시정,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④ 산재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개선(산재보험의 농업인 특별가입제도 도입, 농업인안전보험의 상무별 차별성 강화 등), ⑤ 사회보험에 대한 농촌노인 대상 교육·홍보 강화 및 가입률 제고, ⑥ 농지연금의 개선(농지연금의 가입 조건 완화, 농지연금 수령 방식의 다양화) 등을 들 수 있음.

○ 공공부조 부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소득평가액 산정 시 농어촌 특성 반영 확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방식 개선), ② 기초연금의 개선(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소득조사에서 농어업소득 반영 세부지침 마련, 재산의 소득환산을 개선) 등을 들 수 있음.

○ 사회서비스 부문: ① 농촌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충, ② 농촌노인의 사회서비스 접근성 개선(사회서비스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 사회서비스기관에의 교통 접근성 제고, 찾아가는 사회서비스의 확대), ③ 농촌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집수리 사업 및 케어안심주택의 확충, 다양한 유형의 노인 공동생활홈 개발, 농촌노인의 에너지복지 개선)을 들 수 있음.

2.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면접 설문조사의 응답자가 전국의 20개 시·군의 40개 읍·면에 거주하는 537명이어서 조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의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집을 해서 좀 더 대규모의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농촌노인 사회보장의 영역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모두 포괄하고, 연구진도 연구자 혼자이고 연구기간도 10개월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양적 분석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했음.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농촌노인 사회보장의 영역별로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하되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적절하게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조사 대상이 농촌노인에 한정되어 있어서 도시노인과 직접 비교할 수 없었음.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사회보장 실태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는 접근이 필요함.

1.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에 관한 설문지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ID				
----	--	--	--	--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의 일환으로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제1169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으며, 동법 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하여 조사 종료 후에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대행하고 있으므로 조사와 관련하여 연락을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7~8월

문의 사항	설문 문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박대식 선임연구위원 (061-820-2345)
	조사 문의	(주)리서치앤리서치	조선미 부장 (02-3484-3053)

면접원 기본사항

본 면접조사는 면접지침사항 내용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	S/V 확인	검증원 확인	에디터 확인
	ID _____	_____	_____	_____

응답자 기본 사항					
응답자 성명		연락처 (유선)		연락처 (휴대폰)	
응답자 주소	시·군 읍·면 리(행정리)				
면접 조사원			면접일시	2019년 월	일

※ 응답자 정보는 설문조사 관리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전산입력 되지 않습니다.

SQ1	귀하는 현재 농촌(읍·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십니까?	1) 그렇다 0) 아니다	조사 중단		
SQ2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세 1) 65~69세 2) 70~74세 3) 75~79세 4) 80세 이상			
SQ3	귀하께서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십니까? (면접원이 직접 기재)	1) 경기/인천권 2) 강원권 3) 충청권 4) 호남권 5) 영남권			
SQ4	거주지역의 읍·면 구분은? (면접원이 직접 기재)	1) 읍 지역 2) 면 지역			

Part A. 경제활동

A1. 귀택의 가구 유형은 무엇입니까?

- 1) 전업농가 2) 겸업농가 3) 비농가

A2. 귀하께서 현재 주로 종사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 1) 농림업인 2) 자영업자(무엇:) 3) 사무·관리직(무엇:)
4) 생산·기능직 5) 가정주부 6) 무직·퇴직(은퇴) 7) 기타(무엇:)

A3. 귀하께서는 현재 농사일에 어느 정도 참여하십니까?

- 1) 주로 내가 우리 집의 농사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 A3-1번으로
- 2) 다른 사람(배우자, 자녀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참여한다. A3-1번으로
- 3) 주된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일부만 거든다. A3-1번으로
- 4) 과거에는 농사일에 참여했으나 현재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A4번으로
- 5) 과거에도 농사일에 참여하지 않았고 현재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A4번으로

A3-1. (문항 A3에서 ①, ②, ③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어떤 농사일(작목)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농사일을 하신다면 귀하께서 가장 많이 참여하시는 농사일(작목)은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

- | | | |
|----------|-------------|------------------------|
| 1) 쌀(벼) | 2) 과일 | 3) 과채(오이, 토마토, 수박 등) |
| 4) 채소 | 5) 축산 | 6) 특용작물(버섯, 인삼 등) |
| 7) 화훼(꽃) | 8) 쌀 이외의 곡물 | 9) 기타(무엇:) |

A3-2. (문항 A3에서 ①, ②, ③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 농사일을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

- | | |
|------------------------|-----------------------|
| 1) 돈이 필요해서 | 2) 조상이 물려준 땅을 지키기 위해서 |
| 3) 농사일밖에 모르기 때문에 | 4) 취미 또는 소일거리로 |
| 5)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 6) 일손이 모자라서 |
| 7) 기타(무엇:) | |

A3-3. (문항 A3에서 ①, ②, ③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는 앞으로도 농사를 계속 지으실 생각이십니까?

- 1) 거동할 수 있는 한 계속 농사를 짓겠다.
- 2) 10년 이내에 그만두겠다.
- 3) 5년 이내에 그만두겠다.
- 4) 잘 모르겠다.
- 5) 기타(무엇:)

A4. 귀하께서는 현재 농사일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 1) 예 (무엇:)  A4-1번으로
- 2) 아니오  A4-4번으로

**A4-1. (현재 농사일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만), 귀하께서 현재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

- 1)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2)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 3) 일하는 것이 좋아서 4)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 5) 기타(무엇:)

A4-2. (현재 농사일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만), 농사일 이외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농사일 이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실 경우에는 수입 비중이 가장 큰 1개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무엇:)

A4-3. (현재 농사일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만), 한 달 평균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월()만 원

A4-4. (현재 농사일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만), 귀하께서 현재 농사일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

- 1)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 2) 농사일이 너무 바빠서
- 3) 일할 필요성이 없어서(경제적 여유 등으로)
- 4) 일을 하고 싶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 5) 건강이 좋지 않아서
- 6) 집안일 또는 가족수발 때문에
- 7) 일을 하고 싶으나 자녀들이 못하게 해서
- 8) 나이가 너무 많아서
- 9) 기타(무엇:)

A4-5. (현재 농사일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만), 귀하께서는 앞으로 농사일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까?

- 1) 하고 싶다(무엇:)
- 2) 하고 싶지 않다.
- 3) 할 수 없다.

Part B. 소득 및 소비

B1. 귀댁의 지난해(2018년) 연간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소득이 있었던 모든 가구원의 소득 합계 금액을 소득원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소득원		연간 금액(만원)
근로소득	농업소득	만 원
	농업 이외 근로소득	만 원
자산소득	금융소득	만 원
	부동산소득	만 원
	개인연금, 퇴직금 등	만 원
	기타 자산소득	만 원
공적 이전소득		만 원
사적 이전소득		만 원
기타 소득		만 원
합 계		만 원

○ 참고사항

- **농업소득:** 농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뺀 순소득을 의미함.
- **농업 이외 근로소득:** 비농업 분야에서 사업 또는 취업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을 의미함.
- **금융소득:**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 차익 등이 포함됨.
- **부동산소득:**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 임대료, 부동산 매매 차익 등이 포함됨.
- **공적 이전소득:** 국가를 통한 소득으로 공적 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직접지불금, 기타 정부보조금을 모두 합한 것임.
- **사적 이전소득:** 가족이나 친척, 친지, 후원자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말함.

B2. 귀하는 귀댁의 연간 소득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B3. 귀댁에서는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 1) 전액 스스로 마련한다.
2) 대부분을 스스로 마련하고 일부는 가족으로부터 보조받는다.
3) 일부만 스스로 마련하고 대부분은 가족으로부터 보조받는다.
4) 대부분을 정부 또는 사회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마련한다.
5) 기타(어떻게:)

B4. 귀댁의 생활비는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만 원 정도

B5. 귀댁에서 지출하는 것 중에서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은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

- | | |
|---------------------------|-------------|
| 1)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 2) 경·조사비 |
| 3) 보건·의료비 | 4) 문화·여가활동비 |
| 5)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 6) 교육비 |
| 7) 교통·통신비 | 8) 광열·수도비 |
| 9) 기타(무엇:) | |

B6. 귀댁에서는 작년 한 해(2018년) 동안에 외지에 사는 자녀, 친척, 친지, 사회단체 등에게 금전적 또는 물질적(식량, 양념 등) 도움을 준 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총 ()만 원

Part C. 사회보험

C1. 귀하의 건강보험(건강보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다.  C1-1번으로
-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양가족이다.
(자녀 등 가족 앞으로 되어 있음)
- 3)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이다.
(자녀 등 가족 앞으로 되어 있음)
- 4) 의료급여 1종(의료비 완전 면제) 대상이다.
- 5) 의료급여 2종(의료비 일부 부담) 대상이다.
- 6) 국가유공자 무료 진료 대상이다.
- 7)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이다.  C2번으로
- 8) 기타(무엇:)

C1-1. (문항 C1에서 1)에 응답한 경우만), 현재 귀하께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월()원

C1-2. (문항 C1에서 1)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 매달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귀하의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 | | |
|-------------------|-------------------|
| 1)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 2)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
| 3) 보통이다. | 4) 약간 부담이 된다. |
| 5) 매우 부담이 된다. | |

C2. 귀댁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C2-1번으로

2) 없다.  C3번으로

C2-1. (문항 C2에서 1)에 응답한 경우만), 귀댁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가장 오랫동안 체납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 1개월

2) 2개월

3) 3개월 이상

C2-2. (문항 C2에서 1)에 응답한 경우만), 귀댁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

- 1)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 2) 납부 기한을 잊어버려서
- 3)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할 일이 별로 없어서
- 4)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 의료서비스 혜택이 적어서
- 5)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제도적 불신 때문에
- 6) 기타(무엇:)

C3. 귀댁은 민간 보험회사의 건강 관련 보험(예를 들면, 질병보험, 생명보험, 암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에 가입하셨습니다가?

1) 가입하였다.  C3-1번으로

2) 가입하지 않았다.  C4번으로

C3-1. (문항 C3에서 1)에 응답한 경우만), 귀댁에서 민간 건강보험(질병보험, 생명보험, 암보험 등)에 가입하신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

- 1)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기 때문
- 2)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 3) 가족의 건강상태가 나빠서
- 4)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 5)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 6) 기타(무엇:)

C3-2. (문항 C3에서 1)에 응답한 경우만), 귀댁에서는 민간 건강보험(질병보험, 생명보험, 암보험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C4. 귀댁에서 작년(2018년) 한 해 동안에 받은 연금액을 월평균으로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연금 종류	월평균 연금액(만 원)			
	본인	배우자	기타 가족	합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직 우체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등)				
기타(무엇:)				
합 계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C5. 귀하께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C5-1번으로

2) 아니요  C5-3번으로

C5-1. (문항 C5에서 1)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받은 등급은 무엇입니까?(1개만 선택)

- | | | |
|-------------------------|-----------|-----------|
| 1) 1등급 | 2) 2등급 | 3) 3등급 |
| 4) 4등급 | 5) 5등급 | 6) 인지지원등급 |
| 7) 등급 외 A | 8) 등급 외 B | 9) 등급 외 C |
| 10) 기타(무엇:) | | |

C5-2. (문항 C5에서 1)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이용 중인 서비스를 모두 말씀해주시요. (이용 중인 서비스는 모두 선택)

- | | | | |
|---------|---------|---------|-------------|
| 1) 방문요양 | 2) 방문간호 | 3) 방문목욕 | 4) 주야간보호서비스 |
| 5) 요양시설 | 6) 단기보호 | 7) 복지용구 | 8) 없음 |

C5-3. (문항 C5에서 2)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신청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

- 1) 건강이 양호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 없어서
- 2)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알지 못해서
- 3) 등급 신청 절차를 잘 몰라서
- 4) 건강상태가 나쁘지만 등급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 5)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싫어서
- 6)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
- 7) 노인장기요양시설보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 8)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 9)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재가돌봄서비스,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충분해서
- 10) 기타(무엇:)

C6. 귀댁의 가구원 중에서 작년 한 해(2018년) 동안에 실업수당, 직업알선 등을 보장하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3) 잘 모르겠다

C7. 귀댁의 가구원 중에서 작년 한 해(2018년) 동안에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3) 잘 모르겠다

C8. 귀댁의 가구원 중에서 작년 한 해(2018년) 동안에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3) 잘 모르겠다

C9. 귀댁에서는 농지연금(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을 받고 있습니까?

- 1) 예  C9-1번으로 2) 아니오  C9-2번으로

C9-1. (현재 농지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만), 귀댁에서 받고 있는 농지연금은 매월 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월()만 원

C9-2. (현재 농지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만), 귀택에서 농지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

- 1) 농지연금에 대하여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다.
- 2) 자녀나 가족들이 반대하거나 반대할 것 같아서 농지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 3) 농지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어서 신청하지 않았다.
- 4) 농지를 자녀나 가족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어서 농지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 5) 소유농지가 3ha를 초과하여 신청자격이 되지 않았다.
- 6) 소유농지가 근저당이 설정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았다.
- 7) 농지연금을 받다가 자녀나 가족들이 반대하여 중도에 해지하였다.
- 8) 기타(무엇:)

C9-3. (현재 농지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만), 귀하께서 향후에 농지연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습니까?

- 1) 신청의사가 있다.
- 2) 신청의사가 없다.
- 3) 미정이다.

C10. 귀택에서는 주택연금(주택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을 받고 있습니까?

- 1) 예  C10-1번으로 2) 아니오  C10-2번으로

C10-1. (현재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만), 귀하가 받고 있는 주택연금의 매월 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월()만 원

C10-2. (현재 주택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만), 귀하께서 주택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

- 1) 주택연금에 대하여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다.
- 2) 자녀나 가족들이 반대하거나 반대할 것 같아서 주택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 3) 주택연금 수령액이 너무 작아서 신청하지 않았다.
- 4) 주택을 자녀나 가족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어서 주택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 5) 소유주택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았다.
- 6) 주택연금을 받다가 자녀나 가족들이 반대하여 중도에 해지하였다.
- 7) 기타(무엇:)

C10-3. (현재 주택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만), 귀하께서 향후에 주택연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습니까?

- 1) 신청의사가 있다.
- 2) 신청의사가 없다.
- 3) 미정이다.

Part D. 공공부조

D1. 귀댁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입니까?

-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이다.  D1-1번으로
-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가 아니다.  D2번으로

D1-1. (문항 D1에서 1)에 응답한 경우만), 귀댁에서 현재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무엇입니까? 현재 귀댁에서 받고 있는 급여를 모두 말씀해주십시오.

-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D1-2. (문항 D1에서 1)에 응답한 경우), 귀택에서 현재 받고 있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현금 급여는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월 ()만 원

D2. 귀택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신청을 했으나 탈락한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D2-1번으로
2) 없다.  D3번으로

D2-1. (문항 D2에서 1)에 응답한 경우만), 귀택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신청했다가 탈락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

- 1) 소득이 많아서
2) 재산이 많아서
3) 법적인 부양 의무자가 있어서
4) 탈락한 이유를 모르겠다.
5) 기타(무엇:)

D3. 귀택에서는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까?

- 1)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D3-1번으로
2) 현재 신청한 상태이다.  D4번으로
3) 신청했으나 탈락하였다.  D3-3번으로
4)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  D3-4번으로

D3-1. (문항 D3에서 1)에 응답한 경우만), 귀택에서는 기초연금으로 매 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부부가 모두 받고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주십시오.

월 ()만 원

D3-2. (문항 D3에서 1)에 응답한 경우만), 기초연금은 귀택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 1) 매우 도움이 된다 2) 도움이 되는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4)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5) 전혀 도움이 안 된다

D3-3. (문항 D3에서 3)에 응답한 경우만), 귀택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

- 1) 근로소득이 많아서
- 2) 사업 또는 부업 소득이 많아서
- 3) 재산(농지, 임야, 주택, 자동차 등)이 많아서
- 4)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 우체국 연금)을 받고 있어서
- 5) 민간(개인)연금 또는 농지연금을 받고 있어서
- 6) 금융소득이 많아서
- 7) 탈락한 이유를 잘 모른다.
- 8) 기타(무엇:)

- 1)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 같아서
- 2) 신청절차가 번거로워서
- 3) 기초연금에 대하여 잘 몰라서
- 4) 받고 싶지 않아서
- 5) 자식에게 피해가 같까봐
- 6) 기초연금 액수가 너무 적어서
- 7) 기타(무엇:)

노인복지 관련 수당·보조금 종류	연간 총 금액(만 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	만 원
장수수당	만 원
경영이양직접지불금	만 원
기타 직접지불금 (쌀·밭·조건불리·친환경·경관·FTA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만 원
장애수당	만 원
기타(무엇:)	만 원
합 계	만 원

Part E. 사회서비스

E1. 다음과 같은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인지도, 이용 경험,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향후 이용의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응답 칸에 각각 표시를 해주십시오.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서비스	인지도			이용 경험		필요 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향후 이용 의사	
	모른다	조금안다	잘안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제외)	1	2	3	1	2	1	2	1	2
(2) 노인일자리	1	2	3	1	2	1	2	1	2
(3) 자활근로	1	2	3	1	2	1	2	1	2
(4) 직업훈련, 취업 상담 및 알선	1	2	3	1	2	1	2	1	2
(5) 영농도우미 지원	1	2	3	1	2	1	2	1	2

E2. 다음과 같은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인지도, 이용 경험,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향후 이용의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응답 칸에 각각 표시를 해주십시오.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	인지도			이용 경험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향후 이용 의사	
	모른다	조금안다	잘안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 만성질환 관리	1	2	3	1	2	1	2	1	2
(2) 의치(틀니), 임플란트 지원	1	2	3	1	2	1	2	1	2
(3) 노인돌봄서비스(기본·종합)	1	2	3	1	2	1	2	1	2
(4) 병원 동행 서비스	1	2	3	1	2	1	2	1	2
(5) 치매 진단·예방·치료	1	2	3	1	2	1	2	1	2
(6) 안 검진 및 개안수술	1	2	3	1	2	1	2	1	2
(7) 가정방문간호	1	2	3	1	2	1	2	1	2
(8) 농업인 행복버스 (의료지원 및 장수사진 촬영)	1	2	3	1	2	1	2	1	2

E3. 다음과 같은 의식주 관련 사회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인지도, 이용 경험,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향후 이용의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응답 칸에 각각 표시를 해주십시오.

의식주 관련 사회서비스	인지도			이용 경험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향후 이용 의사	
	모른다	조금안다	잘안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 주택 관련 서비스 (신축, 수리, 도배 등)	1	2	3	1	2	1	2	1	2
(2) 경로당, 노인회관	1	2	3	1	2	1	2	1	2
(3)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1	2	3	1	2	1	2	1	2
(4) 노인공동생활홈	1	2	3	1	2	1	2	1	2
(5) 물품 지원 (식료품, 의류, 가구 등)	1	2	3	1	2	1	2	1	2
(6) 도시락·반찬 배달 서비스	1	2	3	1	2	1	2	1	2
(7) 무료급식 (경로식당, 사회복지관 등에서)	1	2	3	1	2	1	2	1	2
(8)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1	2	3	1	2	1	2	1	2
(9) 장보기 대행	1	2	3	1	2	1	2	1	2
(10) 이동세탁서비스	1	2	3	1	2	1	2	1	2

E4. 다음과 같은 사회교육 관련 사회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인지도, 이용 경험,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향후 이용의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응답 칸에 각각 표시를 해주십시오.

사회교육 관련 사회서비스	인지도			이용 경험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향후 이용 의사	
	모른다	조금안다	잘안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 농업기술교육	1	2	3	1	2	1	2	1	2
(2) 문해교육 (한글교실, 한문교실 등)	1	2	3	1	2	1	2	1	2
(3) 인문교양교육 (인문학, 요리, 외국어교육 등)	1	2	3	1	2	1	2	1	2
(4) 정보화교육 (인터넷, 스마트폰, 컴퓨터 등 관련)	1	2	3	1	2	1	2	1	2
(5) 직업능력교육 (자격증 강좌, 취·창업 준비 과정 등)	1	2	3	1	2	1	2	1	2
(6) 문화예술교육 (음악·미술 강좌 등)	1	2	3	1	2	1	2	1	2
(7) 스포츠·건강교육 (체조교실, 건강교육 등)	1	2	3	1	2	1	2	1	2

E5. 다음과 같은 기타 사회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인지도, 이용 경험,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향후 이용의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되는 응답 칸에 각각 표시를 해주십시오.

기타 사회서비스	인지도			이용 경험		필요하지만 이용 못한 경험		향후 이용 의사	
	모른다	조금안다	잘안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 생활상담 (고민, 갈등, 정신건강, 알코올, 학대, 가정폭력 등 관련)	1	2	3	1	2	1	2	1	2
(2) 말벗(이야기 상대), 안부 확인	1	2	3	1	2	1	2	1	2
(3) 교통수단 지원 (셔틀버스, 택시 등)	1	2	3	1	2	1	2	1	2
(4)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 서비스	1	2	3	1	2	1	2	1	2
(5) 목욕서비스	1	2	3	1	2	1	2	1	2
(6) 기타(무엇:)	1	2	3	1	2	1	2	1	2

E6. 귀하께서는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 1) 전혀 도움이 필요 없다.
- 2) 다소 도움이 필요하다.
- 3)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E7. 귀하는 주기적으로 병·의원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암, 만성폐질환, 간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관절염 등)이 얼마나 있습니까?

- 1) 없다 2) 1개 3) 2개 4) 3개 이상

E8.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 1) 매우 나쁘다 2) 나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

E9. 귀하는 한 달에 몇 번 정도나 병·의원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이용하십니까?

- 1)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2) 1~2회 3) 3~4회
4) 5~6회 5) 7회 이상

**E10. 귀하가 병·의원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

- 1) 의료비(약값 포함)가 너무 비싸 경제적으로 부담된다.
2) 거리가 너무 멀다. 3) 교통이 불편하여 이용하기 어렵다.
4)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다. 5) 꼭 필요한 보건의료기관이 없다.
6)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수준)이 낮다. 7) 혼자 가기가 힘들다.
8) 특별히 불편한 것이 없다. 9) 기타(무엇:)

E11. 귀하가 평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건의료기관은 어디입니까?

(1개만 선택)

- | | | |
|----------|-----------------------|---------|
| 1) 병원·의원 | 2) 보건소 | 3) 보건지소 |
| 4) 보건진료소 | 5) 기타(무엇:) | |

E12. 지난 1년을 돌아보았을 때, 귀하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으나 치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E12-1번으로)
2) 없다. (E13번으로)

E12-1. (문항 E12에서 1)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가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

- | | |
|-------------------------|-----------------|
| 1) 거동이 불편해서 | 2) 경제적 부담 때문에 |
| 3) 교통이 불편해서 | 4) 바빠서 |
| 5) 병·의원 예약이 힘들어서 | 6) 함께 갈 사람이 없어서 |
| 7) 가까운 곳에 적합한 의료기관이 없어서 | |
| 8) 기타(무엇:) | |

E13. 귀하는 최근 2년 동안에 건강검진(일반 또는 종합)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E14번으로 2) 없다.  E13-1번으로

E13-1. (문항 E13에서 2)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

- 1) 거동이 불편해서 2)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 3) 과거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별 이상이 없어서
- 4)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 5) 경제적 부담 때문에 6) 시간이 없어서
- 7) 교통이 불편해서 8) 병·의원 예약이 힘들어서
- 9) 가까운 곳에 건강검진기관이 없어서
- 10) 기타(무엇:)

E14. 귀하께서 최근 1년 동안에 참여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해당되는 것은 모두 선택)

- 1) 없음 2) 정기적인 운동 3) 금연
- 4) 절주·금주 5) 비만·영양관리와 식생활 개선
- 6) 만성질환 관리
- 7) 정신보건(치매, 우울증, 자살예방, 스트레스 관리 등)
- 8) 구강보건 9) 사고방지 7) 치매 예방·관리
- 10) 기타(무엇:)

E15. 귀하는 거주지역의 농촌노인 관련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 3) 보통이다 4) 대체로 만족한다
- 5) 매우 만족한다

E16. 귀하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 3) 보통이다 4) 대체로 만족한다
- 5) 매우 만족한다

E17.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

- 1) 겨울에 너무 춥다. 2) 여름에 너무 덥다.
- 3) 화장실이 실외에 있다. 4) 목욕실이 없다.
- 5) 물이 샌다. 6) 습기가 많이 차고 곰팡이가 핀다.
- 7) 문턱이나 계단이 너무 높다.
- 8) 주택이 경사지나 외딴 곳에 있어서 외출하기가 불편하다.
- 9) 화장실이나 목욕탕에서 미끄러워 넘어질 위험이 높다.
- 10) 난방비가 많이 든다.
- 11) 기타(무엇:)
- 12) 불편한 것이 없음.

Part F. 사회보장 인식 및 정부 건의사항

F1.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2)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만족한다.
- 5) 매우 만족한다.

F2. 귀하는 우리나라 농촌노인의 전반적인 사회보장(복지)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낮다.
- 2) 대체로 낮다.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높다.
- 5) 매우 높다.

F3. 귀하는 자신의 전반적인 사회보장(복지) 수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2)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만족한다.
- 5) 매우 만족한다.

F4. 귀하께서는 정부에서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지원해야 할 사회서비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만 선택)

- | | |
|--------------------------|-------------|
| 1) 기본적 생계 유지를 위한 기초소득 보장 | |
| 2) 노인일자리 | 3) 돌봄서비스 |
| 4) 여가·문화·교육서비스 | 5) 보건·의료서비스 |
| 6) 주거서비스 | 7) 기타(무엇:) |

F5. 이 밖에 귀하께서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서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길 바라는 정책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Part G. 통계 처리를 위한 문항

※ 이제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G1. 귀하의 성별은?

- 1) 남자 2) 여자

G2.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1) 기혼(유배우자) 2) 사별 3) 이혼 4) 별거
5) 미혼 6) 기타(무엇:)

G3. 현재 귀하 가족의 구성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1) 노인단독(1인)가구
- 2) 노인부부(2인)가구
- 3) 자녀동거가구
- 4) 기타(무엇:)

G4. 귀댁에서 현재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몇 명입니까?

총 ()명

G5.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무학(한글 모름)
- 2) 무학(한글 해독)
- 3) 초등(소·국민)학교 중퇴·졸업
- 4) 중학교 중퇴·졸업
- 5) 고등학교 중퇴·졸업
- 6) 전문대학 중퇴·졸업
- 7) 4년제 대학 중퇴·졸업 이상

《 개인 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 》

《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설문항목 및 조사 검증	과업 종료 후 6개월 이내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2019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 강은미·이영철. 2018. “경로당 이용 노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분석: 서울특별시 시 경로당을 중심으로.” 『융합정보논문지』 8(5): 173-181.
- 강희경·유병선. 2011. “지역사회 내 노인의 주거이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 복지서비스이용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9: 21-48.
- 경상북도. 2019. 5. 8. “치매어르신 가족이 되어 주세요.”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2019. 『2019 고용보험백서』.
- 곽경자·정재필. 2009. “여성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의료복지학회지』 1(1): 119-136.
- 관계부처 합동. 2018.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 관계부처 합동·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2014. 12.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15~2019)』.
- 교육부. 2015. 9. 5. “칠십이면 어때, 나이 잊은 한글 공부.” 보도자료.
- _____. 2019. 2. 14. 2019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고.
- 국회예산정책처. 2017.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안전망 정책 분석 II: 노후소득보장대책 분석』.
- _____. 2018. 『2018~2027년 기초연금 재정소요 추계』.
- 권용신·한성민. 2012. 『초고령 농촌지역 노인복지 현황 및 정책과제』. 경북행복재단.
- 권혁창·조혜정. 2019.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상태와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9(2): 160-191.
- 김미곤·강혜규·고제이·김태완·남찬섭·노대명·문성현·박정훈·신현웅·우해봉·이민경·이삼식·이윤경·정경희·정연택·정은희·정형선·진미윤·최효진. 2018.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봉. 2009.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 133-14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정. 2011. “농촌 노인의 복지욕구 유형과 관련요인.” 『노인복지연구』 52: 87-108.
- 김인. 2006. “농촌지역 노인복지서비스의 욕구와 실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3: 197-224.
- 김정엽. 2010.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 『복지행정논의』 20(2): 114-135.
- 김정호·최경환·이용호. 2007.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 지원제도 도입방안』.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 김정훈. 2018. “노인복지서비스가 노후 삶의 질에 미친 영향: 한국복지패널의 패널 서열형 프로빗 모형 추정.” 『한국정책학회보』 27(3): 181-201.
- 김종찬. 1992. “한국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1(1): 165-180.
- 김진훈·고보선. 2016. “노인가구 소비유형별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노인복지연구』 71(4): 477-502.
- 김태성. 2013.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김홍철. 2019.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연구: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2): 231-247.
- 남찬섭. 2018. “민주화 30년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제도적 변화와 과제.” 『시민과 사회』 31: 45-92.
- 노대명·김근혜·정희선. 2018.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2019. 『농촌사랑 주요사업: 농업인 실익증진 사업』.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19. 『2018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보고서』.
- 무안군. 2019. 2. 28. 『2019 성인 한글교실 운영계획』.
- 문정화·강민아. 2017. “노인의 종사상 지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수준, 건강수준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정책』 44(1): 79-103.
- 문지현·김다혜. 2018.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탐색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 44-54.
- 박기남. 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24: 13-29.
- 박대식. 2004. 『농촌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2006. “고령사회의 농촌복지정책.” 농업전망 2006. pp. 173-2003.
- _____. 2013. “고령·양극화시대의 농촌복지정책.” 농업전망 2006. pp. 931-962.
- 박대식·안석·오정훈. 2016.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 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안석·임지은. 2017.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1/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정명채·이영대·김종숙. 1996. 『농어촌의 노인복지실태와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조미형·한태녕. 2013. 『농촌 노인일자리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최경환. 2006.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최경환·김강호·류성희. 2011. 『농어업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수혜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최경환·윤병석. 2009.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최경환·조미형. 2012.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최용욱. 2014. 『노령 농업인의 기초연금 수급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순미·손지아·배성우. 2009. “노인의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적 접근: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3): 1-24.
- 박정선. 2014. “사회복지법의 개념 정립을 위한 소고.” 『사회보장연구』 30(1): 81-103.
- 배정희·윤옥화. 2014. “도서지역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8(2): 315-334.
- 배준호·김규판·김명중·문성현·임현정·선우덕·오현석·전영수·정성춘·정형선·조성호·최동원. 2018.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나남.
- 배진희. 2012. “주거 관련 요인이 농촌 지역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2: 1-25.
- 백경숙·권용신. 2007. “노년기의 경제활동과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연구.” 『노인복지연구』 35: 87-105.
- 보건복지부. 2015. 9. 『제3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2015~2019)』.
- _____. 2019. 『2019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_____. 2019. 2.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 안석·박대식·김경인. 2017. 『농촌노인의 의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및 정책과제: 기능장애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안은선·송순만. 2017. “저소득층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갈등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5(10): 9-18.
- 오영수·류건식·임병인·김재현. 2005. “고령화리스크의 진전과 노후보장체계의 재구축.” 『한국금융학』 19: 129-207.
- 오영희·석재은·권중돈·김정석·박영란·임정기. 2005.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여성, 농어촌, 독거노인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정숙. 2019.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활동과 자아통합감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0(1): 87-111.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상은. 2019. 『사회보장론: 제도의 원리와 형태』. 학지사.
- 이설림. 2016.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존중감,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료복지연구』 8(1): 51-68.

- 이성로. 2015. “한국은 친사회복지국가였다.”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 234-263.
- 이은구·박상진·심재호·김점훈·권병욱·이갑숙. 2005. 『거주지역·경제능력 등에 따른 농촌노인의 유형화 및 맞춤형 복지정책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병인·강성호. 2005. “국민·퇴직·개인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보험개발연구』 16(3): 89-121.
- 장경호·이호중·박지은·홍영석. 2011. 『충남 농촌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장항채. 2018. “소득유형과 고령자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0(4): 23-46.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2.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 전라남도. 2019. 4. 23. 보도자료. 노후 걱정 없는 ‘전남형 안심 공동홈’ 조성.
- 전명진·문성원. 2016. “노인의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 노인 비교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2): 153-172.
- 전호성. 2016. “일본의 사회보장 개념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 재구축 방안 연구(1).” 『일본문화학보』 69: 315-332.
- 정경희·오영희·이윤경·오미애·강은나·김경래·황남희·김세진·이선희·이석구·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 정도채·심재현. 2017. “늘어나는 곳과 줄어드는 곳, 농촌인구와 농촌개발과제.” 『농업전망 2017: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pp. 59-81.
- 정명채. 2015. 『농어촌 복지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명채·민상기·최경환. 1992. 『은퇴농어민에 대한 지원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미형·박대식·최용욱. 2013. 『농촌노인의 건강관리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미형·박지연. 2015. 『농촌고령자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 농림축산식품부.
- 조택희·배민기. 2017. “지역주민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5): 591-601.
- 채구묵. 2015. 『사회보장론』. 정민사.
- 최경환. 2019. 『일본의 농촌노인 사회보장제도 조사』. 미 발간 위탁원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경환·박대식·최용욱. 2012. 『농업인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대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경환·황의식. 2007.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경희·조덕호. 2012. “순서화 로짓모형을 활용한 도시 및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 결정

- 변수 분석.”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pp. 247-274.
- 최윤지. 2014. “농촌 노인복지의 실태와 개선방안.” 『농정연구』 50: 181-205.
- 최익한(김성영 역). 2013. 『조선사회정책사』. 동문사.
- 최종산·양영란. 2015. “농촌노인의 복지서비스 경험과 욕구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1): 295-313.
- 최종훈·서정원. 2019. “고령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농간 비교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1(3): 137-158.
- 최현석·하정철. 2012. “노인의 생활전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정보학회지』 23(1): 131-142.
- 통계청. 2019. 8. 29. “2018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보도자료. _____, 각 연도. 『인구주택 총 조사』.
- 하상락. 1997.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 한경혜·윤순덕. 2001. “자녀와의 동·별거가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1(2): 163-17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삶의 질이 행복한 농촌을 말하다』. 2018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 한정자·한경혜·모선희·유성호·김양희. 2002. 『농촌지역 노인복지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농림부.
- 허원구. 2017. “노인의 삶의 만족도 발달궤적과 건강특성요인.” 『사회복지정책』 44(2): 297-318.
- 허준수. 2004.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4: 127-151.
- 허준수·조승호. 2017.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1): 673-691.
- 현외성. 2018. 『현대사회보장론』. 동문사.

Brown, D. L. and K. A. Schafft. (eds). 2019. *Rural People and Communities in the 21st Century: Resilience & Transformation*(Second Edition). Cambridge: Polity Press.

George, V. and P. Wilding. 1976. *Ideology and Social Welfar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Marshall, T. H. 1975. *Social Policy*. London.

Pinker, Robert. 1974. “Social policy and social justice.” *Journal of Social Policy* 3: 1-19.

農林水産省. 2019. 2. 『農業者年金制度について』.

厚生労働省. 2018. 『平成 29年版 厚生労働白書』.

대구경북타임스. 2019. 10. 19. “칠곡군, ‘2019년 성인문해교육 한마당 행사’ 개최.”

지방자치일보. 2019. 11. 8. “나주시, 8일 성인문해교실 수료식 개최.”